

2020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0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2020 이슈페이퍼 모음집]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RT 0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3
-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27
- ◆ 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47
-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67

PART 02

지역사회 및 가정 양육 지원

- ◆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89
-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111
-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129

PART 03

포용적 육아지원

- ◆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155
-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177
- ◆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195

PART 04

육아정책의 성과 및 방향

- ◆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215
-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227
- ◆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245
- ◆ 영유아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 지표 구성과 활용 방안 267

PART

0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실태와 인식 및 정책과제
김은영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양미선
- 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최효미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양미선

| 이슈페이퍼 2020-06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은영

1. 배경 및 문제 제기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차이 실태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인식
 4. 정책과제
- 참고문헌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 집단생활을 경험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격차 완화를 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로 적용되는 시설·설비 관련 법령이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규모, 건물, 층수, 설치 실, 놀이터, 안전시설 등 물리적 환경 상태에서 차이가 있음.
- 교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차이의 원인에 대해 설립유형과 기관규모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와 지역별 차이, 설립연도별 차이 순이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 기관장의 교육·보육 철학, 교육·보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실과 보육실 구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실과 보육실의 면적, 실외놀이터 유무, 실외놀이터 구성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중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은 좁은 교실 및 보육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실외놀이터의 획일적 구성, 성인을 위한 공간 미배정, 낮잠실·급식실·놀이공간의 비분리 순으로 나타남.
-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리적 환경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축 시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참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면적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상향 조정, 지역사회 시설 공유 시스템 구축 순이었음.
- 이상의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1):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김은영·강은진·김혜진·최혜영, 2019)」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1 배경 및 문제 제기

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

- 2017년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격차’ 완화에 주력하고 있음(김은영·박창현·김혜진·김수정, 2018: 11).
 - ◆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명시하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 질 균등화를 명시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 이러한 국정 방향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를 3년 연구로 기획함(김은영 외, 2018: 11).
 - ◆ 2018년 ‘교사 격차 완화’에 이어 2019년에는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과 출발선 평등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 집단생활을 경험하는 최초의 기관으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임(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 2009: 1).
 - ◆ 최근 사회적 변화로 영유아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이 영유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큼.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가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영유아의 놀이 형태와 질을 결정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이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설비, 공간의 구성과 배치, 제공되는 학습자료의 양과 활용상태 등이 교육 및 보육의 결과를 대부분 좌우함(강옥환, 1999: 신동주·신혜영·박소연, 1997).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격차는 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출발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은 법적인 최저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열악한 편이며, 기관유형, 설립유형, 규모,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설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공간 부족은 어린이집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은영 외, 2009), 유치원 규모별로 유아 1인당 연면적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설립유형별로 건물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은영 외, 2009).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차이 실태를 살펴보고 격차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차이 실태

가. 법적인 기준 비교

- 시설·설비 관련 법령의 운영 기준은 기관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며, 그 밖의 관련법들에 명시되어 있음.
 - ◆ 유치원은 다양한 항목들이 주로 학교 관련법에 근거하고, 세부 지침으로 17개 시도 별로 조금씩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에 반해 어린이집은 세부지침으로 전국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관련 주요 법령은 <표 1>과 같음.

〈표 1〉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관련 주요 법령 비교

구분	관련 규정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보건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법률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대통령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도 교육감이 정한 시도교육청 고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법과 각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출처 : 김은영·강은진·김혜진·최혜영(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8 〈표 11-1-2〉.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면적 산정, 입지 기준, 건물, 층수, 실 설치 및 교재교구, 놀이터,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음.
 - ◆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가 큼.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면적, 입지, 건물, 층수, 실 설치 및 교재·교구, 놀이터, 안전시설 관련 기준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설비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면적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정원절차가 4단계로 나뉘어 먼저 법적 정원을 산출하고, 다음으로 학급 수를 결정한 후, 실제 정원을 결정, 마지막으로 학급 편성 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면적에 따른 정원 책정방식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결정함.
입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주변구역은 교육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위반 시 조치사항과 벌칙을 함께 명시해둔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쾌적하기 위한 여러 내용은 강제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음.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반드시 설립자의 소유의 단독 건물로 지어야 함. •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사는 그 유치원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교차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유자시설 • 단독건물이 아니라도 1층에만 위치하면 되고,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자가건물이 아니어도 됨.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 또는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 상황과 같은 세부 규정에 있어서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두어 반드시 1층이 아니어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함.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실 설치 및 교재교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함.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다른 곳에 둘 수 있음. 실별 설치 기준과 교재교구 마련의 상세기준은 각 시·도교 육감이 정하여 고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에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사실(2018년 6월 13일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이 포함됨.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 대표자 등 주거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침구, 놀이기구 및 각 흥미영역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정도로 간략히 제시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평가인증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장 기준면적은 40명 이하일 경우 160㎡, 40명 이상일 경우 120+N㎡임. 시도교육청별로 놀이터 설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같이 흥미영역별 교구 기준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터 면적, 종류, 바닥설치, 놀이터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터 면적은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45%(~35%)×3.5㎡ 정도로 계산함. 옥외놀이터가 없어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건물 안이나 인근에 대체놀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규정이 상세함.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기준을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61-62 <표 II-1-2>.

나. 실태조사에 기초한 물리적 환경 차이 실태 분석¹⁾

-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가시기, 소재지역, 규모, 건물, 층수, 설치 실, 놀이터, 안전시설 등에서 차이가 있음 (표 3 참고).
 - ◆ 유치원은 1999년 이전에 세워진 기관이 과반수인 반면 어린이집은 반수 정도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인가를 받음.
 - ◆ 유치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반면, 어린이집은 읍면

1) 본 절은 교육부의 「2017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문무경 외, 2017)」 결과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유해미 외, 2018)」 결과를 비교·정리함.

- 「2017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문무경 외, 2017)」에 없는 정보는 교육부의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마련 연구(김은설 외, 2014)」를 참고함.

지역보다 대도시, 중소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 ◆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으며, 영유아 1인당 대지면적은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남.
- ◆ 유치원의 53.7%가 단독 건물인 것이 비해 어린이집은 33.9%가 단독 건물로 유치원의 단독건물 비율이 높음.
- ◆ 기관이 1층에 위치한 비율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더 높았으며, 유치원은 4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3층이나 지하층을 사용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남.
- ◆ 유치원은 교사실, 강당, 도서관, 보건실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린이집은 원장실, 조리실, 직원휴게실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옥외놀이터의 설치 비율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3배 가까이 높은 반면, 실내 놀이터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 비상계단, 피난층은 유치원의 설치 비율이, 비상구, 스프링클러는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실내 공기 질 측정 주기는 유치원이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설비 현황 비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인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전: 55.5% • 2000~2009년: 22.8% • 2010년 이후: 21.7% • 과거 인가 비율 높은 기관: 공립(특히 공립단설), 농어촌, 소규모 • 최근 인가 비율 높은 기관: 사립(특히 사립사인), 대도시,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전: 19.0% • 2000~2009년: 49.1% • 2010년 이후: 31.7% • 최근 인가 비율 높은 기관: 직장, 국공립, 중소도시, 소규모
소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 • 대도시, 중소도시 비율 높은 기관: 사립, 대규모 유치원 • 중소도시 비율 높은 기관: 공립단설 • 농어촌 비율 높은 기관: 공립병설, 소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중소도시에 많이 분포 • 대도시 비율 높은 기관: 국공립, 직장, 40~79명 • 중소도시 비율 높은 기관: 가정, 민간, 소규모 • 농어촌(읍면) 비율 높은 기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대규모
규모	영유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원: 50명 미만 44.17%, 50~99명 23.91%, 100명 이상 31.92% • 대규모 비율 높은 기관: 공립단설, 사립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 정원: 20명 이하 49.59%, 21~39명 14.77%, 40~79명 19.76%, 80명 이상 15.87%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법인 소규모 비율 높은 기관: 공립병설,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비율 높은 기관: 법인·단체등, 읍면지역 소규모 비율 높은 기관: 민간, 가정
	학급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가 학급 수: 평균 4.1개 	-
	1인당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면적 11.1㎡, 연면적 9.41㎡ 대지면적, 연면적 넓은 기관: 공립(병설 제외) 대지면적 좁은 기관: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면적 15.0㎡ 대지면적 넓은 기관: 법인·단체등, 직장, 읍면지역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7% 단독건물, 40.8% 학교건물 일부, 1.4% 상가건물 일부 단독건물 비율 높은 기관: 사립,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6% 아파트, 33.9% 단독건물, 9.8% 관리동, 4.8% 상가건물 단독건물 비율 높은 기관: 사회복지법인, 읍면지역, 대규모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85.7%, 2층 49.3%, 3층 24.2%, 지하 15.2% 2층 이상 사용 비율 높은 기관: 사립,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93.8%, 2층 26.3%, 3층 11.6%, 지하 4.0%, 4층 이상 2.6% 2층 이상 사용 비율 높은 기관: 사회복지법인
	설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실 76.3%, 원장실 58.8% 조리실 74.2% 유아화장실(유아용변기) 94.8% 직원휴게실 6.7% 강당 52.3%, 도서관 46.4% 보건실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실 47.6%, 원장실 60.4% 조리실 98.7% 유아화장실(유아용변기) 91.7% 직원휴게실 40.6% 강당 10.7%, 도서관 18.8% 보건실 16.1%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놀이터 89.5% 학교운동장 28.5% 실내놀이터 17.8% 인근놀이터 11.7% 옥상놀이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놀이터 31.9% 실내놀이터 36.2% 옥내중간놀이터 4.1%
안전	비상 재해 대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방향)비상구 86.5% 비상계단 41.4% 스프링클러 36.8% 계단 2개 이상 19.8% 피난층 12.1%, 피난교 2.6% 미끄럼대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방향)비상구 92.1% 단독경보형탐지기 51.4%, 자동화재탐지설비 48.7% 비상계단 37.7% 스프링클러 41.4% 계단 2개 이상 6.7% 피난층 2.1%, 피난교 1.2% 미끄럼대 10.0%
	실내 공기질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 주기: 6개월~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년~2년 측정 주기 짧은 기관: 공립, 읍면지역, 소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9% 실시 측정 주기: 평균 연 1회 실시율 높은 기관: 사회복지법인, 직장, 대규모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63-64 <표 II -2-1>.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인식2)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인식 분석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이 설립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는 정도가 4점 척도에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와 지역별 차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3.0점이었으며, 설립연도별 차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2.8점으로 가장 낮았음.
- ◆ 중소도시에서 기관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역별 차이와 기관규모별 차이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 교사의 보육·교육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가 설립유형별 차이와 기관규모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설립유형별		기관규모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별		설립연도별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746	3.2	0.8	3.2	0.8	3.0	0.9	3.0	0.8	2.8	0.9
기관유형											
유치원	372	3.5	0.6	3.4	0.7	3.3	0.7	3.2	0.8	3.0	0.8
어린이집	374	2.9	0.9	3.0	0.9	2.7	0.9	2.7	0.9	2.5	0.9
<i>t</i>		10.6***		7.1***		10.8***		7.3***		7.8***	
지역											
대도시	260	3.2	0.8	3.2	0.8	3.0	0.9	3.0	0.8	2.8	0.9
중소도시	254	3.2	0.8	3.3	0.8	3.1	0.8	3.0	0.8	2.8	0.9
읍면지역	232	3.2	0.8	3.0	0.9	3.0	0.9	2.9	0.9	2.7	0.9
<i>F</i>		0.3		5.9**		0.7		n/a		2.4	
어린이집 규모											
소규모(50명 미만)	148	3.0	0.8	3.2	0.8	2.9	0.8	2.9	0.8	2.7	0.9

2) 유치원 교사 372명, 어린이집 교사 374명, 총 746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집단 간 차이가 없거나 의미가 없을 경우 표에서 삭제함.

구분	응답자 수	설립유형별		기관규모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별		설립연도별	
		M	(SD)	M	(SD)	M	(SD)	M	(SD)	M	(SD)
중규모(50~99명)	166	2.8	0.9	2.9	0.9	2.6	0.9	2.7	0.9	2.4	0.9
대규모(100명 이상)	60	2.8	0.9	2.7	0.9	2.5	0.9	2.5	0.8	2.5	0.9
<i>F</i>		1.5		6.3**		n/a		3.1*		2.8	
교육·보육 경력											
5년 미만	160	3.0	0.8	3.1	0.8	3.0	0.8	2.9	0.8	2.7	0.9
5년 이상 10년 미만	270	3.2	0.8	3.2	0.9	3.0	0.9	3.0	0.9	2.8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52	3.3	0.8	3.2	0.8	3.0	0.9	3.0	0.8	2.8	0.9
15년 이상	164	3.6	0.7	3.5	0.7	3.4	0.8	3.2	0.9	3.0	0.9
<i>F</i>		9.3***		3.0*		3.0		1.7		1.0	

주: n/a는 기본 가정 충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231-232
(표 IV-2-1)에서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치원 내, 어린이집 내 물리적 환경의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 정도는 3.3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4점 만점).
-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리모델링/개보수를 한 기관보다는 하지 않은 기관의 동의 정도가 더 컸음.

〈표 5〉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치원 내, 어린이집 내 물리적 환경의 차이 완화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동의 정도	
		M	(SD)
전체	746	3.3	0.6
기관유형			
유치원	372	3.1	0.6
어린이집	374	3.4	0.6
<i>t</i>		-6.8***	
리모델링 여부			
리모델링/개보수 함	463	3.2	0.7
리모델링/개보수 안 함	283	3.3	0.6
<i>t</i>		-2.4*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237-238
(표 IV-2-2)에서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01$.

- 물리적 환경의 차이 완화에 동의하는 이유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 물리적 환경의 차이 완화에 동의하는 이유로, 기본적 요건의 격차는 완화하고, 기관 특성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4.4%,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동권리 측면에서 균질한 환경을 경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남. 유치원의 경우 전체 응답 경향과 동일하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질한 환경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 물리적 환경의 차이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차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83.8%,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4.7%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은 <표 6>, <표 7>과 같음(4점 만점).
 - ◆ 학부모가 선호하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3.6점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이 높았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공립단설, 사립사인, 공립병설과 사립법인 유치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 또한 3.6점이었으며, 안전에 대해서는 설립된 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기관장의 교육·보육 철학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3.5점으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는 중규모 이상의 점수가 더 높았음.
 - ◆ 교육·보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3.5점, 교사의 반 운영 철학 및 방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3.3점이었으며, 교사의 반 운영에 대한 철학 및 방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점수가 가장 낮았음.

〈표 6〉 제도 및 상황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학부모가 선호하는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		기관장의 교육·보육 철학		교육·보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교사의 반 운영 철학/방식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746	3.6	0.6	3.6	0.6	3.5	0.7	3.5	0.6	3.3	0.7
기관유형											
유치원	372	3.6	0.6	3.7	0.6	3.5	0.6	3.5	0.6	3.3	0.7
어린이집	374	3.5	0.6	3.6	0.7	3.5	0.7	3.4	0.7	3.3	0.7
<i>t</i>		2.6**		1.6		0.4		1.9		0.6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44	3.8	0.4	3.7	0.6	3.6	0.5	3.6	0.5	3.2	0.7
공립병설	149	3.6	0.6	3.7	0.6	3.4	0.7	3.5	0.7	3.4	0.7
사립법인	47	3.6	0.5	3.5	0.5	3.5	0.7	3.6	0.5	3.4	0.6
사립사인	132	3.7	0.5	3.6	0.6	3.5	0.6	3.5	0.6	3.2	0.7
<i>F</i>		2.1*		-0.7		1.5		0.5		-1.3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82	3.6	0.6	3.4	0.8	3.2	0.8	3.3	0.8	3.1	0.8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89	3.5	0.6	3.7	0.6	3.5	0.6	3.5	0.6	3.3	0.6
민간	155	3.5	0.6	3.6	0.6	3.5	0.6	3.5	0.7	3.3	0.6
직장	48	3.6	0.6	3.6	0.7	3.5	0.7	3.5	0.6	3.4	0.8
<i>F</i>		0.7		2.1		3.5*		1.2		3.2*	
유치원 규모											
소규모(2학급 이하)	100	3.5	0.6	3.6	0.6	3.3	0.7	3.5	0.6	3.4	0.7
중규모(3~5학급)	140	3.7	0.5	3.7	0.5	3.5	0.6	3.5	0.6	3.3	0.7
대규모(6학급 이상)	132	3.6	0.5	3.6	0.6	3.5	0.6	3.6	0.6	3.3	0.7
<i>F</i>		n/a		n/a		4.5*		0.2		1.2	
설립연도											
10년 미만	200	3.5	0.6	3.6	0.7	3.4	0.7	3.5	0.7	3.3	0.8
10년 이상 20년 미만	190	3.6	0.6	3.7	0.6	3.5	0.6	3.5	0.6	3.2	0.7
20년 이상 30년 미만	190	3.6	0.6	3.6	0.6	3.5	0.6	3.5	0.6	3.3	0.7
30년 이상	166	3.6	0.5	3.6	0.6	3.4	0.7	3.5	0.6	3.4	0.6
<i>F</i>		-0.9		-2.0*		-0.8		-0.5		0.4	

주: n/a는 기본 가정 충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43
〈표 IV-2-5〉에서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 행정부처의 인가기준과 평가기준 및 지표 각 3.1점, 설립 시 건축가, 유아교육 및 보육전문가, 공무원의 협업 여부 3.0점, 설립 및 인가 시기 2.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행정부처의 인가기준과 설립, 인가 시기, 설립 시 전문가 협업은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점수가 더 높았음.

〈표 7〉 제도 및 상황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행정부처의 인가기준		평가기준 및 지표		설립 시 전문가 협업		설립, 인가 시기	
		M	(SD)	M	(SD)	M	(SD)	M	(SD)
전체	746	3.1	0.8	3.1	0.8	3.0	0.8	2.7	0.9
기관유형									
유치원	372	3.2	0.7	3.0	0.8	3.0	0.8	2.8	0.9
어린이집	374	3.0	0.8	3.1	0.8	2.9	0.8	2.7	0.9
<i>t</i>		2.1*		-1.6		2.3*		2.3*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82	3.0	0.9	2.9	0.8	2.7	0.9	2.6	0.9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89	3.0	0.8	3.1	0.8	2.9	0.8	2.7	0.8
민간	155	3.1	0.8	3.1	0.8	3.0	0.8	2.7	0.9
직장	48	3.1	0.8	3.3	0.8	3.0	0.8	2.7	0.8
<i>F</i>		0.6		1.8		2.6*		0.2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44-245
 〈표 IV-2-6〉에서 일부를 발췌함.

* $p < .05$.

- 교사 자신이 속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10점 척도로 자체 평가한 결과는 〈표 8〉과 같음.

- ◆ 유아의 놀 권리 측면에서의 평가는 실외환경 7.8점, 실내환경 7.3점이었으며, 실내환경의 경우 사립법인유치원에 대한 평가점수가 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립단설, 사립사인, 공립병설 순이었음. 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외 및 실내 환경 모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실외환경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있는 기관의 평가점수는 8.0점으로 중소도시 기관에 비해 높았음.
- ◆ 유아의 쉼 권리 측면에서의 평가는 실외환경 7.4점, 실내환경 7.1점이었으며, 실내외

환경 모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평가점수가 더 높았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실내외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았음.

- ◆ 교사의 권리 측면에서의 평가는 6.4점으로 유아의 놀 권리나 쉼 권리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보다 낮은 수준임.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직장,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았음. 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물리적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8〉 실내외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유아의 놀 권리				유아의 쉼 권리				교사의 권리	
		실외		실내		실외		실내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746	7.8	(1.9)	7.3	(2.1)	7.4	(2.2)	7.1	(2.1)	6.4	(2.5)
기관유형											
유치원	372	7.7	(1.9)	7.3	(2.2)	7.2	(2.3)	6.9	(2.3)	6.1	(2.5)
어린이집	374	7.9	(2.0)	7.4	(2.0)	7.7	(2.0)	7.4	(2.0)	6.7	(2.5)
<i>t</i>		-1.3		-0.8		-3.0**		-3.4***		-3.7***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44	7.8	(2.2)	7.8	(2.1)	7.4	(2.3)	7.0	(2.4)	6.2	(2.2)
공립병설	149	7.2	(2.0)	6.6	(2.3)	6.4	(2.5)	6.2	(2.3)	5.6	(2.6)
사립법인	47	8.5	(1.5)	8.1	(1.7)	8.2	(1.9)	7.7	(1.9)	7.0	(2.1)
사립사인	132	8.0	(1.7)	7.6	(1.9)	7.6	(2.0)	7.3	(2.0)	6.2	(2.5)
<i>F</i>		1.6		3.2**		2.2*		2.2*		1.4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82	7.7	(2.0)	7.0	(1.9)	7.4	(2.0)	7.0	(2.0)	6.3	(2.6)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89	8.0	(1.9)	7.6	(1.9)	7.8	(2.1)	7.7	(1.8)	7.2	(2.2)
민간	155	7.9	(2.1)	7.3	(2.0)	7.7	(2.0)	7.3	(2.1)	6.5	(2.5)
직장	48	8.3	(1.7)	7.8	(2.1)	8.1	(1.6)	7.8	(2.1)	7.3	(2.5)
<i>F</i>		0.6		1.8		0.9		2.0		3.1*	
지역											
대도시	260	8.0	(1.9)	7.3	(2.1)	7.5	(2.3)	7.2	(2.2)	6.5	(2.5)
중소도시	254	7.5	(2.0)	7.3	(2.0)	7.2	(2.2)	7.0	(2.1)	6.3	(2.5)
읍면지역	232	8.0	(1.9)	7.4	(2.1)	7.6	(2.1)	7.2	(2.1)	6.4	(2.6)
<i>F</i>		4.6*		0.1		1.8		0.9		0.6	

구분	응답자 수	유아의 놀 권리				유아의 쉼 권리				교사의 권리	
		실외		실내		실외		실내		M	(SD)
		M	(SD)	M	(SD)	M	(SD)	M	(SD)		
유치원 규모											
소규모(2학급 이하)	100	7.2	(1.9)	6.6	(2.3)	6.2	(2.6)	6.2	(2.3)	5.4	(2.6)
중규모(3~5학급)	140	7.5	(1.8)	7.1	(2.1)	7.0	(2.1)	6.7	(2.1)	6.0	(2.4)
대규모(6학급 이상)	132	8.4	(1.9)	8.0	(1.9)	8.1	(2.0)	7.5	(2.2)	6.6	(2.5)
<i>F</i>		12.2 ^{***}		12.9 ^{***}		n/a		10.1 ^{***}		6.0 ^{**}	
어린이집 규모											
소규모(50명 미만)	148	7.4	(2.3)	7.0	(2.0)	7.4	(2.0)	7.0	(2.0)	6.3	(2.6)
중규모(50~99명)	166	8.0	(1.8)	7.5	(1.9)	7.7	(2.1)	7.5	(1.9)	6.9	(2.3)
대규모(100명 이상)	60	8.4	(1.7)	8.0	(1.9)	8.3	(1.6)	8.1	(1.9)	7.5	(2.5)
<i>F</i>		n/a		6.8 ^{**}		3.6 [*]		7.4 ^{***}		5.6 ^{**}	

주: n/a는 기본 가정 충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248-249
 <표 IV-2-7>에서 일부를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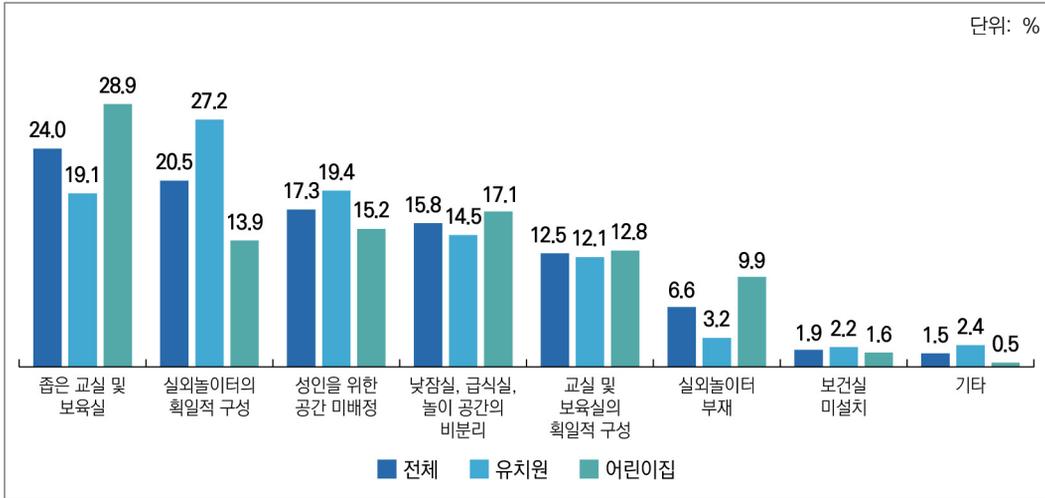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교실과 보육실 구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실과 보육실의 면적, 실외놀이터 유무, 실외놀이터 구성, 교사실, 교사휴게실 등 교사편의시설 유무, 건물 디자인, 실외놀이터 면적, 낮잠실, 식당, 보건실 등 생활시설 유무, 유희실, 도서실 등 특별실 유무, 기타 순으로 나타남.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 요구 분석

-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음.
 - ◆ 가장 많은 응답은 좁은 교실 및 보육실이고, 그 다음으로 실외놀이터의 획일적 구성, 성인을 위한 공간 미배정, 낮잠실, 급식실, 놀이공간의 비분리, 교실 및 보육실의 획일적 구성, 실외놀이터 부재, 보건실 미설치 순이었음.
 - ◆ 유치원의 경우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실외놀이터가 획일적으로 구성된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좁은 교실 및 보육실로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냈음.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낮잠실, 급식실, 놀이 공간의 비분리와 실외놀

이터 부재를 지적한 경우가 더 많았고, 유치원은 성인을 위한 공간 미배정을 지적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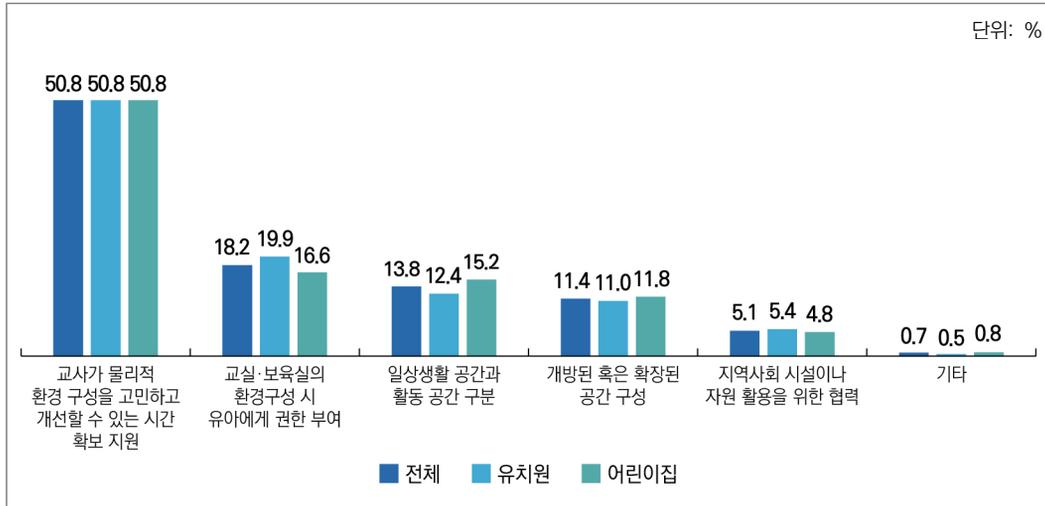


[그림 1] 현 소속 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점(1순위)

주: 746명이 응답한 결과임.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263-264, <표 IV-3-1>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 현 기관의 여건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음.
 - ◆ 가장 많은 응답은 교사가 물리적 환경 구성을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실·보육실의 환경구성 시 유아에게 관한 부여, 일상생활 공간과 활동 공간 구분, 개방된 혹은 확장된 공간 구성, 지역사회 시설이나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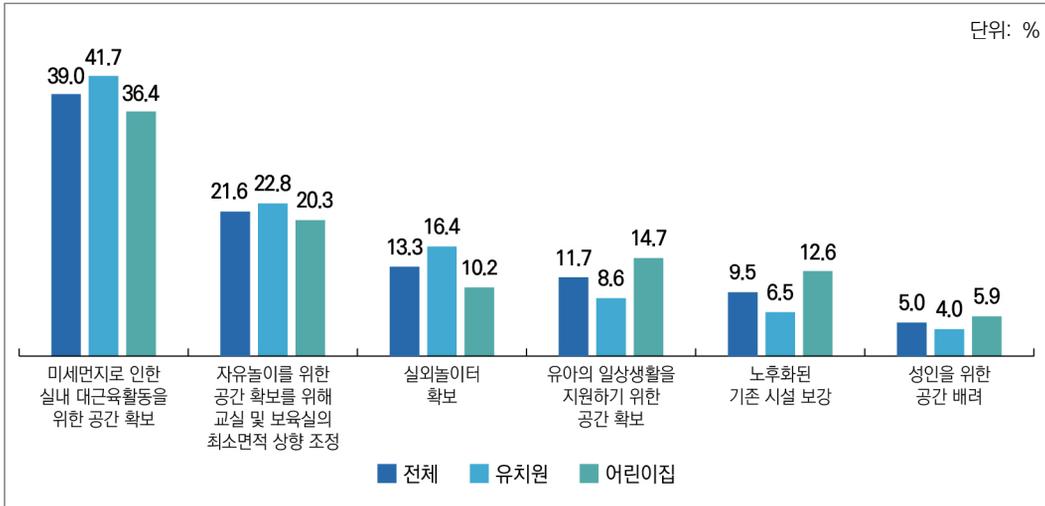


[그림 2] 현 소속 기관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우선 실천 방안(1순위)

주: 746명이 응답한 결과임.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67, (표 IV-3-3)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을 지향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대근육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유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교실 및 보육실의 최소 면적 상향 조정, 실외놀이터 확보, 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확보, 노후화된 기존 시설 보강, 성인을 위한 공간 배려 순임.
 - ◆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확보, 실외놀이터확보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확보, 노후화된 기존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차이를 보였음.



[그림 3]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 사항(1순위)

주: 746명이 응답한 결과임.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69-270, <표 IV-3-5>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 유아의 놀 권리와 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음(4점 만점).
 - ◆ ‘물리적 환경을 위한 재정 지원’이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축 시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참여’ 3.5점, ‘유치원과 어린이집 면적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상향 조정’과 ‘지역사회 시설 공유 시스템 구축’이 3.4점으로 그 뒤를 이었음.
 - ◆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는 유치원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았고, 신축 시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참여에 대한 요구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의 요구 정도가 더 컸으며, 특히 소규모 유치원이 더 그러함.

〈표 9〉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 정도 1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신축 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참여		면적 기준 상향 조정		지역사회 시설 공유시스템 구축	
		M	(SD)	M	(SD)	M	(SD)	M	(SD)
전체	746	3.7	0.5	3.5	0.6	3.4	0.7	3.4	0.6
기관유형									
유치원	372	3.7	0.5	3.5	0.6	3.4	0.6	3.4	0.6
어린이집	374	3.7	0.5	3.4	0.7	3.4	0.7	3.3	0.6
<i>t</i>		1.2		2.4*		1.5		2.2*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82	3.6	0.6	3.5	0.7	3.4	0.7	3.3	0.7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89	3.7	0.5	3.4	0.6	3.4	0.7	3.4	0.6
민간	155	3.7	0.5	3.3	0.7	3.3	0.7	3.3	0.6
직장	48	3.7	0.5	3.6	0.5	3.5	0.5	3.4	0.6
<i>F</i>		0.2		3.0*		1.4		1.1	
유치원 규모									
소규모(2학급 이하)	100	3.8	0.4	3.8	0.4	3.5	0.7	3.5	0.7
중규모(3~5학급)	140	3.7	0.5	3.5	0.7	3.5	0.6	3.5	0.6
대규모(6학급 이상)	132	3.6	0.5	3.4	0.6	3.3	0.6	3.3	0.6
<i>F</i>		4.4*		9.7***		1.4		2.3	
어린이집 규모									
소규모(50명 미만)	148	3.6	0.5	3.3	0.7	3.3	0.7	3.2	0.7
중규모(50~99명)	166	3.6	0.5	3.5	0.6	3.4	0.6	3.4	0.6
대규모(100명 이상)	60	3.8	0.4	3.6	0.6	3.5	0.7	3.4	0.6
<i>F</i>		n/a		3.0		1.4		3.3*	
설립연도									
10년 미만	200	3.7	0.5	3.5	0.7	3.4	0.6	3.4	0.6
10년 이상 20년 미만	190	3.7	0.5	3.5	0.6	3.3	0.7	3.3	0.7
20년 이상 30년 미만	190	3.6	0.5	3.4	0.7	3.4	0.7	3.3	0.6
30년 이상	166	3.7	0.5	3.6	0.6	3.4	0.6	3.5	0.6
<i>F</i>		-1.5		0.7		2.2*		1.5	

주: n/a는 기본 가정 충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272-273, <표 IV-3-7>에서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01$.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실 구성 관련 법적 기준 제시에 대한 요구는 공립단설유치원과 중규모 이상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남.

〈표 10〉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 정도 2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내부 구성에 대한 법적 기준 제시		설계를 위한 매뉴얼 개발		창의 활동을 위한 안전 규제 완화		물리적 환경의 안전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	
		M	(SD)	M	(SD)	M	(SD)	M	(SD)
전체	746	3.3	0.7	3.3	0.7	3.2	0.8	3.2	0.7
기관유형									
유치원	372	3.3	0.7	3.3	0.7	3.1	0.8	3.1	0.8
어린이집	374	3.2	0.7	3.3	0.7	3.2	0.7	3.2	0.7
<i>t</i>		0.7		0.5		-3.3*		-1.4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44	3.6	0.5	3.6	0.5	3.3	0.8	3.4	0.6
공립병설	149	3.4	0.7	3.4	0.6	3.0	0.9	3.2	0.8
사립법인	47	3.2	0.7	3.0	0.8	3.1	0.7	3.0	0.8
사립사인	132	3.1	0.6	3.1	0.7	3.1	0.7	3.1	0.7
<i>F</i>		2.3*		2.0*		2.2*		2.0*	
어린이집 규모									
소규모(50명 미만)	148	3.1	0.7	3.1	0.7	3.1	0.8	3.1	0.8
중규모(50~99명)	166	3.3	0.6	3.4	0.6	3.3	0.7	3.3	0.7
대규모(100명 이상)	60	3.3	0.8	3.3	0.6	3.4	0.6	3.4	0.7
<i>F</i>		4.9**		5.3**		3.1*		5.4**	
설립연도									
10년 미만	200	3.3	0.7	3.4	0.7	3.2	0.8	3.2	0.7
10년 이상 20년 미만	190	3.2	0.7	3.2	0.7	3.1	0.8	3.1	0.7
20년 이상 30년 미만	190	3.2	0.7	3.2	0.6	3.2	0.7	3.2	0.7
30년 이상	166	3.3	0.7	3.3	0.7	3.1	0.7	3.2	0.8
<i>F</i>		1.1		2.2*		0.9		1.7	

출처: 김은영 외(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74, 〈표 IV-3-8〉에서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4

정책과제

가. 정책 방향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의 방향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유아의 놀 권리와 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유아를 지원하는 교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함.
 - ◆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 물리적 환경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은 교사와 원장(감)의 전문성이나 노력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제언에 이 부분도 포함함.

나. 정책 지원 방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설비 관련 규정을 개선함.
 - ◆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 기준 정비가 필요함. 유아 1인당 연면적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층수 규정을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3~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교육 시설 지정이 필요함.
 - ◆ 실내 환경에 있어서는 우선 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유아 1인당 교실 및 보육실의 면적 상향 조정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실 설치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 관련 교육과 실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 놀이를 위하여 불필요한 안전 규제를 완화해야 함. 궁극적으로는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기준 일원화를 지향함.
 -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급당 유아 수 조정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정원 규모 책정 방식과 행정 관리

체계 일원화가 요구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 교실 및 보육실 개방적 구성 사례를 발굴, 공간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노후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공간 구성과 활용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재정을 마련하여 공간 확장 등을 지원해야 함.
 - ◆ 개별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사회 인프라 이용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 지역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관련하여 지역사회 인프라 이용을 위한 인력 및 이동수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시설이 우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유휴교실과 운동장을 개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함.
- 한정된 물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와 여건 개선을 지원함.
 - ◆ 현직 교사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주제로 하는 학습공동체를 지원함.
 - ◆ 교사의 물리적 환경 관련 실천적 연구를 지원하며, 교사양성교육과정에 환경 구성 관련 과목을 강화함.
 - ◆ 보다 장기적으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I 참고 문헌 I

- 강옥환(1999). 보육기관의 시설·설비 수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은설·최윤경·이규림·최경숙·김진미(2014).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마련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강은진·김혜진·최혜영(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비·설비 기준 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박창현·김혜진·김수정(2018).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 교사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김은영·이윤진·최효미·이재희·김근진·최은영·김희수(2017). 2017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신동주·신혜영·박소연(1997). 실외놀이터 환경변화가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삼성복지재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근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2018). 2018년 전국보육 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0-12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양미선

1. 서론
 2.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현황
 3. 정책 제언
- 참고문헌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양미선 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 교사는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도 매우 낮아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씩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고, 진입도 하지 않고 있어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보조 및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부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며, 교사 공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대신 비담임 교사 배치, 어린이집 내 조직 문화를 소통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 개선해 나감.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도 매우 낮음.
 - ◆ 이에 더하여 2015년 발생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마저 나빠져서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음.
 - ◆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씩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고, 진입도 하지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분석 및 확충 방안(양미선·조용남·최윤경, 2019)」 중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은 일부 결과(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현황)를 중심으로 작성함.

않고 있어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보조 및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2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현황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38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근로시간

-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85.0%가 9~10시로 가장 많고, 10~11시간이 6.4%, 9시간 미만 7.5% 순으로 대부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
 - ◆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에 비해 9~10시간 근무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9~10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지역은 10~11시간이 19.0%, 11~12시간이 2.4%로 도시지역에 비해 높음

- ◆ 9~10시간은 영아반 교사가 높지만, 10~11시간 미만은 유아반 교사가 더 많음.

〈표 1〉 1일 총 근로시간: 평일 기준

단위: %(명)

구분	9시간 미만	9~10시간 미만	10~11시간 미만	11~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수)
전체	7.5	85.0	6.4	0.4	0.7	100.0(2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4.7	79.1	14.0	2.3	-	100.0(43)
민간/법인단체등	8.2	83.6	8.2	-	-	100.0(110)
가정	7.9	88.6	1.8	-	1.8	100.0(114)
지역규모						
대도시	9.4	87.5	1.0	-	2.1	100.0(96)
중소도시	6.2	87.6	6.2	-	-	100.0(129)
읍면지역	7.1	71.4	19.0	2.4	-	100.0(42)
현원						
19명 이하	9.1	87.0	1.3	-	2.6	100.0(77)
20~40명 미만	4.4	86.7	7.8	1.1	-	100.0(90)
40~80명 미만	5.1	91.5	3.4	-	-	100.0(59)
80명 이상	14.6	68.3	17.1	-	-	100.0(41)
담당 연령						
영아반	7.4	88.0	3.7	0.5	0.5	100.0(217)
유아반	8.0	72.0	18.0	-	2.0	100.0(50)

나. 휴게시간 및 공간

-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7.9%는 어느 정도 보장됨, 22.8%는 전적으로 보장된다고 답함.
- ◆ 민간/법인단체등, 가정 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견이 많고,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보장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음.

〈표 2〉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보장되지 않음	거의 보장되지 않음	어느 정도 보장됨	전적으로 보장됨	계(수)	평균
전체	9.7	19.5	47.9	22.8	100.0(267)	2.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9.3	14.0	55.8	20.9	100.0(43)	2.9
민간/법인단체등	10.9	20.9	48.2	20.0	100.0(110)	2.8
가정	8.8	20.2	44.7	26.3	100.0(114)	2.9
지역규모						
대도시	14.6	15.6	51.0	18.8	100.0(96)	2.7
중소도시	7.0	21.7	45.0	26.4	100.0(129)	2.9
읍면지역	7.1	21.4	50.0	21.4	100.0(42)	2.9
현원						
19명 이하	7.8	16.9	46.8	28.6	100.0(77)	3.0
20~40명 미만	13.3	27.8	40.0	18.9	100.0(90)	2.6
40~80명 미만	8.5	11.9	59.3	20.3	100.0(59)	2.9
80명 이상	7.3	17.1	51.2	24.4	100.0(41)	2.9
담당 연령						
영아반	10.1	19.4	47.9	22.6	100.0(217)	2.8
유아반	8.0	20.0	48.0	24.0	100.0(50)	2.9

■ 하루 일과 중 주된 휴게시간을 조사한 결과, 낮잠시간 82.4%, 특별활동 운영시간 6.0%, 보육활동 중은 1.5%로 소수임. 이는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반을 맡아줄 수 있는 지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 가정어린이집은 낮잠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등은 특별활동 운영시간이 12.7%로 높음.
- ◆ 도시지역일수록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특별활동 운영시간이나 보육활동 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영아반은 낮잠시간 90.3%, 유아반도 낮잠시간이 48.0%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외에 특별활동시간 30.0%, 기타 18.0%로 휴게시간대가 다양함.

〈표 3〉 보육교사의 주된 휴게시간

단위: %(명)

구분	낮잠시간	특별활동 운영시간	보육활동(자유놀이, 대집단활동 등) 중	기타	계(수)
전체	82.4	6.0	1.5	10.1	100.0(2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3.7	4.7	2.3	9.3	100.0(43)
민간/법인단체등	72.7	12.7	2.7	11.8	100.0(110)
가정	91.2	-	-	8.8	100.0(114)
지역규모					
대도시	82.3	5.2	-	12.5	100.0(96)
중소도시	83.7	6.2	1.6	8.5	100.0(129)
읍면지역	78.6	7.1	4.8	9.5	100.0(42)
현원					
19명 이하	88.3	-	-	11.7	100.0(77)
20~40명 미만	91.1	3.3	1.1	4.4	100.0(90)
40~80명 미만	76.3	5.1	3.4	15.3	100.0(59)
80명 이상	61.0	24.4	2.4	12.2	100.0(41)
담당 연령					
영아반	90.3	0.5	0.9	8.3	100.0(217)
유아반	48.0	30.0	4.0	18.0	100.0(50)

-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46.4%는 별도 마련되어 있다고 답함.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거나 읍면지역일수록,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비율이 높음.

〈표 4〉 보육교사 휴게공간 마련 여부

단위: %(명)

구분	별도 마련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계(수)	구분	별도 마련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계(수)
전체	46.4	53.6	100.0(267)				
어린이집 유형				현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5.1	34.9	100.0(43)	19명 이하	42.9	57.1	100.0(77)
민간/법인단체등	48.2	51.8	100.0(110)	20~40명 미만	34.4	65.6	100.0(90)
가정	37.7	62.3	100.0(114)	40~80명 미만	61.0	39.0	100.0(59)
지역규모				80명 이상	58.5	41.5	100.0(41)
대도시	41.7	58.3	100.0(96)				
중소도시	44.2	55.8	100.0(129)				
읍면지역	64.3	35.7	100.0(42)				

다. 초과 근무

- 1일 8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보육교사 중 49.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민간/법인단체나 가정 어린이집 보다 초과 근무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도시지역일수록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담당반이 유아반인 경우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5〉 초과 근무 여부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구분	없음	있음	계(수)
전체	50.2	49.8	100.0(267)				
어린이집 유형				현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2.6	67.4	100.0(43)	19명 이하	70.1	29.9	100.0(77)
민간/법인단체등	43.6	56.4	100.0(110)	20~40명 미만	46.7	53.3	100.0(90)
가정	63.2	36.8	100.0(114)	40~80명 미만	42.4	57.6	100.0(59)
지역규모				80명 이상	31.7	68.3	100.0(41)
대도시	46.9	53.1	100.0(96)	담당 연령			
중소도시	50.4	49.6	100.0(129)	영아반	54.4	45.6	100.0(217)
읍면지역	57.1	42.9	100.0(42)	유아반	32.0	68.0	100.0(50)

- 초과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보육교사에게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을 추가로 질문함.
 - ◆ 월 1~2시간이 37.6%로 높고, 다음으로 5~6시간 18.8%, 3~4시간 15.8%, 9~10시간 14.3% 순임.
 - ◆ 가정어린이집은 월 1~2시간,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3~4시간과 5~6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6〉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

구분	단위: %(명)						계(수)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10시간	11시간 이상	
전체	37.6	15.8	18.8	3.0	14.3	10.5	100.0(13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7.6	17.2	24.1	3.4	20.7	6.9	100.0(29)
민간/법인단체등	38.7	14.5	17.7	4.8	12.9	11.3	100.0(62)
가정	42.9	16.7	16.7	-	11.9	11.9	100.0(42)
지역규모							
대도시	39.2	7.8	27.5	-	13.7	11.8	100.0(51)
중소도시	35.9	23.4	14.1	1.6	15.6	9.4	100.0(64)
읍면지역	38.9	11.1	11.1	16.7	11.1	11.1	100.0(18)
현원							
19명 이하	43.5	21.7	13.0	-	13.0	8.7	100.0(23)
20~40명 미만	35.4	6.3	22.9	8.3	16.7	10.4	100.0(48)
40~80명 미만	29.4	20.6	26.5	-	11.8	11.8	100.0(34)
80명 이상	46.4	21.4	7.1	-	14.3	10.7	100.0(28)
담당 연령							
영아반	38.4	13.1	22.2	2.0	12.1	12.1	100.0(99)
유아반	35.3	23.5	8.8	5.9	20.6	5.9	100.0(34)

- 초과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69.9%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함.
 - ◆ 수당을 받는 경우, 11.3%는 근무시간 계산하여 그대로 지급, 6.0%는 대략 계산하여 지급, 6.8%는 정액 지급받는다고 답함.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민간/법인단체등, 가정 순으로 수당을 받는 비율이 높음.

〈표 7〉 어린이집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

단위: %(명)

구분	근무시간 계산하여 그대로 지급	대략 계산하여 지급	정액 지급	기타	수당 없음	계(수)
전체	11.3	6.0	6.8	6.0	69.9	100.0(13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3.8	10.3	10.3	13.8	51.7	100.0(29)
민간/법인단체등	12.9	4.8	8.1	4.8	69.4	100.0(62)
가정	7.1	4.8	2.4	2.4	83.3	100.0(42)
지역규모						
대도시	15.7	9.8	3.9	5.9	64.7	100.0(51)
중소도시	7.8	3.1	7.8	6.3	75.0	100.0(64)
읍면지역	11.1	5.6	11.1	5.6	66.7	100.0(18)
현원						
19명 이하	13.0	8.7	-	-	78.3	100.0(23)
20~40명 미만	6.3	2.1	8.3	4.2	79.2	100.0(48)
40~80명 미만	8.8	8.8	8.8	14.7	58.8	100.0(34)
80명 이상	21.4	7.1	7.1	3.6	60.7	100.0(28)

라. 지원인력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인력이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봄.
 - ◆ 53.3%는 어느 정도 도움됨, 38.7%는 매우 도움된다고 답하여 대부분이 도움된다고 답하였고 도움 정도는 5점 척도로 3.4점임.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거나, 어린이집이 20인 이하 소규모이거나 80인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음.

〈표 8〉 지원인력의 업무 경감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전체	0.7	7.3	53.3	38.7	100.0(150)	3.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	58.6	41.4	100.0(29)	3.4
민간/법인단체등	1.7	8.3	55.0	35.0	100.0(60)	3.2
가정	-	9.8	49.2	41.0	100.0(61)	3.3
지역규모						
대도시	-	5.5	60.0	34.5	100.0(55)	3.3
중소도시	1.5	7.6	51.5	39.4	100.0(66)	3.3
읍면지역	-	10.3	44.8	44.8	100.0(29)	3.3
현원						
19명 이하	-	4.5	50.0	45.5	100.0(44)	3.4
20~40명 미만	-	14.3	52.4	33.3	100.0(42)	3.2
40~80명 미만	2.8	8.3	63.9	25.0	100.0(36)	3.1
80명 이상	-	-	46.4	53.6	100.0(28)	3.5
담당 연령						
영아반	0.8	7.6	53.4	38.1	100.0(118)	3.3
유아반	-	6.3	53.1	40.6	100.0(32)	3.3

-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알아본 결과, 보조교사가 70.8%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청소인력 66.3%, 사무인력 31.1%, 차량운행 지원 26.2%임.
- ◆ 차량운행지원은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함.

〈표 9〉 업무 경감 위해 필요한 인력: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조교사	청소인력	사무인력	차량운행 지원	기타	필요 없음	(수)
전체	70.8	66.3	31.1	26.2	1.9	1.9	(2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7.4	67.4	34.9	30.2	-	-	(43)
민간/법인단체	62.7	67.3	30.0	40.0	-	-	(110)
가정	79.8	64.9	30.7	11.4	4.4	4.4	(114)
지역규모							
대도시	69.8	68.8	35.4	19.8	2.1	2.1	(96)

구분	보조교사	청소인력	사무인력	차량운행 지원	기타	필요 없음	(수)
중소도시	73.6	66.7	28.7	24.0	2.3	2.3	(129)
읍면지역	64.3	59.5	28.6	47.6	-	-	(42)
현원							
19명 이하	76.6	68.8	26.0	14.3	3.9	5.2	(77)
20~40명 미만	77.8	61.1	40.0	16.7	2.2	1.1	(90)
40~80명 미만	61.0	74.6	27.1	37.3	-	-	(59)
80명 이상	58.5	61.0	26.8	53.7	-	-	(41)
담당 연령							
영아반	71.0	65.9	32.3	24.0	2.3	2.3	(217)
유아반	70.0	68.0	26.0	36.0	-	-	(50)

주: 중복응답 결과임.

- 보수교육, 휴가 등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71.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거나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대체교사를 지원받았다는 교사가 많음.

〈표 10〉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구분	없음	있음	계(수)
전체	71.5	28.5	100.0(267)				
어린이집 유형				현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5.1	34.9	100.0(43)	19명 이하	61.0	39.0	100.0(77)
민간/법인단체등	78.2	21.8	100.0(110)	20~40명 미만	74.4	25.6	100.0(90)
가정	67.5	32.5	100.0(114)	40~80명 미만	79.7	20.3	100.0(59)
지역규모				80명 이상	73.2	26.8	100.0(41)
대도시	77.1	22.9	100.0(96)	담당 연령			
중소도시	71.3	28.7	100.0(129)	영아반	70.5	29.5	100.0(217)
읍면지역	59.5	40.5	100.0(42)	유아반	76.0	24.0	100.0(50)

-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경우, 대체교사 지원기간이 충분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40.3%가 그런 편, 25.1%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과반수 이상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충분성도 5점 평균 3.7점으로 중간 이상임.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과 가정, 대도시나 읍면지역, 1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11〉 대체교사 지원기간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3.7	11.0	19.9	40.3	25.1	100.0(191)	3.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6	3.6	25.0	39.3	28.6	100.0(28)	3.9
민간/법인단체등	4.7	17.4	19.8	39.5	18.6	100.0(86)	3.5
가정	2.6	6.5	18.2	41.6	31.2	100.0(77)	3.9
지역규모							
대도시	2.7	5.4	18.9	45.9	27.0	100.0(74)	3.9
중소도시	5.4	14.1	20.7	37.0	22.8	100.0(92)	3.6
읍면지역	-	16.0	20.0	36.0	28.0	100.0(25)	3.8
현원							
19명 이하	2.1	2.1	21.3	40.4	34.0	100.0(47)	4.0
20~40명 미만	3.0	16.4	14.9	40.3	25.4	100.0(67)	3.7
40~80명 미만	4.3	14.9	23.4	34.0	23.4	100.0(47)	3.6
80명 이상	6.7	6.7	23.3	50.0	13.3	100.0(30)	3.6
담당 연령							
영아반	3.9	11.1	19.6	38.6	26.8	100.0(153)	3.7
유아반	2.6	10.5	21.1	47.4	18.4	100.0(38)	3.7

- 대체인력으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지원 대신 비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54.7%가 찬성, 25.1%가 매우 찬성을 답함.

〈표 12〉 대체인력 지원 위한 비담임 교사 배치 찬성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계(수)
전체	3.7	16.5	54.7	25.1	100.0(2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18.6	48.8	32.6	100.0(43)
민간/법인단체등	1.8	13.6	59.1	25.5	100.0(110)
가정	7.0	18.4	52.6	21.9	100.0(114)
지역규모					
대도시	2.1	18.8	58.3	20.8	100.0(96)
중소도시	3.9	16.3	55.0	24.8	100.0(129)
읍면지역	7.1	11.9	45.2	35.7	100.0(42)
현원					
19명 이하	5.2	16.9	55.8	22.1	100.0(77)
20~40명 미만	5.6	17.8	57.8	18.9	100.0(90)
40~80명 미만	-	15.3	50.8	33.9	100.0(59)
80명 이상	2.4	14.6	51.2	31.7	100.0(41)
담당 연령					
영아반	3.2	18.0	53.9	24.9	100.0(217)
유아반	6.0	10.0	58.0	26.0	100.0(50)

마. 근로환경 및 처우 만족도

-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45.7%로 절반 가까이 되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중간 이상임.
 - ◆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이거나 중규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음.
- 어린이집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48.4%이고, 만족정도는 5점 척도로 3.4점임.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거나 읍면지역, 영아반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13〉 근로시간 및 근무환경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근로시간			근무환경			(수)
	만족	매우 만족	평균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2.2	13.5	3.4	34.5	13.9	3.4	(2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7.2	14.0	3.4	39.5	11.6	3.5	(43)
민간/법인단체등	34.5	11.8	3.4	31.8	16.4	3.4	(110)
가정	28.1	14.9	3.4	35.1	12.3	3.4	(114)
지역규모							
대도시	37.5	13.5	3.5	36.5	12.5	3.4	(96)
중소도시	30.2	11.6	3.3	33.3	12.4	3.4	(129)
읍면지역	26.2	19.0	3.4	33.3	21.4	3.6	(42)
현원							
19명 이하	24.7	20.8	3.5	28.6	18.2	3.4	(77)
20~40명 미만	27.8	8.9	3.2	34.4	11.1	3.3	(90)
40~80명 미만	47.5	11.9	3.6	39.0	15.3	3.5	(59)
80명 이상	34.1	12.2	3.4	39.0	9.8	3.5	(41)
담당 연령							
영아반	32.3	12.9	3.4	34.6	12.9	3.4	(217)
유아반	32.0	16.0	3.4	34.0	18.0	3.6	(50)

주: 평균은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로 산출한 값임.

-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육교사 중 48.4%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만족도는 5점 평균 3.4점임.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거나 읍면지역, 중규모 이상, 유아반을 담당하는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급여에 대해 25.5%만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만족도는 5점 평균 2.8점으로 중간 이하임.
 -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민간/법인단체나 가정보다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유아반을 맡는 경우 높음.

〈표 14〉 어린이집 업무량 및 급여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업무량			급여(각종 수당 포함)			(수)
	만족	매우 만족	평균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4.5	13.9	3.4	19.9	5.6	2.8	(2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9.5	11.6	3.5	25.6	7.0	3.0	(43)
민간/법인단체등	31.8	16.4	3.4	19.1	5.5	2.8	(110)
가정	35.1	12.3	3.4	18.4	5.3	2.7	(114)
지역규모							
대도시	36.5	12.5	3.4	22.9	3.1	2.8	(96)
중소도시	33.3	12.4	3.4	18.6	3.9	2.7	(129)
읍면지역	33.3	21.4	3.6	16.7	16.7	3.1	(42)
현원							
19명 이하	28.6	18.2	3.4	18.2	7.8	2.8	(77)
20~40명 미만	34.4	11.1	3.3	18.9	6.7	2.8	(90)
40~80명 미만	39.0	15.3	3.5	20.3	1.7	2.8	(59)
80명 이상	39.0	9.8	3.5	24.4	4.9	2.9	(41)
담당 연령							
영아반	34.6	12.9	3.4	18.9	5.1	2.8	(217)
유아반	34.0	18.0	3.6	24.0	8.0	3.0	(50)

주: 평균은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로 산출한 값임.

바. 이직 계획

- 조사에 참여한 교사에게 향후 1년 이내에 어린이집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19.5%는 계획이 있고, 27.0%는 고민 중으로 응답함.
- ◆ 민간/법인단체등이나 도시지역일수록, 중규모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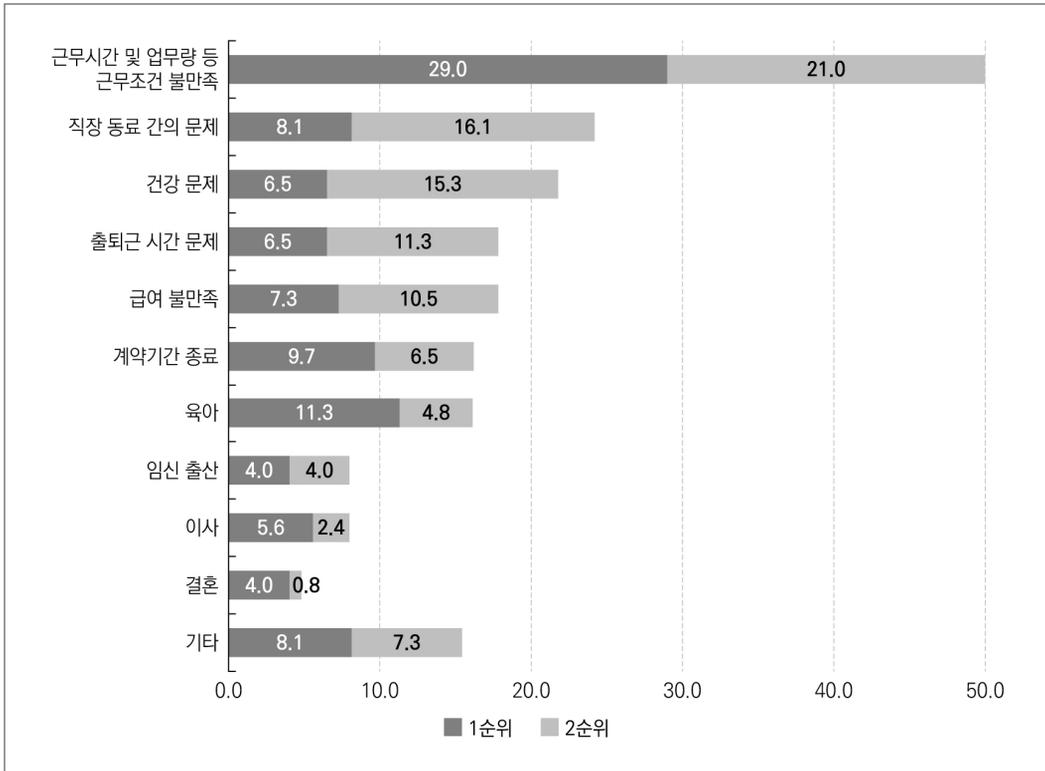
〈표 15〉 향후 1년 내 어린이집 그만둘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고민 중	계(수)	구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고민 중	계(수)
전체	19.5	53.6	27.0	100.0(267)					
어린이집 유형					현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9.3	53.5	37.2	100.0(43)	19명 이하	20.8	54.5	24.7	100.0(77)
민간/법인단체등	24.5	50.0	25.5	100.0(110)	20~40명 미만	22.2	53.3	24.4	100.0(90)
가정	18.4	57.0	24.6	100.0(114)	40~80명 미만	20.3	47.5	32.2	100.0(59)
지역규모					80명 이상	9.8	61.0	29.3	100.0(41)
대도시	24.0	50.0	26.0	100.0(96)	담당 연령				
중소도시	20.2	53.5	26.4	100.0(129)	영아반	21.7	53.5	24.9	100.0(217)
읍면지역	7.1	61.9	31.0	100.0(42)	유아반	10.0	54.0	36.0	100.0(50)

- 이직을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경우, 이유를 1,2순위로 알아봄.
- ◆ 1순위로 근무시간 및 업무량 등 근무조건 불만족이 29.0%, 육아가 11.3%, 나머지는 5~10% 사이임.
- ◆ 2순위도 근무시간 및 업무량 등 근무조건 불만족이 21.0%, 직장동료 간의 문제가 16.1%, 건강문제 15.3%, 출퇴근시간 문제 11.3%, 급여 불만족 10.5% 순임.
- ◆ 1,2순위를 합산하면, 근무시간 및 업무량 등 근무조건 불만족이 50.0%, 직장동료 간의 문제 24.2%, 건강문제 21.8% 순임.

단위: %



〈그림 1〉 이직을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이유(1,2순위)

3 정책제언

- 민간 부문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함.
 - ◆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나, 국공립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큼.
 - ◆ 정부는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인상하고 있지만 국공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 ◆ 지자체에서는 특수보육시책으로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게 처우개선비, 복리비, 장기 근속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지만 이 또한 지역 차가 매우 큼.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함.
 - ◆ 2015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함.
 - ◆ 보육·교육 분야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 함.
 -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이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함.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대신 비담임 교사를 배치함.
 -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휴가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비담임 교사를 배치함.
- 어린이집 내 조직 문화를 소통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 개선해 나감.

| 참고 문헌 |

양미선·조용남·최윤경(2019).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분석 및 확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0-07 |

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최효미

1. 서론
 2. 부당 처우 인지 및 경험
 3. 노동 교육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견해
 4.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최효미 연구위원

◆◆ 요약 ◆◆

-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여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수준과 부당 처우 경험 등을 고찰하고,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교육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인지도가 낮음.
- 항목별로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항에서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부당 처우 경험 비중이 높음.
- 부당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노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보육교사는 31%임. 노무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참여의향도 낮지 않음.
-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 교육의 의무화, 노무 상담 창구 개설, 비담임 교사 및 대체교사 등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 등을 제언함.

1 서론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며 매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됨.
 -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 몰입도 등에 영향을 미쳐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김길숙 외, 2015; 김은영, 2014; 백선정, 2018; 안현미·김현실, 2014; 이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최효미·박은정·이혜민, 2019)」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남신 외, 2014; 이주연 외, 2018).

- ◆ 이에 정부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함께 논의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처우 개선 논의가 주를 이룸(대한민국 정부, 2016: 80; 보건복지부 2017: 29).
- ◆ 즉, 보육교사의 역할이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방점이 놓이다보니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옴.
-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속하므로 보육교사의 처우(근로조건)는 근로기준법에 기반하여 결정됨.
 - ◆ 현행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과 관련한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임.
 - ◆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 권리에는 해고 등의 제한(제 23조), 퇴직급여제도(제 34조), 근로시간과 휴식(제 4장), 임신부 보호(제 74조), 모성 보호(제 74조의 2, 제 75조), 안전과 보건(제 76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 76조의 2, 제 76조의 3) 등이 있음.
- 본고는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리 측면에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여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수준과 부당 처우 경험 등을 고찰함.
 - ◆ 이에 더하여 부당 처우에 대응하는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서의 노무 교육 경험 유무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봄.
 - ◆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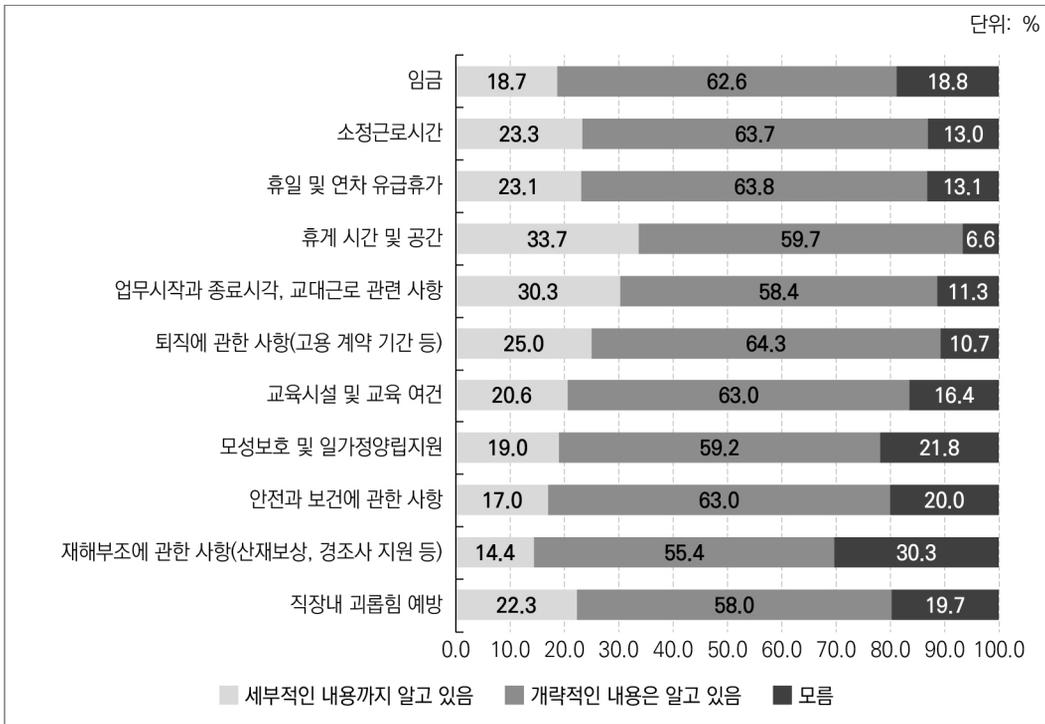
2 부당 처우 인지 및 경험

가.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

- 근로기준법 상에서 어떠한 내용이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10~20%의 보육교사들이 잘 모른다고 응답함.

- ◆ 응답자의 60%내외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근로기준법 상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높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움.
- ◆ 항목별로는 최근 법 개정이 이뤄져 변화가 큰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음 +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음, 93.4%), 산재보상 등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음 +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음, 69.8%).



[그림 1] 부당 처우 인지 여부

주: 전체 관측치는 1,024명임.

-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임.

- ◆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소정근로시간과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임.
- ◆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임.
- ◆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휴게 시간 및 공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및 교대근로 관련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 여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임.

〈표 1〉 근무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에 따른 부당 처우 인지 차이

단위: %

구분	전체	근무하는 어린이집 설립유형					X ²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기타	
임금	18.8	13.6	21.0	17.6	19.9	15.5	17.206*
소정근로시간	13.0	9.1	15.3	10.8	12.8	11.8	12.872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13.1	9.7	18.5	5.4	9.6	11.8	26.849***
휴게 시간 및 공간	6.6	3.2	10.4	1.4	4.6	6.4	19.064*
업무시간, 교대근로 관련 사항	11.3	6.5	14.8	2.7	10.7	12.7	16.965*
퇴직에 관한 사항	10.7	5.8	13.6	2.7	10.0	14.5	19.127*
교육시설 및 교육 여건	16.4	13.6	20.2	12.2	13.5	16.4	14.307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21.8	17.5	26.7	10.8	21.7	17.3	16.13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0.0	13.6	23.7	16.2	20.3	17.3	16.352*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30.3	19.5	33.3	20.3	35.9	26.4	24.620**
직장내 괴롭힘 예방	19.7	16.2	22.7	14.9	20.6	14.5	27.830***

주: 1) 가독성을 위해 '모름' 비중만을 표로 제시함. 단, X²는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개략적 내용은 알고 있음', '모름'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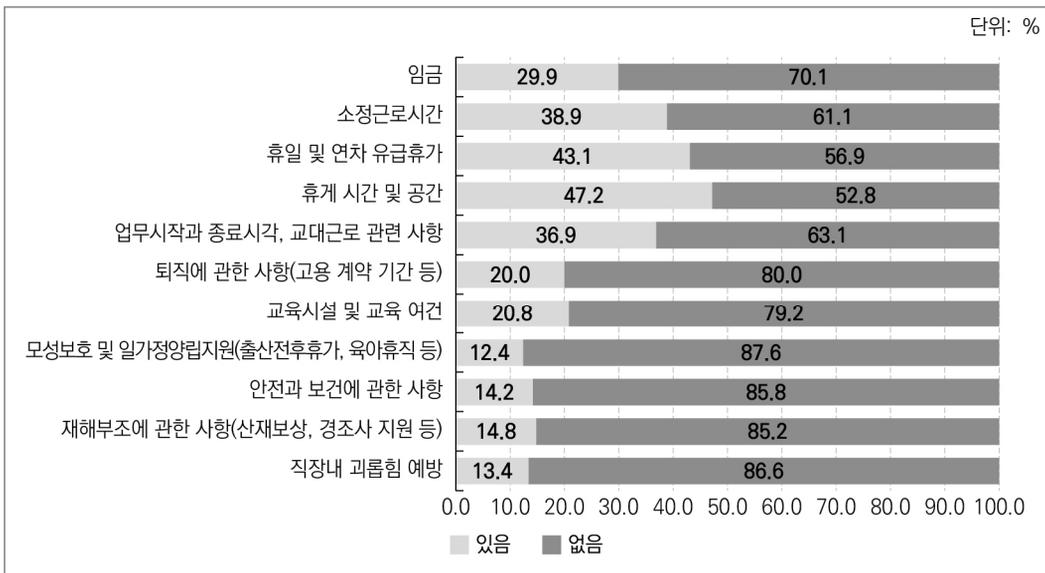
2) 응답자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 154명, 민간 405명, 직장 74명, 가정 281명, 기타(법인, 단체, 협동 등) 110명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당 처우 경험

- 부당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및 공간과 관련하여 부당 처우를 당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47.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서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음(12.4%).

- ◆ 부당 처우 당했다는 응답은 휴게 시간 및 공간(47.2%),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3.1%), 소정근로시간(38.9%),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및 교대근로 관련 사항(36.9%) 순으로, 주로 노동시간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서 부당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이 높음.
- ◆ 노동시간 관련 사항 이 외에는 임금에서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9.9%로 다음으로 높음.
- ◆ 반면,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12.4%), 직장내 괴롭힘 예방(13.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14.2%),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4.8%) 등은 상대적으로 부당 처우 경험이 낮은 편으로 조사됨. 다만, 이들은 애초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은 항목으로, 부당 처우 경험 여부에 주관적인 인식 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부당 처우 경험 여부

주: 전체 관측치는 1,024명임.

-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 부당 처우 경험 여부는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와는 약간 달리 모든 항목에서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표 2〉 근무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에 따른 부당 처우 경험 차이

단위: %

구분	전체	근무하는 어린이집 설립유형					X ²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기타	
임금	29.9	21.4	37.8	16.2	31.3	18.2	31.361***
소정근로시간	38.9	30.5	44.0	25.7	40.6	36.4	14.973**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3.1	29.2	49.4	24.3	50.2	33.6	39.017***
휴게 시간 및 공간	47.2	37.0	49.9	36.5	54.1	40.9	18.089**
업무시간, 교대근로 관련 사항	36.9	31.8	40.5	25.7	38.8	33.6	8.891
퇴직에 관한 사항	20.0	14.3	24.9	5.4	21.4	16.4	20.382
교육시설 및 교육 여건	20.8	13.6	24.0	12.2	23.8	17.3	13.000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12.4	10.4	13.1	5.4	15.7	9.1	7.936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4.2	8.4	15.6	6.8	16.7	15.5	9.802*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4.8	8.4	18.0	9.5	16.7	10.9	12.068*
직장내 괴롭힘 예방	13.4	13.0	14.3	12.2	12.1	14.5	0.951

주 : 1) 가독성을 위해 '있음' 비중만을 표로 제시함.

2) 응답자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 154명, 민간 405명, 직장 74명, 가정 281명, 기타(법인, 단체, 협동 등) 110명임.

* $p < .05$, ** $p < .01$, *** $p < .001$.

- 부당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항목에서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게 시간 및 공간 18.4%, 소정근로시간 15.0% 순임.
- ◆ 반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에 응답한 비중은 매우 낮음.
- ◆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부당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았음. 반면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 시간 및 공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부당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4명에 불과하므로 주의를 요함.

〈표 3〉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단위: %(명)

구분	전체	근무하는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기타
임금	11.7	6.1	15.1	5.9	9.7	13.0
소정근로시간	15.0	25.8	14.7	17.6	10.8	14.8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35.8	30.3	36.3	17.6	43.2	27.8
휴게 시간 및 공간	18.4	13.6	14.3	29.4	21.6	25.9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교대근로 관련 사항	7.2	9.1	7.2	8.8	6.3	7.4
퇴직에 관한 사항	2.9	4.5	4.8	0.0	1.1	0.0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2.1	3.0	2.4	2.9	1.1	1.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0.0	1.2	8.8	1.1	1.9
직장내 괴롭힘 예방	1.9	3.0	0.8	5.9	1.1	5.6
기타	3.4	4.5	3.2	2.9	4.0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81)	(66)	(251)	(34)	(176)	(54)

주: 집단 간 차이 χ^2 는 61.835로 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 부당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아 참았다는 응답이 55.8%, 해결되지 않고 문제교사로 낙인 될 것 같아 참았다는 응답이 53.6%, 지인에게 하소연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1%에 달함.
- ◆ 반면, 상담센터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1.5%, 노동조합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9%, 고용노동부 혹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재단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침.
- ◆ 즉, 보육교사들은 부당 처우를 당하더라도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육교사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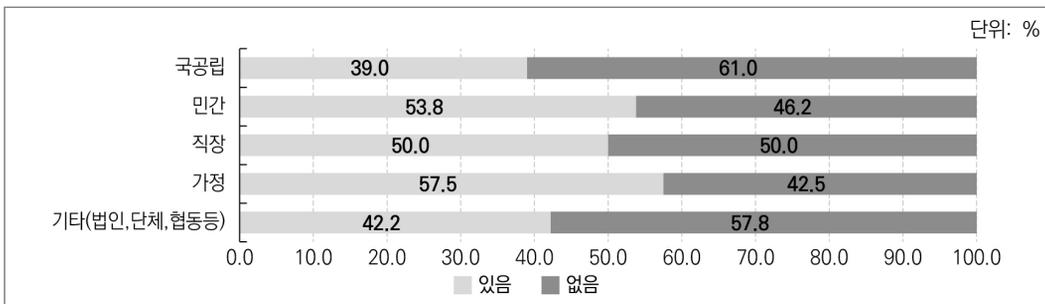
〈표 4〉 부당 처우 발생 시 대처방법

구분	단위: %(명)		
	1+2순위	1순위	2순위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참음	55.8(327)	33.6(197)	22.3(130)
해결되지 않고 문제교사로 낙인 될 것 같아 참음	53.6(314)	28.3(166)	25.3(148)
지인에게 하소연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음	45.1(264)	21.3(125)	23.8(139)
그만두고 옮김	18.8(110)	5.6(33)	13.2(77)
어린이집 동료에게 도움 요청	9.6(56)	2.9(17)	6.7(39)
어린이집 윗사람에게 도움 요청	7.5(44)	3.9(23)	3.6(21)
상담센터 등 전문가 상담	1.5(9)	0.7(4)	0.9(5)
노동조합 등 전문가 도움 받아 법적 해결	1.9(11)	0.5(3)	1.4(8)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재단에 민원	4.4(26)	2.2(13)	2.2(13)
기타	1.5(9)	0.9(5)	0.7(4)
계(수)	199.7(1,170)	100.0(586)	100.0(584)

주: 2순위 응답 중 무응답이 2명 있음.

다. 동료가 받는 부당 처우 목격 경험

- 주변의 동료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본인이 부당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음.
 - ◆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 동료가 부당 처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비중이 가장 낮았으나 39.0%에 달함.
 - ◆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57.5%가 동료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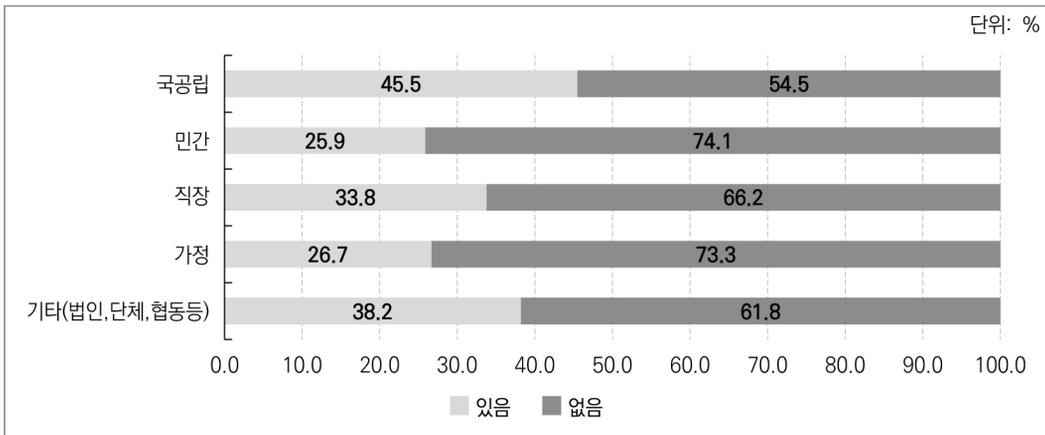
[그림 3] 부당 대우 받은 동료 목격 여부

주: 응답자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 154명, 민간 405명, 직장 74명, 가정 281명, 기타(법인, 단체, 협동 등) 110명임.

3 노동 교육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견해

가. 노동 교육 경험 및 의견

-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45.5%는 노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25.9%만이 노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응답자의 노무 교육 이수 경험은 31.0%임. (최효미 외, 2019: 100)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부당 처우에 대해 인지도도 높고 부당 처우 경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노무 교육 이수 경험과 상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 다만, 별도의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노무 교육이 실제로 직면한 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 56.8%, 전혀 그렇지 않다 13.2%, 대체로 그렇지 않다 6.6%로 응답하여, 실질적인 도움 정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최효미 외, 2019: 101).



[그림 4] 노무 교육 이수 경험 여부

주: 응답자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 154명, 민간 405명, 직장 74명, 가정 281명, 기타(법인, 단체, 협동 등) 110명임.

■ 한편, 노무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703명에게 노무 교육 미참여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주변에 노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5.8%에 달함.

- ◆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가 11.7%, ‘원장님들이 재교육하는 형태라서’ 9.4% 등이었음.
- ◆ 앞서 동료의 부당 처우 목격 경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노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몰라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61.0%에 달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 반면, 부당 처우 경험 비중이 낮았던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5.0%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표 5〉 노무 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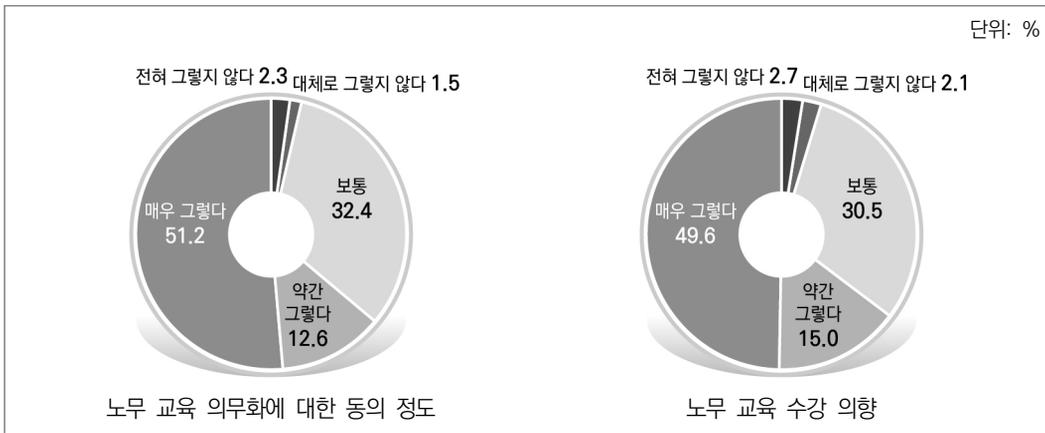
구분	주변에 노무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재교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록 남아 재취업 등에서 불리할까봐	교육 받았다는 사실 원장님에게 알려질까봐	노무 교육 받는다는 사실 자체 무서워서	기타	계(수)
전체	55.8	11.7	9.4	7.0	4.3	2.1	9.8	100.0 (703)
근무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0.0	9.8	18.3	2.4	2.4	1.2	15.9	100.0 (82)
민간	54.0	12.3	7.7	9.3	5.7	2.3	8.7	100.0 (300)
직장	52.1	25.0	2.1	8.3	2.1	4.2	6.3	100.0 (48)
가정	61.0	7.8	9.3	5.4	4.4	1.5	10.7	100.0 (205)
기타 (법인, 단체, 협동 등)	57.4	13.2	11.8	5.9	1.5	2.9	7.4	100.0 (68)
$\chi^2(df)$	39.507(24)*							

* $p < .05$.

■ 노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노무 교육 수강 의향도 높은 편에 속함.

- ◆ 노무 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1.2%, 약간 그렇다 12.6%, 보통 32.4%로 높은 동의도를 보임.

- ◆ 향후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중 노무 교육이 포함될 경우 수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49.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그렇다 15.0%, 보통 30.5%로 수강 의향도 높은 편임.
- ◆ 즉, 보육교사들의 다수는 노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강 의향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할지 알지 못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5] 노무 교육 의무화 동의 정도 및 수강 의향

주: 전체 관측치는 1,024명임.

- 노무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2순위 응답 기준 71.7%가 육아관련 지원 기관이라고 응답함.
 - ◆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등 공적인 노동전문 기관이 68.8%에 달함.
 - ◆ 반면, 어린이집 연합회 혹은 원장님이 소개한 기관 12.1%, 지방자치 단체 22.2%, 노동조합 등에서 주최하는 노동자 교육 23.4% 등이었음.
 - ◆ 즉 보육교사들은 노무 교육에 있어 전문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왕이면 노동전문 기관보다는 자신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보육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6〉 노무 교육 시 적합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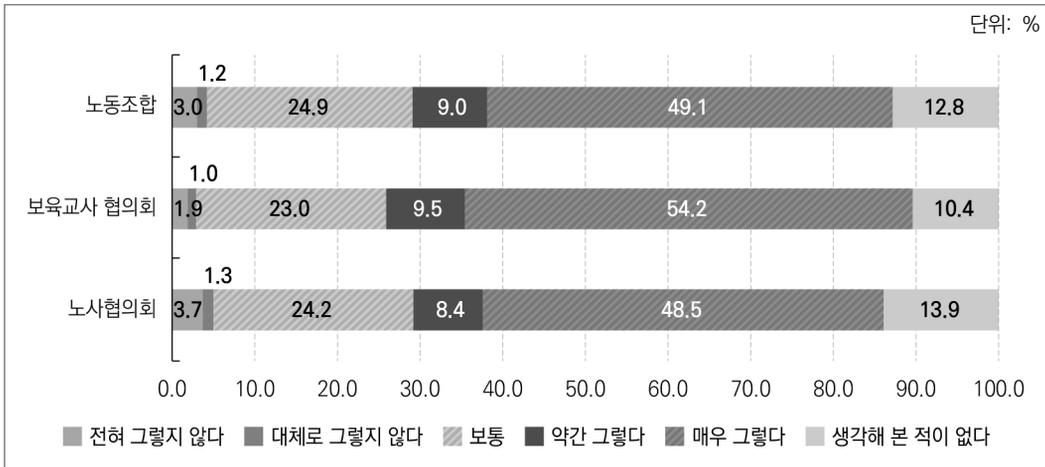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육아관련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등 공적인 노동 전문 기관	노동조합 등에서 주최하는 노동자 교육	지방자치 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이 소개한 기관	기타	계(수)
1+2순위	71.7	68.8	23.4	22.2	12.1	1.5	199.7 (2,045)
1순위	47.4	33.4	5.7	10.2	2.8	0.6	100.0 (1,024)
2순위	24.4	35.6	17.8	12.0	9.3	0.9	100.0 (1,021)

주: 2순위 응답 중 무응답이 3명 있음.

나.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의견

-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4점 이상(5점 척도)의 높은 동의도를 보임(최효미 외, 2019: 114).
 - ◆ 노동자 단체 중에서는 보육교사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4.2%에 달했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9.1%로, 절반 이상이 노동자 단체의 필요성에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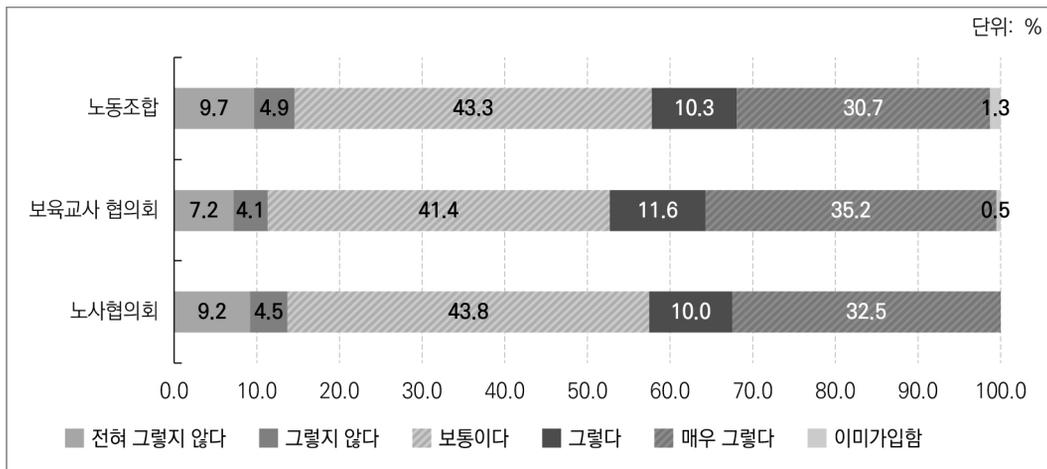


[그림 6]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필요성

주: 전체 관측치는 1,024명임.

- 노동자 단체 참여(혹은 가입) 의향이 있는 경우(그렇다+매우 그렇다)도 약 40% 내외로 낮지 않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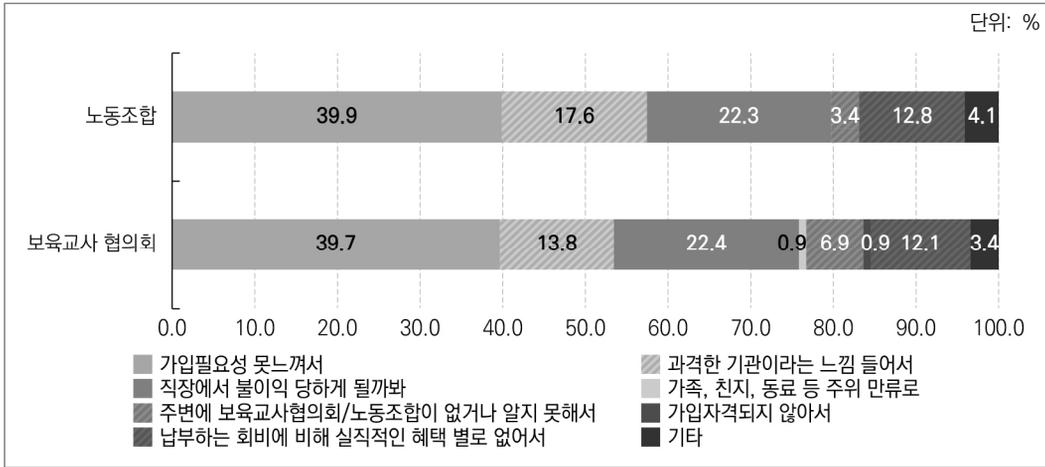
- ◆ 보육교사 협의회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아 46.8%였으며, 노동조합 참여 의향도 41.0%였음.
- 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해야만 하는 노사협의회 참여 의사는 42.5%로, 법적 의무 사항임을 감안할 때 참여 의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이 법적 의무 사항인 노사협의회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는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라는 응답이 19.4%에 달함(최효미 외, 2019: 122).



[그림 7]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가입 의향

주: 전체 관측치는 1,024명임.

-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협의회와 노동조합에 가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0%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라는 응답은 대략 22%였으며, ‘과격하 기관이라는 생각 때문’도 노동조합과 보육교사 협의회 각각 17.6%, 13.8%이었음.



[그림 8]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주: 노동조합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48명과 보육교사 협의회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16명의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임.

4 정책적 시사점

- 보육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에 노동자 교육(노무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높음.
 - ◆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 ◆ 또한, 본인이나 동료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에도 참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부당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육교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대상의 노무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됨.
 - ◆ 보육교사들은 노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를 보이며 실제 노무 교육 참여 의향도 높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자신이 노무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그러므로, 노무 교육 참여로 인한 낙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제고하기 위해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과정 등에서 의무적으로 노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전문적인 노무 상담 창구 등을 개설하여 보육교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 보육교사들은 대체로 노무 교육이나 노무 상담 등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변에 노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음.
 - ◆ 또한, 보육교사의 64.6%가 노무 교육 수강 의향이 있는 것으로(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 응답하여, 노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임.
 - ◆ 즉, 보육교사들의 다수는 노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강 의향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할지 알지 못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음.
 - ◆ 보육교사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무 교육 기관은 육아관련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등 공적인 노동전문 기관 순이었음. 반면 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기관(어린이집 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음.
 - ◆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관에서 노무 상담을 실시하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제3의 육아관련 기관에서 노무 교육 및 노무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 일례로 서울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8: 6)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보장을 위해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함.
 - ◆ 보육교사들이 경험한 부당 처우는 휴게 시간 및 공간(47.2%),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3.1%), 소정근로시간(38.9%),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및 교대근로 관련 사항(36.9%) 순으로, 주로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임.
 - ◆ 이는 조사 당시인 2019년에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30~19:30으로 고정된 상황으로, 주 40시간(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보육현장의 어려움에 기인함. 또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과정 중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서 분리되어 온

전한 휴계를 갖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됨.

- ◆ 2020년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본보육시간이 9:00~16:00로 정해짐(보건복지부, 2020: 76)으로서¹⁾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는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다만, 기본보육 과정 중의 휴계시간의 보장, 휴계 공간의 마련,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의 마련 등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 ◆ 결국 휴계와 휴가의 보장을 위해서는 비담임 교사의 확대 및 대체 교사의 원활한 지원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개선이라는 현안에 대응하여 실질적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보육교사의 대다수가 노동자 단체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 의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러나 실제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가입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 협의회 혹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단체를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약 39%)’이며, 12%내외의 응답자는 ‘납부하는 회비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서’라고 응답함.
 - ◆ 반면, 노동자 단체에 가입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22%내외) 과격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수임.
 -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특히 적정 노동시간 보장이나 임금 개선 등 거시적 현안에 대한 對정부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 16:00~19:30은 연장보육을 실시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이 이뤄짐(보건복지부, 2020: 76).

I 참고 문헌 I

-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2014).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실태 및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2014-18.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백선정(2018). 경기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 -보육교사 설 권리 확보를 중심으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안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8). 2018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 안현미·김현실(2014). 서울시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보육교사지원전담기구(안)
설립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남신·김직수·최혜인(2014). 영유아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노원노동복지센터.
- 이주연·조경옥·최지훈(2018).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18-11.
- 최효미·박은정·이혜민(2019).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0-11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양미선

1. 서론
 2. 아동학대 및 예방교육 현황
 3.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인식
 4. 정책 제언
- 참고문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양미선 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아동학대, 건강·영양·안전, 보조금 유용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
-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총 24,604건) 중 어린이집 811건, 유치원 187건으로 각각 3.3%, 0.8%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어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 실시,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 강화, 아동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감.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은 미래사회 투자’ 라는 목표 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 하였고, 그 결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이룸.
- ◆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아동학대, 건강·영양·안전, 보조금 유용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인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양미선·김은영·염혜경, 2019)」의 결과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

- 2015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더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 CCTV 운영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등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교육부(2017)도 유아교육혁신방안을 통해 유아학대 예방 CCTV 설치를 제시함.
 - ◆ 2015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아동학대 발견의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부모의 열람권과 교사의 프라이버시권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설치 목적이었던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본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현황과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예방교육, 관련 정책에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정리함.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 및 추이를 살펴봄.
 -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원인 및 영향요인, 교육 등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살펴봄.
 -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및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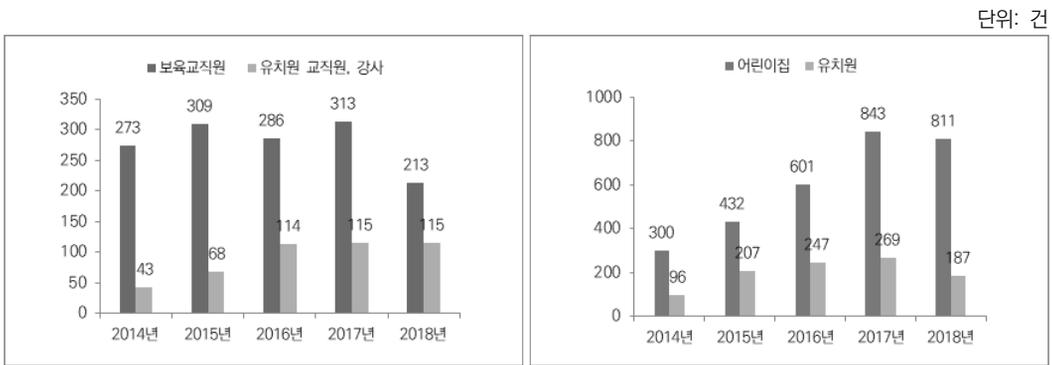
다. 연구방법

-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 ◆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누적·관리되고 있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함.
 - ◆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2 아동학대 및 예방교육 현황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사례¹⁾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말 기준 총 36,417건이며, 2014년 17,791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 아동학대 사례별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014년 12,459건에서 2018년 32,34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자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보육교직원 213건,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가 115건임.
-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총 24,604건) 중 어린이집 811건, 유치원 187건으로 각각 3.3%, 0.8%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2014년 어린이집 3.0%, 유치원 1.0%에서 2017년 각각 3.8%, 1.2%로 증가함.



[그림 1]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그림 2] 아동학대 발생장소: 어린이집·유치원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54, 58.

-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육교직원 또는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인 경우는 2018년 아동학대 사례(총 24,604건) 중 보육교직원 818건(3.3%),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89건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0.8%)임.

- ◆ 보육교직원은 2017년 840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치원은 2014년 99건에서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 아동의 연령은,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은 1~3세 아동 72.9%(596건),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는 4~6세 아동은 71.4%(35건)를 차지함.
- 피해 아동의 특성은 연도별로 특성이 없는 경우와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임.
 - ◆ 아동이 장애나 사회정서적 문제 등 개인적 특성보다는 아동학대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환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 보육·유아교육 현장에 단기교육을 받은 고연령 인력이 유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의 연령도 증가한 것임.
 - ◆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파악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음.
-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보육교직원은 2018년 기준, 정서학대가 37.9%, 신체학대 37.1%, 방임이 25.5%,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는 신체학대가 36.9%, 정서학대 36.2%, 방임 26.8%로 주로 신체학대나 정서학대가 많음.

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및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지표 상에 아동학대 및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점검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교육청 등에서 신고자의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3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인식

-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명, 유치원 교사 236명 대상으로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아동 및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가.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을 아동, 교사, 환경 측면에서 살펴봄.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이 '아동 개인요인'인 경우를 살펴봄.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78.2%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 12.2%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를 응답함.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교사는 행동문제를 꼽은 비율이 가정보다는 높고, 영아 비율이 높은 가정은 정서적 문제나 기질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유치원 교사 77.1%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으며, 14.5%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 5.3%는 기질을 꼽음.
 - ◆ 기관 유형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음.
- 정리하면,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원인이 아동 개인요인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모두 행동문제(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가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1〉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단위: %(명)

구분	기질	장애	정서적 문제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	(언어, 신체 등) 발달 문제	기타	계(수)
어린이집	4.6	0.4	12.2	78.2	1.3	3.4	100.0(238)
유치원	5.3	-	14.5	77.1	1.1	1.9	100.0(262)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98의 표를 재구성함.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요인’인 경우를 살펴봄.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6.2%는 직무스트레스, 29.8%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11.3%는 아동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을 응답함.
 - ◆ 기관유형 별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직무스트레스를 꼽은 비율이 민간/법인단체등이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등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유치원 교사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가 34.4%, 직무스트레스 31.7%,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 16.8%, 나머지는 5% 미만 정도임.
 - ◆ 기관 유형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음.
- 아동학대 주요 요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사 개인요인 중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를 보고 있어 차이가 남.

〈표 2〉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단위: %(명)

구분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아동발달 등 전문성 이해 부족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아동권리 또는 인권 인식 부족	아동 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	기타	계(수)
어린이집	46.2	2.5	4.6	29.8	3.8	11.3	1.7	100.0(238)
유치원	31.7	4.6	4.6	34.4	4.6	16.8	3.4	100.0(262)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99, 100의 표를 재구성함.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환경 요인’인 경우를 살펴봄.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7%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8.9%는 과도한 업무량, 11.3%는 장시간 근무시간, 7.6%, 7.1%는 각각 교사처우와 교사 양성과정 문제 순임.
 - ◆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 민간/법인단체 등은 과도한 업무량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사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50.8%, 과도한 업무량 21.4%, 장시간 근무시간 9.5%, 교사 양성과정 문제 5.7% 순임.
 - ◆ 기관 유형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환경요인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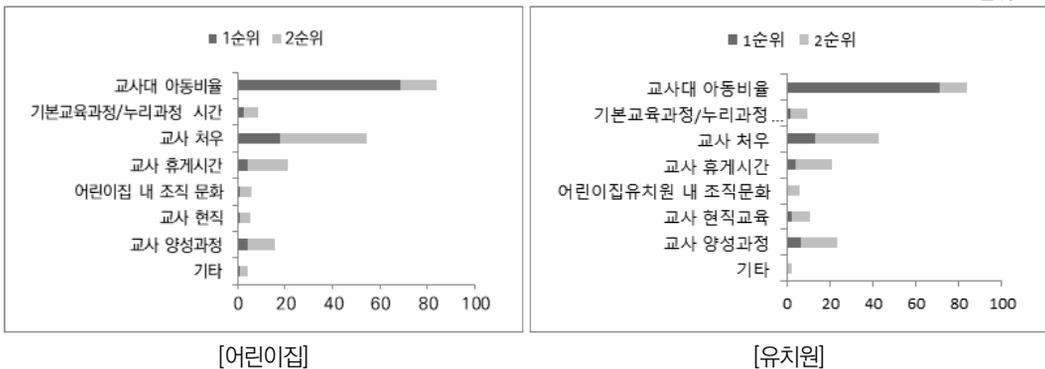
구분	장시간 근무시간	과도한 업무량	교사 처우	높은 교사대 아동 비율	교사 휴게시간	교사 관리 부족	교사 양성과정 문제	교사 재교육 부족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 문화	기타	계(수)
어린이집	11.3	18.9	7.6	48.7	1.3	0.8	7.1	0.4	2.1	1.7	100.0(238)
유치원	9.5	21.4	3.4	50.8	2.3	0.8	5.7	2.3	1.9	1.9	100.0(262)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01, 102의 표를 재구성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1,2순위로 조사함.

- ◆ 어린이집 교사는 1+2순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84.0%, 교사 처우 54.6%,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양성과정 16.0% 순임.
- ◆ 유치원 교사는 1+2순위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83.6%, 교사 처우가 43.1%, 교사 양성과정 23.7%,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현직교육 10.7% 순으로 답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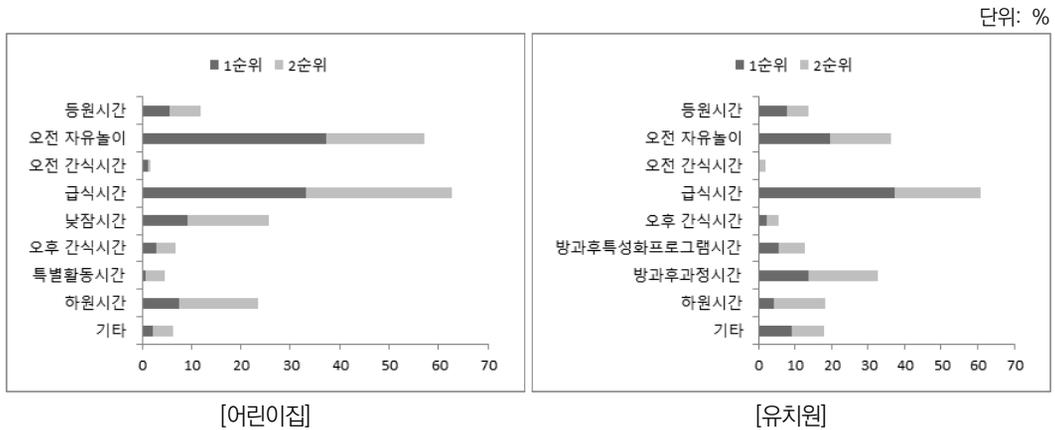


〈그림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03, 104의 표를 재구성함.

나. 교사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신고 인식수준

■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일과시간을 1,2순위로 알아봄.



[그림 4]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06, 105의 표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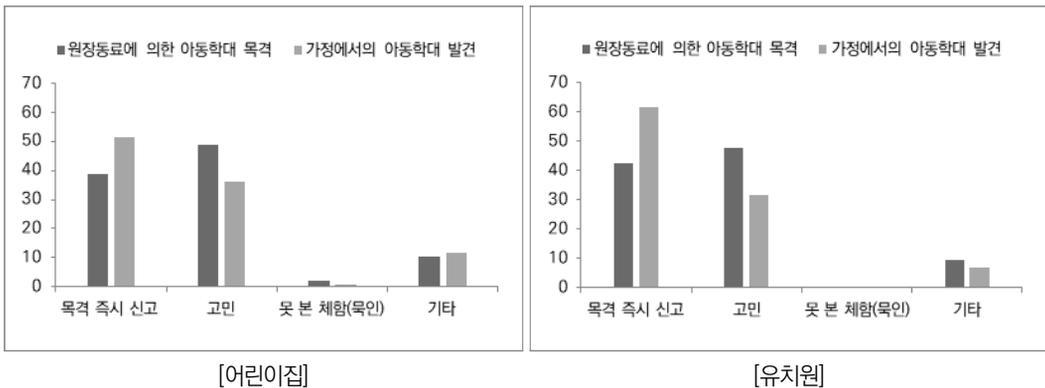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2순위로 급식시간이 62.6%이고,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57.1%, 낮잠시간 25.6%, 하원시간 23.5% 순임.
 - ◆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가정 오전 자유놀이 시간, 민간/법인단체 등은 급식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음.
- 유치원 교사는 1+2순위로 급식시간 60.7%, 오전 자유놀이와 방과후과정시간 각각 36.3%, 32.8%, 하원시간 18.3%, 등원시간 13.7%,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시간 12.6% 순임.
 - ◆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공립단설은 오전 자유놀이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립 법인은 급식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음.
-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목격 시 보육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해 알아봄.
 -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38.7%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 48.7%는 고민, 2.1%는 못 본체한다고 답함.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목격 즉시 신고한다와 고민한다 둘 다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원장 또는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목격할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고민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 유치원 교사는 목격 즉시 신고한다 42.4%, 고민한다 47.7%, 못 본체 한다 0.4% 정도임.
-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목격 즉시 신고한다’는 의견이 사립 법인 및 사인에 비해 높음.
- 사립 유치원 교사가 원장 또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민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됨.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 시 보육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해 알아봄.

-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51.3%는 목격 즉시 신고한다, 36.1%는 고민한다고 답하였고, 기타 의견도 11.8%임.
- ◆ 유치원 교사 61.5%는 목격 즉시 신고한다, 31.7%는 고민한다, 6.9%는 기타 의견을 제시함.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공통적으로 신고에 따른 보복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그림 5] 아동학대 목격(발견) 시 대처

자료: 양미선·김은영·엄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09, 110의 표를 재구성함.

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9.6%가 2018년 한 해 동안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고,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80.2%, 재직 중인 어린이집 46.8%, 인권교육 전문기관 26.2%, 시도청 16.5% 순임.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인권교육전문기관, 시도청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은 유아교육진흥원, 재직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권교육 전문기관 14.3%,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11.0%, 시도청 4.2% 순임.
- 유치원 교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97.7%가 2018년 한 해동안 1시간 이상 이수를 받았고, 교육기관은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58.6%, 시도교육청 55.5%, 인권교육 전문기관과 유아교육진흥원 각각 19.5%, 17.2%, 기타 10.2% 순임.
 - ◆ 공립 단설은 재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지만, 사립 법인은 시도청이나 인권교육 전문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시도 교육청이 35.5%로 가장 높고, 재직 유치원/어린이집 34.8%, 인권교육기관 12.5% 순임.

〈표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1시간 이상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인권교육 전문기관	재직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수)
어린이집	99.6	-	0.4	100.0(238)	16.5	8.0	80.2	13.1	26.2	46.8	11.0	(237)
유치원	97.7	1.1	1.1	100.0(262)	5.5	55.5	5.1	17.2	19.5	58.6	10.2	(256)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12, 113의 표를 재구성함.

2) 아동학대 예방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7.9%가 2018년 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0.7%로 많음.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95.9%로 낮음.
- 유치원 교사 중 93.1%만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교육기관은 시도 교육청이 59.8%로 다수를 차지함.
 - ◆ 사립 법인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88.6%로 낮음.

〈표 5〉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교육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 종합지원 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어린이집	97.9	-	2.1	100.0(238)	16.3	8.2	80.7	12.4	14.6	40.8	16.7	(233)
유치원	93.1	1.9	5.0	100.0(262)	6.6	59.8	2.5	20.1	13.5	36.1	19.3	(244)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16, 117의 표를 재구성함.

라. 아동학대 관련 의견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교사 중 26.4%만 동의하고, 동의정도는 5점 평균 2.6점임.
 - ◆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68.5%가 찬성하고 동의정도는 5점 평균 2.9점임.

〈표 6〉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평균
어린이집	25.6	24.4	23.5	21.4	5.0	100.0(238)	2.6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0.6	24.5	22.4	22.4	-	100.0(49)	2.4
민간/법인단체등	25.6	19.2	20.5	25.6	9.0	100.0(78)	2.7
가정	23.4	27.9	26.1	18.0	4.5	100.0(111)	2.5
$\chi^2(df)/F$			8.9(8)				1.4

자료: 양미선·김은영·엄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19의 표를 재구성함.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유치원 교사 중 44.7%가 찬성함.
 -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로 교사의 인권 보호가 39.3%로 높고, 반대 이유도 교사의 교권 침해가 43.4%로 높아 CCTV 설치가 교사의 인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7〉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

단위: %(명)

구분	아동 인권 보호	교사의 인권 보호	부모의 불안 해소	아동학대 증거자료 확보	기타	계(수)
전체	21.4	39.3	18.8	13.7	6.8	100.0(117)
공립 단설	50.0	50.0	-	-	-	100.0(2)
공립 병설	5.6	50.0	22.2	11.1	11.1	100.0(18)
사립 법인	24.0	40.0	8.0	16.0	12.0	100.0(25)
사립 사인	23.6	36.1	22.2	13.9	4.2	100.0(72)

자료: 양미선·김은영·엄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22의 표를 재구성함.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교사 중 43.4%는 교사의 교권 침해를 꼽았고, 26.2%는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20.7%는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들음.
 - ◆ 공립 단설은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공립 병설은 교사의 교권 침해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8〉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단위: %(명)

구분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 개인정보 노출	교사의 교권 침해	교사 사기 저하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기타	계(수)
전체	20.7	43.4	6.9	26.2	2.8	100.0(145)
공립 단설	27.3	18.2	9.1	45.5	-	100.0(11)
공립 병설	22.8	45.5	6.9	21.8	3.0	100.0(101)
사립 법인	-	70.0	10.0	20.0	-	100.0(10)
사립 사인	17.4	34.8	4.3	39.1	4.3	100.0(23)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22의 표를 재구성함.

-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정도를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0점 만점에 평균 7.4점, 유치원 교사는 평균 7.1점으로 중간 이상 정도로 보고 있음.
-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4.1%는 부모의 인권 의식, 25.6%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13.9%는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13.0%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선택함.
 - ◆ 유치원 교사 중 54.2%는 부모의 인권 의식, 26.0%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8.8%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8.0%는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 지적함.

〈표 9〉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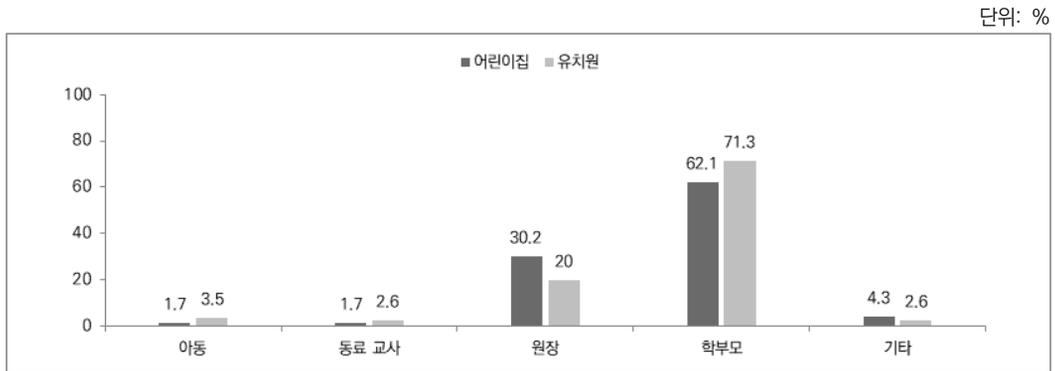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인권 의식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부모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	부모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기타	계(수)
어린이집	44.1	25.6	13.9	13.0	3.4	100.0(238)
유치원	54.2	26.0	8.0	8.8	3.1	100.0(262)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24, 126의 표를 재구성함.

- 교사 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에 대해 알아봄.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9.7%, 유치원 교사 중 22.1%만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함.
 - ◆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다 교사의 인권 보장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 부모를 지목함.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62.1%가 학부모를 꼽았고, 30.2%는 원장, 아동이나 동료교사는 각각 1.7%로 소수임.
 -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학부모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유치원 교사도 교사 인권 침해 주체로 학부모를 꼽은 비율이 71.3%로 높았고, 다음으로 원장 20.0%, 아동 3.5%, 동료교사 2.6% 순임.
 - 사립 사인이거나, 100명 이상 규모에서 원장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6]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29.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교사 인권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69.3%임. 유치원 교사는 55.0% 정도에 그침.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다 민간/법인단체나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음.
 - ◆ 인권교육 참여 시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3.3%로 다빈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권교육전문기관 23.0%, 시도교육청 8.5%, 시도청 7.9% 순임.
- 유치원 교사는 55.0% 정도이며, 공립이 사립보다 높음.
 - ◆ 인권교육 참여 시 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이 47.2%, 인권교육전문기관 34.0%, 유아교육진흥원 11.1% 순임.

〈표 10〉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 시 교육기관						
	참여 경험 있음	(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인권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어린이집	69.3	(238)	7.9	8.5	73.3	6.7	23.0	10.3	(165)
유치원	55.0	(262)	2.8	47.2	1.4	11.1	34.0	20.8	(144)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30, 131의 표를 재구성함.

-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56.7%, 유치원 교사 중 71.4%는 도움된다고 답함.
-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3%는 교사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8.4%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동의비율이 56.7%로 절반이 넘으며, 동의정도는 5점 평균 3.5점
 - ◆ 유치원 교사는 응답자 중 55.0%가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16.4%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도움된다는 비율이 71.4%로 높은 편이며,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3.8점임.

〈표 11〉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어린이집	2.5	7.6	33.2	48.3	8.4	100.0(238)	3.5
유치원	1.1	5.7	21.8	55.0	16.4	100.0(262)	3.8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32, 133의 표를 재구성함.

-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 재직 교사 대상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음.
 -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 사례관리는 92.9%, 교사 사례관리는 9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도 부모들로부터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고, 기관-가정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 유치원 교사 중 아동 사례관리는 98.1%, 교사 사례관리는 96.9%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유치원 교사 대부분 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 이용 유아에 대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2〉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아동 사례관리				교사 사례관리			
	필요	매우 필요	(수)	평균	필요	매우 필요	(수)	평균
어린이집	61.8	31.1	(238)	3.2	60.9	32.8	(238)	3.3
유치원	41.6	56.5	(262)	3.5	40.8	56.1	(262)	3.5

주: 평균은 4점 척도(①절대 불필요~④매우 필요)로 산출한 값임.

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36, 137의 표를 재구성함.

4

정책 제언

- 어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대부분 아동권리 보장에서부터 아동학대 처리 절차까지 매우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짐.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함.
- ◆ 부모 자신도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함.
 - ◆ 어린이집·유치원의 개방성을 높이고,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회복함.
- 아동학대 발생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함.

| 참고 문헌 |

교육부(2017). 내부자료.

양미선·김은영·염혜경(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PART

02

지역사회 및 가정 양육 지원

-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정림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권미경

| 이슈페이퍼 2020-09 |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정림

1. 서론
2.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3.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와
실제의 간극 현황
4. 육아정책 관련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의견 및 요구
5.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방안
참고문헌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 요약 ◆◆

- 초등입학기인 초등1학년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는 ‘학원’(81.0%)이며, 다음으로 ‘부모 직접 돌봄’(74.4%), ‘방과후학교’(62.7%), ‘초등돌봄교실’(16.6%), ‘조부모 돌봄’(10.6%) 순으로 나타남(중복응답).
-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할 시, 대부분 사교육으로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공공부문 육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는 ‘초등돌봄교실 확충’, ‘공공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육아 휴직 등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 강화’,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 등을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음.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육아 정책의 변화로 인한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부모의 취업 유무 및 가구의 특성 등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맞벌이 여부에 따라 초등입학기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와 요구는 다를 것임.
 - ◆ 아동수당 지급, 남성 육아 휴직 강화와 같은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동은 영유아 자녀 뿐 아니라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이용하기를 원하는 육아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여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하여 육아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 국가적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고는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인 1차년도에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토대로 설정되었던 ‘육아서비스’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 ◆ 즉, 육아서비스의 범위를 초등돌봄교실 등과 같은 기관 돌봄, 가정 내 개인양육 지원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사교육, 시간 지원과 비용 지원까지를 포함한 비교적 넓은 범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2018~2022년까지 5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로써, 조사는 일정 수의 표본을 구축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매년 새롭게 출생하는 출생아(0세) 가구를 표본으로 추가하는 반면 표본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일정 부분 대체하는 대체표본 방식으로 진행함.
 - ◆ 본고에서는 영유아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은 제외하고, 2018년도의 영유아 및 영유아의 형제 표본에서 1년의 시간 경과로 인하여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가. 응답자 특성

-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43가구에 대하여 분석함.
- ◆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46.5%, 외벌이 가구는 53.5%이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 26.5%, 4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 26.3%, 600만원 이상 22.2%로 나타남. 총 자녀수는 1명이 22.3%, 2명이 58.5%, 3명이상이 19.2%이고, 거주 지역 규모는 대도시 39.1%, 중소도시 44.2%, 읍면지역 16.7%임.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443)		
맞벌이 가구 여부		총 자녀 수	
맞벌이	46.5(206)	1명	22.3(99)
외벌이	53.5(237)	2명	58.5(259)
가구 소득		3명 이상	19.2(85)
299만원 이하	8.3(37)	거주 지역 규모	
300~399만원 이하	26.5(118)	대도시	39.1(173)
400~499만원 이하	26.3(117)	중소도시	44.2(196)
500~599만원 이하	16.6(74)	읍면지역	16.7(74)
600만원 이상	22.2(99)		

주: 가구 소득 별 응답자 수 합계가 445명인 이유는 가중치 적용에 따른 반올림 때문임.

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전반적인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 초등학교 1학년 자녀 443명이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를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학원 이용’ 비율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직접 돌봄’ 74.4%, ‘방과후학교 이용’이 62.7%로 나타남.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16.6%, ‘조부모 돌봄’은 10.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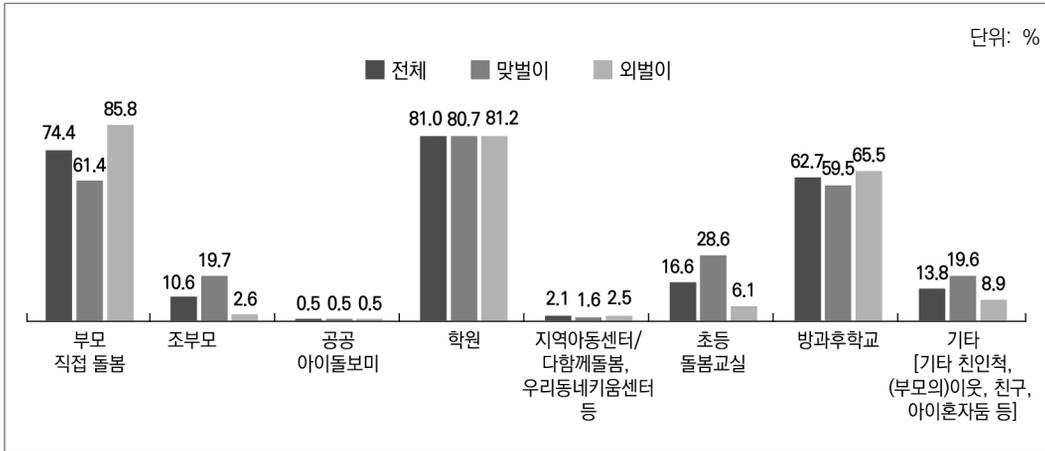
- ◆ 육아서비스 중에서 ‘학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은 맞벌이 여부 및 거주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음.
- ◆ 반면, 소득이 399만원 이하로 낮은 가구의 경우와 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 직접 돌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복수 응답)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전체	74.4	10.6	2.8	5.4	-	0.5	4.8	81.0	2.1	16.6	62.7	0.8	100.0(44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1.4	19.7	5.4	6.8	-	0.5	7.4	80.7	1.6	28.6	59.5	-	100.0(206)
외벌이	85.8	2.6	0.5	4.3	-	0.5	2.6	81.2	2.5	6.1	65.5	1.5	100.0(23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1.9	5.3	-	2.9	-	2.9	2.9	61.3	5.8	22.8	61.9	5.3	100.0(37)
300~399만원 이하	85.8	4.2	-	3.3	-	-	2.9	78.4	1.7	10.6	62.1	0.7	100.0(118)
400~499만원 이하	76.4	5.3	2.8	8.7	-	-	4.5	83.9	2.6	16.8	62.5	0.7	100.0(117)
500~599만원 이하	74.5	17.6	1.5	4.1	-	-	9.4	89.8	2.9	13.7	61.8	-	100.0(74)
600만원 이상	59.6	21.2	8.1	6.1	-	1.1	4.8	81.2	-	23.1	64.6	-	100.0(99)
총 자녀 수													
1명	76.5	10.5	3.3	11.1	-	1.1	2.8	91.1	-	9.8	62.3	0.9	100.0(99)
2명	73.6	9.4	1.2	3.6	-	-	4.9	81.8	2.8	18.1	62.0	0.7	100.0(259)
3명 이상	74.7	14.3	7.1	4.6	-	1.3	6.8	66.5	2.3	19.7	65.5	1.0	100.0(8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78.1	8.5	1.5	4.0	-	-	5.5	83.6	1.0	14.4	69.2	1.5	100.0(173)
중소도시	71.3	12.2	4.4	7.2	-	1.1	5.0	78.5	3.3	17.1	59.1	0.6	100.0(196)
읍면지역	74.3	11.4	1.4	4.3	-	-	2.9	81.4	1.4	20.0	57.1	-	100.0(74)

주: ① 부모 직접 돌봄 ② 조부모 ③ 기타 친인척 ④ (부모의) 이웃, 친구 ⑤ 비혈연 육아/가사 도우미 ⑥ 공공 아이돌보미 ⑦ 아이 혼자 돌 ⑧ 학원 ⑨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⑩ 초등돌봄교실 ⑪ 방과후학교 ⑫ 기타



[그림 1]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복수 응답)

다.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초등1학년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실태, 이용 이유,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실태

-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구의 초등 1학년 443명 중 73명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모두 오후 돌봄을 이용하고 있었고, 아침 및 저녁돌봄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 유형

구분	신청여부		계(수)	이용여부		계(수)
	신청	미신청		이용	미이용	
아침돌봄(아침 06:30~09:00)	1.5	98.5	100.0(73)	0.0	100.0	100.0(1)
오후돌봄(오후 방과후~17:00)	100.0	0.0	100.0(73)	100.0	0.0	100.0(73)
저녁돌봄(저녁 17:00~22:00)	2.3	97.7	100.0(73)	44.3	55.7	100.0(2)

◆ 초등돌봄교실 이용 이유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가 78.4%로 가장 많았음.

-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 이유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라는 이유가 외벌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읍면지역에 비해서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초등돌봄교실 이용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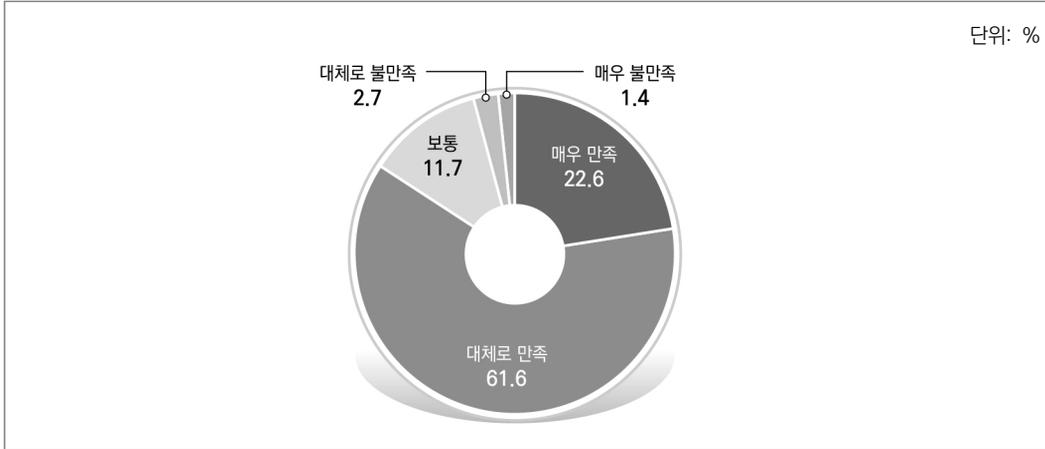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프로 그래미 좋아서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양육 부담을 덜기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놀이 상대가 없어서	전인적 발달을 위해	돌봄비용이 나라에서 지원돼서	계(수)
전체	78.4	7.0	4.4	4.3	3.0	2.9	-	-	100.0(7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4.0	5.1	0.0	5.4	3.7	1.8	-	-	100.0(59)
외벌이	55.4	14.8	22.5	0.0	0.0	7.3	-	-	100.0(14)
$\chi^2(df)$	17.241(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96.6	3.4	0.0	0.0	0.0	0.0	-	-	100.0(25)
중소도시	77.4	6.5	9.7	0.0	6.5	0.0	-	-	100.0(34)
읍면지역	50.0	14.3	0.0	21.4	0.0	14.3	-	-	100.0(15)
$\chi^2(df)$	30.459(10)***								

** $p < .01$, *** $p < .001$.

◆ 초등돌봄교실 이용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비율이 84.2%(매우 만족 22.6% + 대체로 만족 6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오후돌봄/저녁돌봄)

■ 초등학교 1학년이 이용하고 있는 육아서비스 중 방과후학교 이용 실태, 이용 이유,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본 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43가구 중 278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음. 이 중 ‘학습관련 프로그램’은 196명,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은 19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평균 개수를 조사한 결과, 학습관련 프로그램 평균 1.5개,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평균 1.7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류별 이용 행태

프로그램 종류	이용률	응답자	이용 개수
학습 관련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70.5	278	1.5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68.5	278	1.7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주된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특기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인적 발달을 위해’ 26.1%,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9.1% 순으로 나타났음.

-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인적 발달을 위해’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외벌이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표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특기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전인적 발달을 위해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	교육비용이 나라에서 지원돼서	놀이 상대가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26.8	26.1	19.1	11.9	10.3	3.6	1.1	1.1	100.0(27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3	19.1	13.2	11.6	19.3	3.0	0.7	0.9	100.0(123)
외벌이	22.4	31.7	23.7	12.2	3.2	4.2	1.4	1.3	100.0(155)
$\chi^2(df)$	29.017(7)***								

*** $p < .001$.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습관련 프로그램’과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류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학습 관련 프로그램 (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13.6	67.2	15.2	3.4	0.6	100.0(196)	3.9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등)	14.3	64.9	18.9	1.4	0.6	100.0(190)	3.9

주: 평균은 매우 만족(5점)~매우 불만족(1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함.

라. 개별돌봄서비스, 학원, 기타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육아서비스(방과후학교, 학원 등) 이용 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23.1%, ‘원하는 시간에 다른 육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17.3% 순으로 나타났음.

〈표 8〉 초등학교 1학년 자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주된 이유(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육아서비스 이용비용 부담	희망 시간대 기관 이용 어려움	아이 연령에 개별 돌봄이 적합하다고 생각	마땅한 기관 부재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학교 등하원 부담)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 맘에 안들	기타	수
전체	61.5	23.1	17.3	9.6	7.7	3.8	1.9	5.8	5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5	20.9	20.9	11.6	9.3	2.3	2.3	7.0	43
외벌이	66.7	33.3	0.0	0.0	0.0	11.1	0.0	0.0	9

■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특기교육 등)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본 연구를 위한 응답 대상 가구의 초등학생 443명 중, 학원(특기교육 등)을 이용 중인 초등학생은 약 81.0%인 359명에 해당하였음.
- ◆ ‘체육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 35.7%, ‘미술’ 34.2%, ‘영어’ 21.7%, ‘수학’ 15.0%, ‘국어’ 8.7%, ‘기타’ 5.2%, ‘과학·창의’ 4.7%, ‘무용’ 1.8%, ‘기타외국어’ 0.2% 순으로 나타났음.
- ◆ 즉, 본 연구의 대상 중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대다수였으며, 대부분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학원(특기교육 등) 프로그램 종류별 이용 행태

단위: %, 명, 개, 회, 분

학원 프로그램 종류	이용률	응답자	이용 개수	이용 빈도(주당)	이용 시간(주당)
음악	35.7	359	1.0	4.0	226.4
미술	34.2	359	1.0	2.4	136.8
체육	61.3	359	1.1	4.3	246.9
무용	1.8	359	1.0	2.2	119.1
수학	15.0	359	1.0	3.3	127.8
과학·창의	4.7	359	1.4	1.9	93.2
국어	8.7	359	1.1	3.1	142.5
영어	21.7	359	1.0	3.4	211.0
기타외국어	0.2	359	1.0	5.0	300.0
기타	5.2	359	1.1	2.8	170.7

- ◆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 계발’을 위해서가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원해서’ 23.9%, ‘선행학습을 위해’ 9.3%, 순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 계발’을 위해서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학원(특기교육 등) 이용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의 재능, 소질 계발	자녀가 원해서	선행 학습을 위해	차별화 교육을 위해	주변에 마음에 드는 공공 돌봄 기관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서	놀이 상대가 없어서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기타	계(수)
전체	49.2	32.9	9.3	1.6	1.2	1.2	1.1	0.5	3.1	100.0(35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2.9	36.6	9.4	0.6	2.6	1.9	1.8	1.0	3.1	100.0(166)
외벌이	54.6	29.6	9.2	2.4	0.0	0.5	0.6	0.0	3.1	100.0(192)
$\chi^2(df)$	15.637(8)*									

* $p < .05$.

- 기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초등학생 443명 중 키즈카페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17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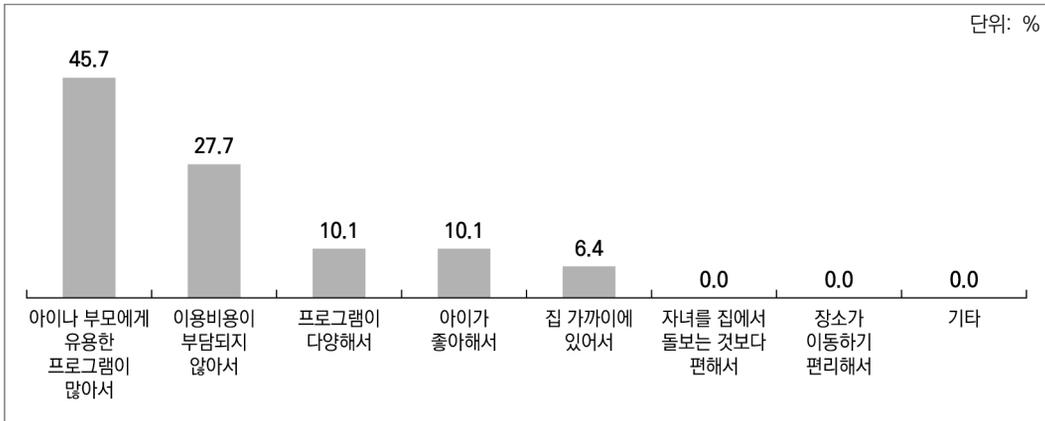
- 이를 통해 공공 육아서비스에 비해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1〉 기타 서비스 유형별 이용 행태

단위: %, 명, 개, 회, 시간

구분	이용률	응답자	이용빈도(주당)	이용시간(1회)
키즈카페	39.3	443	1.5	2.0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3.8	443	1.7	1.9

- ◆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이유로는 ‘아이나 부모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서(45.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서(27.7%)’로 나타났음.



〈그림 3〉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주된 이유

- ◆ 기타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5점 만점에 평균 4.2점으로 이용 만족도가 높았음.
- 키즈카페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8.9%인 반면,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31.6%로 키즈카페에 비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 22.7%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기타 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키즈카페	8.9	52.0	33.7	4.8	0.6	100.0(174)	3.6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31.6	57.0	6.4	5.1	0.0	100.0(17)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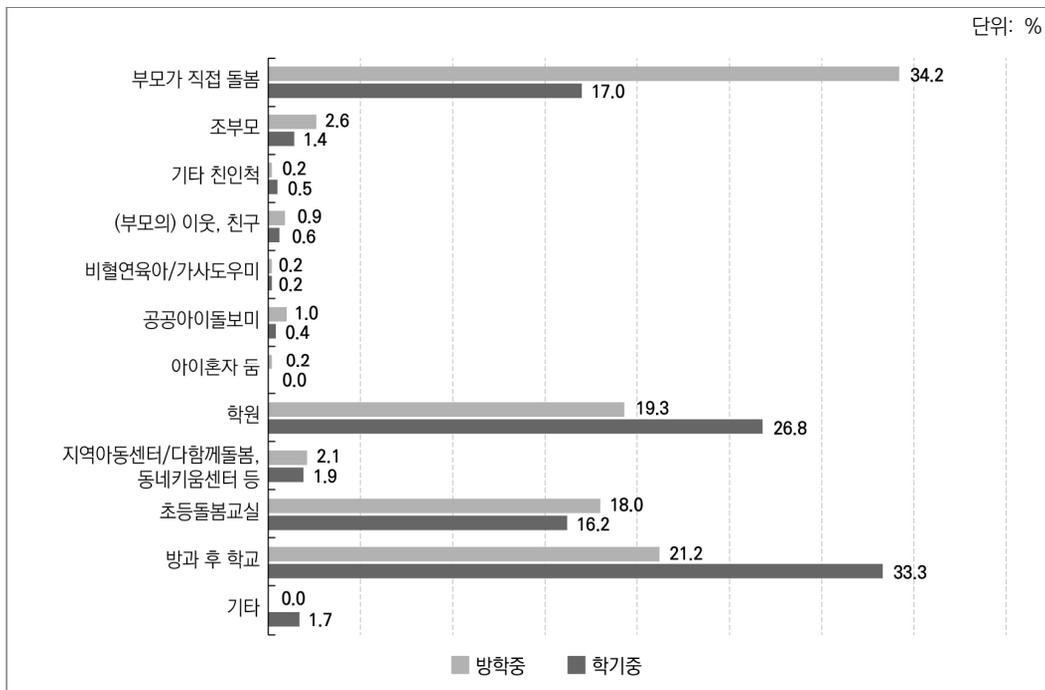
주: 평균은 매우 만족(5점)~매우 불만족(1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함.

3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와 이용 실제의 간극 현황

가.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이용 희망 육아서비스

-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희망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학기 중에는 ‘방과 후학교’가 33.3%로, 방학 중에는 ‘부모 직접 돌봄’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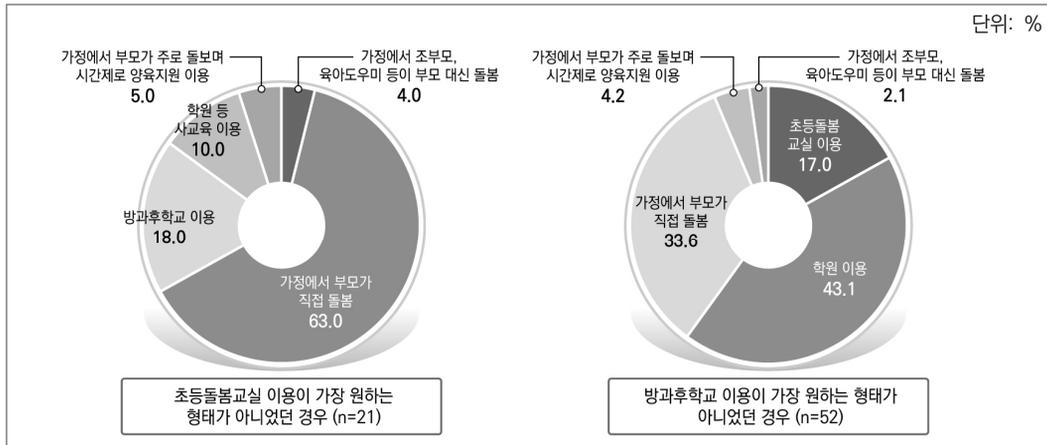


[그림 4] 초등자녀의 학기 중 및 방학 중 이용 희망 육아서비스

나. 원하는 양육형태와 실제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육아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경우, 가장 원하는 육아서비스 형태는 다음과 같았음.
 - 초등돌봄교실 이용하고 있지만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닌 사례에서는 가정에서 ‘부모 직접 돌봄’이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방과후학교’로 18.0%였음.

- ◆ 방과후학교 이용하고 있지만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닌 사례에서는 43.1%가 ‘학원 이용’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가정에서 ‘부모 직접 돌봄’(33.6%), ‘초등돌봄교실 이용’(1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경우 ‘일을 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났고, 방과후학교는 ‘비용 부담’, ‘일을 하고 있어서’ 순으로 나타남.

다. 원하는 이용 시간의 간극과 이유

■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 초등돌봄교실 이용 가구의 응답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침 상 일정 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이 75.9%,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가 13.3%,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10.8%로 나타났음.
- ◆ 방과후학교 이용 가구 중 25.9%는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4.5%는 ‘선착순, 추첨에 떨어졌기 때문’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19.7% 순으로 나타났음.

-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
 - ◆ 초등돌봄교실 이용 가구의 응답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76.3%,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23.7%로 나타났다.
 - ◆ 방과후학교 이용 가구의 경우 전체 중 62.0%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중 19.0%는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19.0%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음.

4 육아정책 관련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의견 및 요구

가.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 대상 육아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의사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가구에 대해 육아 정책이 변화할 시 육아 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정도에 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시 이용 의사는 대부분 변함이 없었으나 초등돌봄교실 중 오후돌봄이 확충될 시 이용 의사 증가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다함께 돌봄 센터는 49.6%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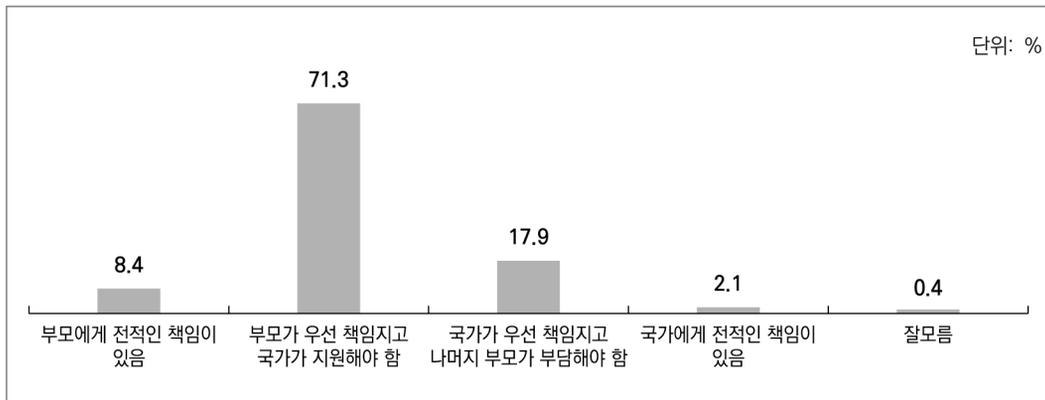
〈표 13〉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정책 변화 시 육아서비스 이용의사 변화 정도

단위: %

정책 변화	해당 서비스		이용 의사 많이 감소	이용 의사 감소	이용 의사 변함 없음	이용 의사 증가	이용 의사 많이 증가	계
1. 초등돌봄교실 확충 (1,200여실)	공적 초등 돌봄 서비스	아침돌봄 (06:30~09:00)	9.7	5.3	54.2	20.3	10.5	100.0
		오후돌봄 (방과후~17:00)	1.8	1.5	24.5	45.7	26.4	100.0
		저녁돌봄 (17:00~22:00)	8.0	5.0	45.4	28.5	13.0	100.0
2.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료 자부담) 100개소 확충	공적초등돌봄 서비스		4.7	4.5	41.2	35.3	14.4	100.0

나. 초등학교 정규과정 후 방과후 돌봄에 관한 부모 의견

-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가구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정규과정 후 방과후 돌봄 과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 정도를 응답하도록 함.
-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관하여 부모와 국가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3%가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 나머지 응답자 중 17.9%는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해야 함’, 8.4%는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2.1%는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 0.4%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함.



[그림 6] 초등입학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 단위

다. 육아서비스별 정책 개선 요구

- 육아서비스별 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은 ‘초등돌봄교실확충’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돌봄프로그램 개선’ 22.2%, ‘초등돌봄교실시간 확대’ 21.0%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 개별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은 ‘공공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22.0%, ‘공공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18.0% 순으로 나타남.
-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정책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19.3%,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17.5%,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 인지도 제고’가 각각 10.5% 순으로 나타남.
- ◆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관련 정책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가 24.5%로 가장 많았고,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및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각각 21.3% 순으로 나타남.
- ◆ 지역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관련 정책은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가 38.9%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5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방안

■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및 내실화
 -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16.6%로 많지 않았음.
 -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 중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됨(서울특별시 교육청, 2019).
 -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초등돌봄 수요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교육부, 2018).
 - 일부 초등입학자녀 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돌봄 위주로만 운영되어 아동의 흥미

유발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돌봄 기능 강화

- 다함께돌봄센터 등은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도서관을 활용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일부 지역에 활용되고 있었음
- 이러한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활용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형성 등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 육아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제공 확대

- ◆ 초등입학기 자녀들이 키즈카페 등의 이용이 많았고 이용 만족도가 높았지만, 육아 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키즈카페 이용 만족도 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공공부문 육아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제공 확대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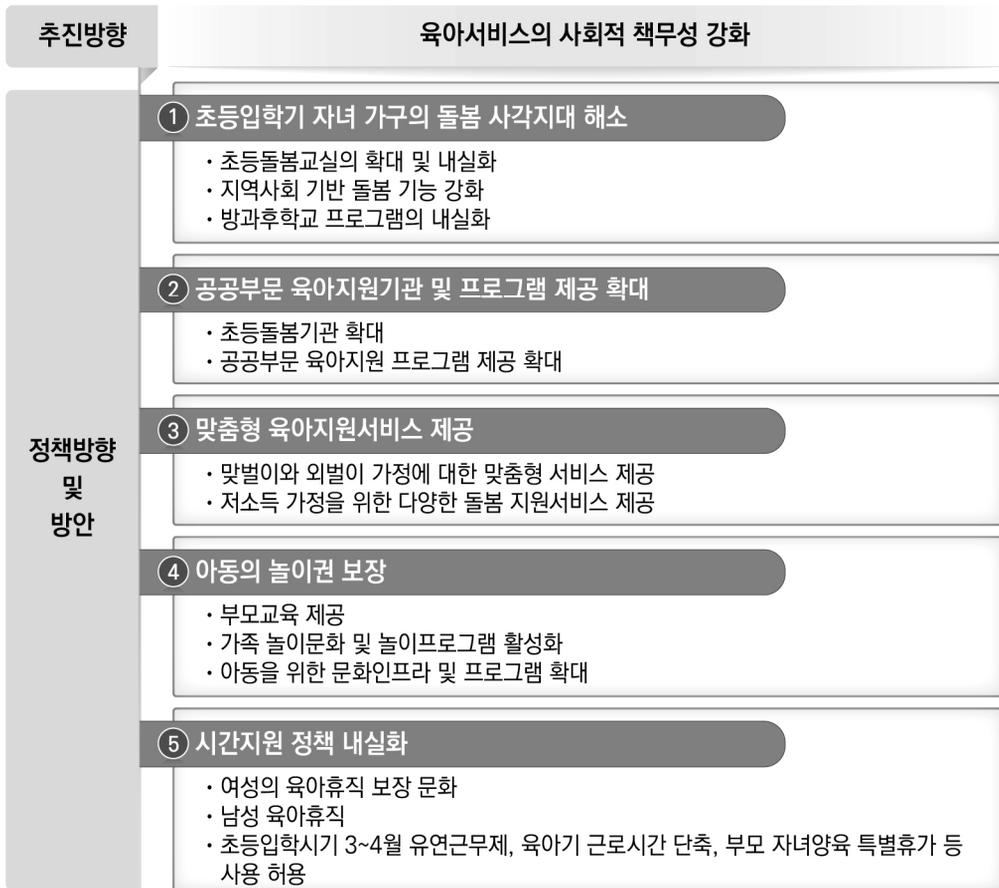
■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 본 연구 결과, 소득수준,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등에 따른 육아서비스 요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이들 요구를 반영한 육아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수요자의 만족도가 충족될 것임.

■ 아동의 놀이권 보장

- ◆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할 시에는 대부분 사교육으로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 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게 특기와 적성 개발의 기회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을 간과함. 따라서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족 놀이문화 및 놀이프로그램 활성화, 아동을 위한 문화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 초등학교입학 자녀를 둔 가구 대상의 시간지원 정책 마련
 - ◆ 초등학교 입학이 하게 되면서 영유아시기에 비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기]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 육아서비스 대응방안 개요

I 참고 문헌 I

- 교육부(2018). 2018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2019학년도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Ⅱ).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0-03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1. 문제제기
 2. 다자녀 가구 현황
 3.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 실태
 4.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연구위원

◆◆ 요약 ◆◆

- 전반적인 출생율 저하 현상 속에서 다자녀 가구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총 양육비용(가구 당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 모든 양육비용 비목에서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며,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 문화생활비 순으로 양육비용 지출액이 큼.
- 가구 당 총 양육비용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아동 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함.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아동수당 지원 제도에 다자녀 가구 지원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 외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대해서는 식비 지원 및 문화생활비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1

문제제기

- 한국의 다자녀 가구 비중은 매해 감소하고 있음(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20. 3. 26 인출).
 - ◆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만혼, 양육부담, 유배우 가구의 후속 출산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음.
 - ◆ 이철희(2012)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한국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주로 유배우 여성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 2019)」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동 보고서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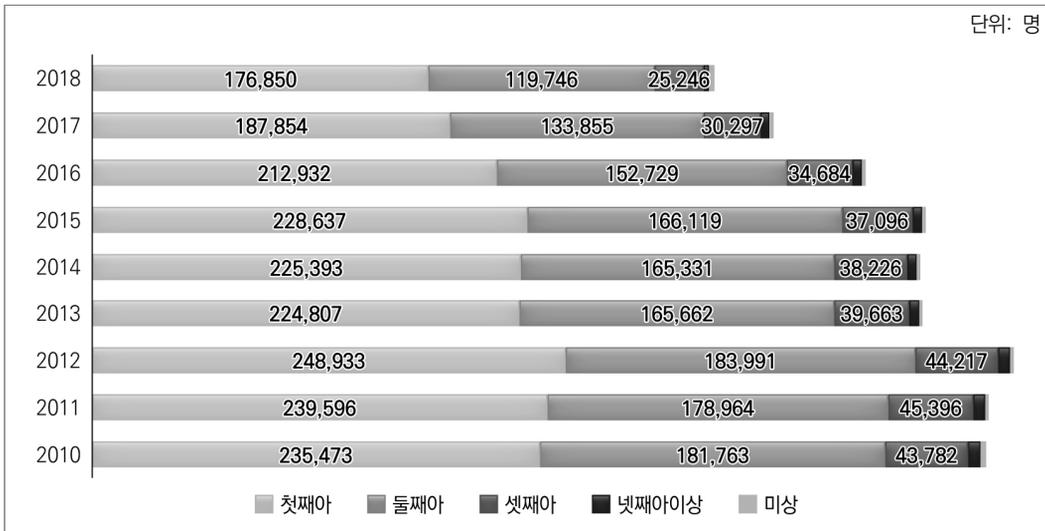
비율 감소에 기인하며,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10년간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일부 저해하는 효과¹⁾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이철희, 2018).

-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육아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20).
 - ◆ 법령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개별 정책 사업 등에서 다자녀 가구의 분류 기준으로 대체로 3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음.
 - ◆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저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2020. 3. 30 인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또한 아동과 육아 가구의 삶의 질 제고에 보다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있음.
- 다자녀 가구는 다른 육아가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50).
 -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구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어디에서 가중되는지를 살펴보고, 적합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 본고는 간략하게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 현황을 검토 한 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자료를 분석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봄.

1) 합계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이유는 유배우 출산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여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임.

2 다자녀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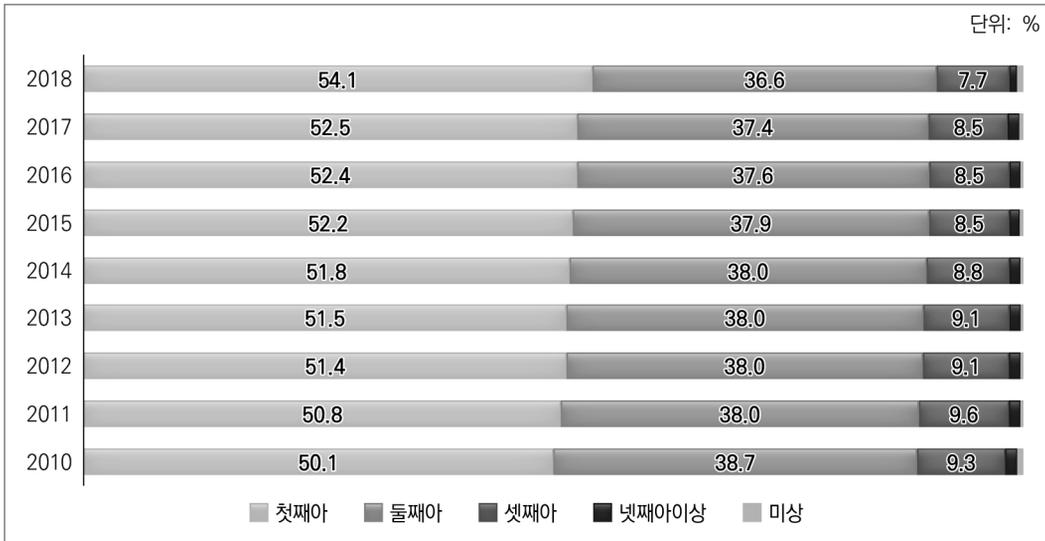
- 다자녀 가구란 현재로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음.
 - ◆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로 할 것인지 3명이상인 경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지원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은 없음.
 - ◆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자녀 가구 현황 또한 아동 단위로는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 출생아 현황 혹은 가구 영유아 가구 비중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단, 다수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출생아가 소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총 출생아는 326,822명에 그침(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2020. 3. 26 인출).



[그림 1]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는 첫째아가 2010년 ~2018년 모두 절반 이상인 가운데,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수도 해마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임.
- ◆ 2018년 기준 둘째 출생아 수는 119,746명(36.6%)이며, 셋째아는 25,246명(7.7%), 넷째아 이상은 2,918명(0.9%)에 그침.
- ◆ 연도별 전체 출생아를 10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첫째아 비중은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둘째아 이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즉,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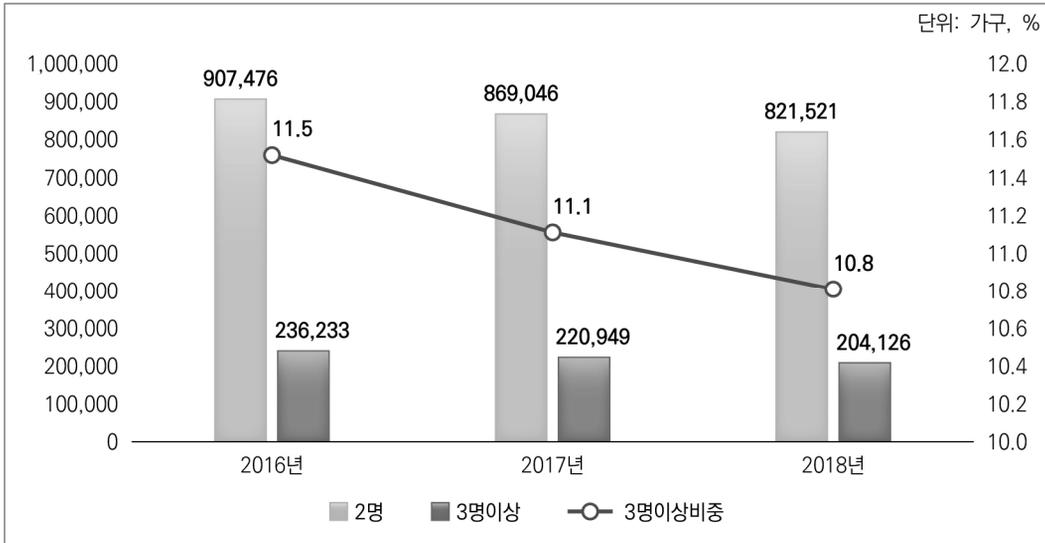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 한편,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의 자녀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884,247 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58,600가구로 전체의 45.6%이며, 자녀가 3명인 가구는 204,126가구로 10.8%임.
- ◆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란 만6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로, 가구내 영유아가

1명이상 있는 가구를 의미함.

- ◆ 전체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수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수 및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뿐 아니라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수와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 ◆ 이는 유배우 가구 중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전반적인 출산을 저하는 비단 셋째아 이상의 후속 출산 감소 뿐 아니라 첫째아 출산 자체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연도별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의 자녀수별 현황

주: 영유아 자녀 가구란 만6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3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 실태

가. 분석 대상 특성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분석을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 분석 자료는 가구용 조사에서 수집한 육아 가구의 생활비 및 양육비용 자료임.
 - ◆ 주의할 점은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의 응답 대상자는 2012년생(초등 1학년생)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따라서 아동 당 양육 비용 등의 경우, 초등2학년 이상 자녀는 해당 육아 가구 내 다른 자녀(초등1학년생 이하 자녀)로 인해 응답 대상에 포함된 응답자일 뿐이며 원표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총 1,902개의 응답 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55가구(13.4%)로 앞서 살펴본 통계청 자료에 비해 약간 더 많은 비중을 보임.
 - ◆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또한 987가구(51.9%)로 통계청 자료에 비해 많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660가구(34.7%)였음.
 - ◆ 양육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분석대상 가구 특성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02 (100.0)	660 (34.7)	987 (51.9)	255 (13.4)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153 (100.0)	78 (51.0)	61 (39.9)	14 (9.2)
	300~399만원이하	510 (100.0)	188 (36.9)	261 (51.2)	61 (12.0)
	400~499만원이하	485 (100.0)	153 (31.6)	251 (51.8)	81 (16.7)
	500~599만원이하	347 (100.0)	112 (32.3)	200 (57.6)	35 (10.1)
	600만원이상	407(100.0)	129 (31.7)	214 (52.6)	64 (15.7)
월평균 가구소득	498.7	483.2	503.1	522.1	

나.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

- 다자녀 가구의 총 양육비용(가구 당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됨.
 - ◆ 다자녀 가구의 가구 월평균 생활비 총 지출액은 전체 평균 332만6천원이며,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377만5천원으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생활비 지출액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 총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일 때는 86만6천원에 그쳤으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184만9천원으로 자녀가 1명일 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 생활비에서 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9%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7.6%였으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48.4%까지 증가하여, 전체 생활비의 절반 가량이 자녀 양육을 위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또한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 즉,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양육비용 총액 뿐 아니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면서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다자녀 가구 총양육비용 및 비중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총 지출액	평균 가구소득	총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총양육비용 비중	가구소득 대비 총양육비용 비중
전체 평균	332.6	498.7	126.5	36.9	28.2
총 자녀수	1명	304.5	86.6	27.6	19.5
	2명	339.8	138.2	40.2	31.1
	3명이상	377.5	522.1	184.9	48.4
	F	37.9***	1.79	245.0***	468.4***
사례수	(1,902)	(1,902)	(1,902)	(1,902)	(1,902)

*** $p < .001$.

-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은 주요 비목별로 자녀수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
 - ◆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된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월평균 44만1천원이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9만5천원이었으나 3명이상인 경우에는 66만7천원에 달함.

- 다음으로 식비에 대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월평균 26만7천원이었으며,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41만9천원인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여가 및 문화생활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심지어 자녀를 위한 보험비조차도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3〉 다자녀 가구 비목별 양육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주요 비목별	식비	26.7	16.8	29.4	41.9	255.8***
	피복비	9.8	6.4	11.0	15.2	132.1***
	보건의료비	5.2	3.9	5.7	6.6	22.1***
	교육보육비	44.1	29.5	48.0	66.7	84.4***
	여가 및 문화생활비	18.4	14.3	20.0	22.5	20.4***
	개인유지비	5.5	4.4	5.8	7.2	28.4***
	자녀를 위한 보험비	11.6	6.8	13.2	18.1	140.6***

*** $p < .001$.

- 양육비용 지출에는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비목별 양육비용을 가구소득과 총 자녀수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자녀가 3명이상인 육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은 월평균 66만7천원인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2만9천원에 그쳤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98만5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녀수가 동일한 육아가구 내에서도 가구소득이 많아지면 교육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은 발견됨. 즉,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교육보육비 지출을 증가시킴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암시함.

〈표 4〉 자녀수별 가구소득수준별 양육비용(교육보육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가구 소득	전체	44.1	29.5	48.0	66.7
	299만원이하	26.2	13.7	38.2	42.9
	300~399만원이하	29.1	17.9	33.1	46.9
	400~499만원이하	39.7	27.8	43.5	50.6
	500~599만원이하	51.9	37.2	53.5	90.1
	600만원이상	68.1	51.4	69.2	98.5
	F	66.30***	21.88***	27.65***	20.15***

*** $p < .001$.

- 한편, 식비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와는 달리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양육비용 중 식비는 월평균 41만9천원이었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는 29만8천원에 그친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49만5천원까지 식비로 인한 양육비용이 증가함.
 - ◆ 반면,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월평균 16만8천원을 자녀 양육을 위해 식비 지출을 하고 있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 식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 즉, 양육비용 중 식비는 가구소득보다는 자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비목임을 암시함. 또한,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비도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 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교육보육비용에 비해 적음. 결과적으로 식비는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비목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음.

〈표 5〉 자녀수별 가구소득수준별 양육비용(식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가구 소득	전체	26.7	16.8	29.4	41.9
	299만원이하	20.1	15.1	24.5	29.8
	300~399만원이하	24.0	15.4	27.3	36.0
	400~499만원이하	27.8	17.7	29.5	42.0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500~599만원이하	27.5	13.5	16.7	20.5
600만원이상	30.4	17.8	32.3	49.5
F	13.22***	2.16	4.02**	4.02**

** $p < .01$, *** $p < .001$.

-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 양육비용 중 여가문화생활비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치 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표 6〉 자녀수별 가구소득수준별 양육비용(여가문화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8.4	14.3	20.0	22.5
299만원이하	11.6	9.6	14.4	10.3
300~399만원이하	14.1	11.3	14.6	20.3
400~499만원이하	18.0	15.5	19.5	18.6
500~599만원이하	19.5	14.4	21.4	24.9
600만원이상	25.8	20.2	27.7	30.9
F	23.20***	4.91***	14.34***	3.89**

** $p < .01$, *** $p < .001$.

다. 다자녀 가구 아동 당 양육비용

- 이 항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 당 양육비용에 대해 살펴봄.
- ◆ 아동 당 양육비용은 가구 조사 자료에서 가구 내 모든 자녀에 대해 조사한 자녀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 ◆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자녀별 양육비용을 각기 조사하였으므로, 동일 가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별로 지출되는 양육비용이 상이함.
-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표본이 초등1학년(2012년생)까지이며, 초등2학년

이상의 자녀는 직접적인 조사 표본 대상이 아닌 원가구 내 자녀에 대한 비용 조사의 결과이므로 표본의 수가 급감함에 주의가 요구됨.

- 아동 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7만1천원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 82만2천원에 달하지만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56만1천원으로 감소함.
 - ◆ 가구 당 총 양육비용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아동 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개인별로는 투입되는 양육비용의 총량이 적음을 의미함.
 - ◆ 결과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음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아동별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자본 투자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목별로는 가구 당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아동 당 양육비용도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액이 많음.
 - ◆ 한편 모든 비목에서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 뿐 아니라 필수재적 성격을 가진 식비에서조차도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적음.
 - ◆ 예를 들어, 식비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아동의 경우 월평균 16만8천원을 지출 하였으나, 자녀가 3명이상 가구에 속한 아동의 경우에는 월평균 13만2천원을 지출 하는 것에 그침.

〈표 7〉 다자녀 가구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전체	67.1	82.2	66.6	56.1	87.86***	
주요 비목별	식비	14.7	16.8	14.7	13.2	28.29***
	피복비	5.5	6.4	5.5	4.8	23.79***
	보건의료비	2.9	3.9	2.9	2.1	38.68***
	교육보육비	24.4	29.5	24.0	21.0	18.29***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여가 및 문화생활비	10.2	14.3	10.0	7.1	59.31***
개인유지비	3.0	4.4	2.9	2.3	71.94***
자녀를 위한 보험비	6.4	6.8	6.6	5.7	10.04***

*** $p < .001$.

- 한편,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이 만6세 자녀의 양육비용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초등1학년이하 자녀의 표본에는 자녀가 1명인 가구가 포함되는데 반해 초등2학년 이상 자녀의 표본은 모두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 이러한 표본 특성을 감안할 때 아동 연령별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동일한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별 양육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당 양육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은 신생아 표본과 중고등 학생 표본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원표본으로 직접적 양육비용 조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자녀의 아동 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신생아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당 투입 비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됨.
 - ◆ 또한, 자녀수에 따른 아동 당 양육비용 차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임.
 - ◆ 신생아 표본(2019년생)의 경우에는 가구 내 자녀수에 따른 아동 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애 초기 아동에게 소요되는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함으로 엿볼 수 있음. 즉, 신생아의 경우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위주의 양육비용 소요로 인해 자녀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 반대로 중고등 학생 이상 자녀의 아동 당 양육비용 또한 자녀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분석 대상 표본이 모두 가구 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표 8〉 아동연령별 아동 당 양육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전체	(3,444)	67.1	82.2	66.6	56.1	87.86***	
아동 연령별	2019년생(0세)	(161)	48.1	52.5	45.8	48.0	0.64
	2018년생(1세)	(298)	51.7	64.8	48.2	35.8	11.55***
	2017년생(2세)	(297)	56.1	67.9	51.7	48.0	9.16***
	2016년생(3세)	(338)	57.4	67.2	56.9	48.3	4.87**
	2015년생(4세)	(409)	65.9	83.5	64.8	48.7	20.08***
	2014년생(5세)	(405)	70.0	96.6	66.7	57.0	29.13***
	2013년생(6세)	(426)	80.6	106.9	76.6	61.1	24.90***
	2010년생~2012년생 (초등1~3학년)	(786)	76.3	99.7	78.2	59.5	50.28***
	2007년생~2009년생 (초등4~6학년)	(203)	69.8	-	80.2	61.6	15.30***
	2001년생~2006년생 (중고등 학생)	(100)	73.7	-	80.2	70.7	1.40

** $p < .01$, *** $p < .001$.

4

정책적 시사점

- 육아가구의 양육비용은 자녀수에 따라 점증하는 형태를 갖지만, 다자녀 가구의 아동 당 양육비용은 자녀수에 따라 점감하는 경향을 보임.
 - ◆ 이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들이 생애 초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받게 됨을 시사함.
 - ◆ 현행 육아 지원 중 대표적 사업인 비용 지원(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 등)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아동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보편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
 - ◆ 즉, 다자녀 가구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 연령을 넘어가는 자녀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양육비용 부담이 가구로 고스란히 귀결되게 됨.
 - ◆ 예컨대, 만10세/ 6세/ 3세 자녀가 있는 3자녀 육아가구와 만6세/ 3세 자녀가 있는

2자녀 육아가구의 아동수당 수령액은 월 20만원으로 동일함. 이때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커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3자녀 육아가구의 양육부담이 훨씬 가중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금성 비용 지원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의 강화가 요구됨.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이며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유아교육 체계이므로,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 ◆ 가정양육수당은 제도의 태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대체적 성격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될 필요성이 있음.
 - ◆ 결과적으로 현행 비용지원 정책 중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아동수당 지원제도로 볼 수 있음.
 - ◆ 아동수당 지원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 높음.
- 양육비용의 비목별로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액이 큼.
 - ◆ 무상보육·유아교육 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보육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결국 돌봄취약계층(맞벌이 가구 혹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한편,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식비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음.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육아가구에 비해 아동 당 식비 지출액이 낮기 때문임.
 - ◆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아동별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의 순위 자녀에 대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I 참고 문헌 I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이철희(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로드맵.

최효미·김아름·조숙인·윤지연(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www.betterfuture.go.kr(2020. 3. 30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 이슈페이퍼 2020-02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3.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도구
 4.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 참고문헌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권미경 연구위원

◆◆ 요약 ◆◆

-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책 수요자인 부모는 정책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해야함.
- 객관적 환경진단을 위한 평가지표와 수요자의 체감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병행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제시함.
-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양육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 인적 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임.
- 지표적용을 통한 진단,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요구조사 실시,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을 포함하는 일련의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가. 육아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금이나 물품 제공 등의 수혜성 정책이 주를 이루어 그 효과에는 한계를 지님.

* 본 고는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작 정책의 수요자인 육아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임.
- 육아지원 정책이 어떻게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거시적 정책 보다 정책수요자의 생활환경 안에서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그 ‘온 마을’의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육아친화적 환경,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 ‘육아친화(育兒親和)’ 환경은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보다 집중됨.
- ◆ 육아친화환경은 기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와 유사하지만 연령층을 청소년에 한정된 청소년친화와 구분되며,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법에 근거한 가족친화와 차별성을 지님.
- ◆ 육아친화환경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인식 개선, 공동체적 지원 등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 ◆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¹⁾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되는 상태임.
-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

을 의미함.

- 유사한 개념인 가족친화, 아동친화, 청소년 친화와 육아친화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각종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구분	친화마을 유형별 특성			
	가족친화	아동친화	청소년친화	육아친화
정책대상	가족	아동	청소년	아동, 자녀를 기르는 가족
개념	가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주인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도시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목적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지역사회에 공유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조성	육아하기 좋고,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이 행복한 마을 조성
법적·제도적 근거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법	UN아동권리협약	별도 근거는 없음.	별도 근거는 없음.
평가 및 실태조사	2009년, 2012년, 2015년 실태조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구축 사례	울산시 등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부산 금정구 전북 완주군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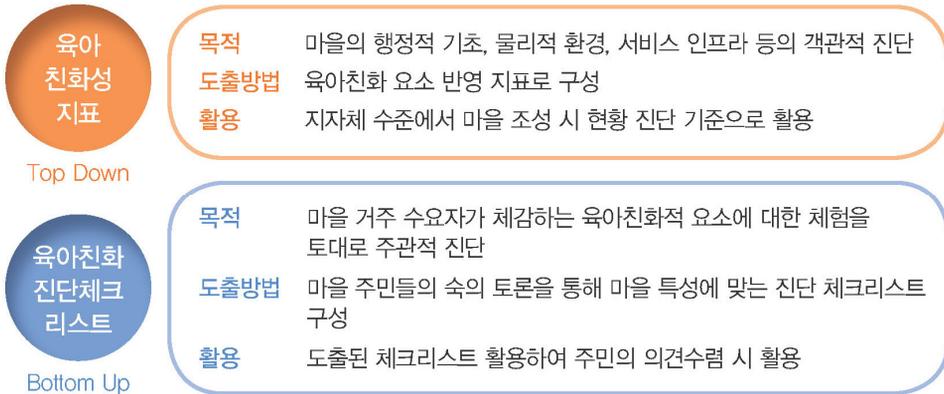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54-55. <표 11-1-5> 임.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위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

-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단일 척도로의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친화적 요소를 마을에 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과정적 절차 구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객관적 환경진단을 위한 평가지표와 수요자의 체감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병행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는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를 병행하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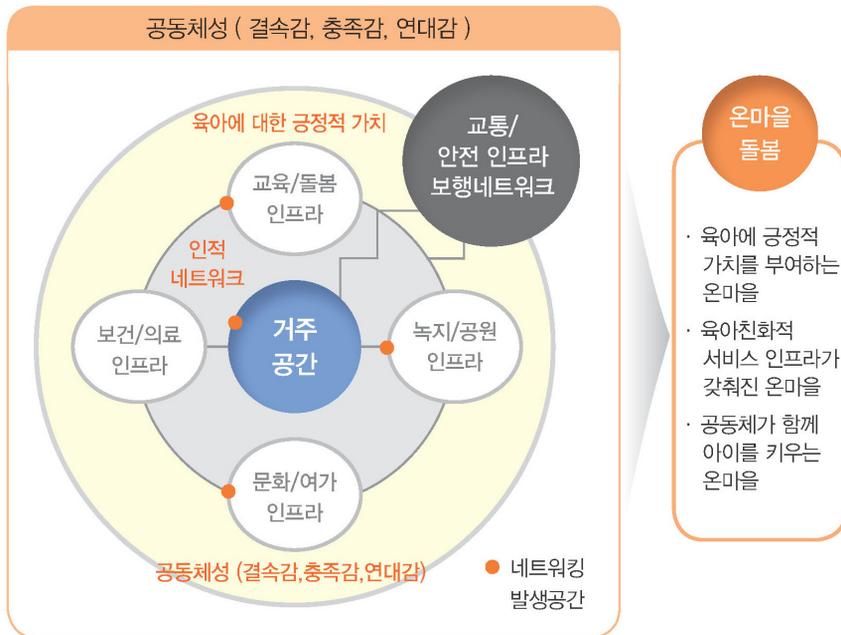
[그림 1]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23. <그림 1-1-1> 임.

- ◆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의 구성이 필요함.
 -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는 지자체 수준에서 마을 조성 시 현황을 진단하여 필요도를 구체화하는 위로부터의 접근방법(Top-down)임.
- ◆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 필요함.
 -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는 마을의 특성이 반영되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라가는 형태로, 주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의견수렴을 하는 도구이므로 아래로부터의 접근방법(Bottom-up)임.

2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양육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 인적 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임.



[그림 2]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및 공간 도식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164. <그림 V-2-1> 임.

가. 철학과 가치

- 육아친화적 마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歡待)의 가치를 지님.
- 아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치를 지님.
-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가치를 지님.

나. 인적 네트워크

- 육아친화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핵심은 크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성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으로 구분됨.
-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은 인적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과 이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지원(자원 및 활동)을 지니고 있음.
- 소통의 공간은 해당 공간의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등이 고려됨.

다. 육아지원 인프라

1)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 육아친화적인 마을의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공간의 질, 접근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함.
 -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단지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함께 증대되어야하며,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함.
- 육아친화적인 마을의 보육(교육)·돌봄 서비스의 질은 교사 근로환경, 보육(교육)시간, 공간의 질, 급간식, 프로그램 및 교구수준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보육(교육)공간 및 야외 놀이 공간의 충분성, 안전성과 더불어 비용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접근거리, 접근방법, 차량안전성)등이 고려되어야함.

2)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 육아친화적인 마을의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는 접근성, 공간과 시설의 질,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등을 고려하여야함.
 - ◆ 마을에 공원·녹지 공간이 존재하는 것 뿐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함. 즉, 비용과 거리 면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공간과 시설의 질도 잘 유지되어야 하고, 이용시간이나 방법 공간계도 양육자와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어야함.

3)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 여가·문화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등의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임.
- 육아친화적인 여가·문화 공간, 서비스 인프라는 접근성, 공간과 시설의 질,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등이 고려되어야함.

4)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 보건·의료 서비스는 성장하는 영유아(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영유아(아동)의 경우는 긴급한 사고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의 질, 인력 수, 인적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을 기준으로 육아친화성을 간주할 수 있음.
 - ◆ 병원 종사자의 우호적인 태도와 물리적 공간이 양육자와 자녀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었는지가 중요함.

5)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 육아친화적인 교통·보행 네트워크는 접근성, 다양성, 교통·운전 문화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조성 가능함.
 - ◆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 연령의 자녀일수록 양육자들은 대중교통보다 유모차, 킷보드, 자전거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턱이 없는 등의 보행도로의 안전한 상태가 중요함.
 - ◆ 버스, 택시 등을 이용 할 때, 운전자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안전한 운전, 교통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6)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독립적

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양육자가 안심하고 양육 이외의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강조됨.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는 접근성, 인력, 물리적 환경을 기준함.
 - ◆ 소방서 및 경찰서의 지리적 근접성, 인력 경찰 등의 방법인력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도는지, CCTV의 설치 정도, 유해 시설의 정도, 보행도로의 안전도 등이 고려됨.

7) 행정 서비스 인프라

- 육아친화적인 행정 서비스 인프라는 행정체계, 정보접근,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행정체계는 해당 마을에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예산의 정도를 의미하며, 거버넌스의 경우 육아와 관련된 제도 설계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등이 고려됨.

3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도구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시군구단위로 측정 가능한 계량 측정 변수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의 <표 2>와 같이 도출하고, 이를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로 명명함.
- 이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와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등의 범주를 아우르는 육아 인프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마을의 객관적, 물리적 육아친화성의 조성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음.
 - ◆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정책대상인 유아 및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시설수)를 모두 고려함이 특징임.

〈표 2〉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최종)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시 영유아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²⁾	
		어린이집 시설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³⁾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⁴⁾	
	아동기 (상대지표 시 아동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⁵⁾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 ⁶⁾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홈페이지 ⁷⁾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읍면동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상대지표 시 영유아 + 아동 총인구 1천명 비율)	공원 /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도시계획현황 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여가 /문화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⁹⁾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 ¹⁰⁾	
	교통 /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 ¹¹⁾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교통사고분석시스템 ¹²⁾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범죄 생활안전	시군구	e지방지표 안전 ¹³⁾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¹⁴⁾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163. 〈표 IV-3-9〉 임.

2)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가족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3) 국가통계포털 -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ZTITLE&list_id=154_154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ZTITLE&list_id=154_154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4)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5)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국지역센터현황,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2019. 8. 31. 인출\)](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2019. 8. 31. 인출))

나.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 선행연구 검토와 심층면담,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육아친화마을 형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 측정 변수를 다음의 <표 3>과 같이 도출하고, 이를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로 명명함.
-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서비스 인프라, 공원 녹지 공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의 9개 부분에서의 핵심요소와 측정항목을 반영한 85개의 체크리스트 풀(pool)임.
-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을 이용하여 실질적 정책수요자인 양육 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20개 정도를 선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필요한 핵심 개선 리스트를 도출함.

9. 8. 31. 인출)

- 6)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7)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 - 정보지원센터, http://www.hjy.kr/user/Information05_view.php?num=48&cur_page=1&schSel=title&schStr=&filePath=../Information05.php&boardType=1(2019. 8. 31. 인출)
- 8) 국가통계포털 - 도시계획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126&vw_cd=MT_ZTITLE&list_id=315_3150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 9)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도서관통계,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2019. 8. 31. 인출)
- 10)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11)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 12)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통계보고서, http://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ReportsList.do?menuId=WEB_KMP_IDA_SRS_TSI(2019. 8. 31. 인출)
- 13)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안전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41&vw_cd=MT_GTITLE01&list_id=1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2019. 8. 31. 인출)
- 14)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G&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표 3〉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철학과 가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총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다움 인정	영유아/아동 개별성 인정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공간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ex: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ex: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등).
인적 네트 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인적네트워크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 (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 (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소통을 위한 공간	다양성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보육(교육)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 공간이 충분하다.
		야외놀이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을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 (ex: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거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공원 녹지 공간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과 시설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 시설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대형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개인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대형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개인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대형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개인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 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대형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개인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 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대형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개인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대형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교통 보행 네트 워크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다양성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가 있다.
교통/운전 문화	운전자의 태도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소방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물리적 환경	인력 방법인력순찰	경찰 등 방법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행정 서비스 인프라	행정체계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361-365. <표 VII-1-2> 임.

4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란 육아친화성을 객관적 측정요소로 접근하여 진단하는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와 실제 거주민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를 병행하여 마을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음. 즉,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마을 진단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함.



[그림 3]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358.<그림 VII-1-1> 임.

■ 1단계: 지표적용을 통한 진단 단계

- ◆ 현재 육아친화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을 통해 진단하는 과정으로 지역별 육아친화성을 육아 관련 직접자원 인프라와 간접자원 인프라 등을 진단하고 그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 및 점검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 ◆ 육아친화마을에 담긴 가치와 철학,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 체크리스트 풀(pool)을 행정 담당자, 지역 전문가들이 점검 또는 검토하고 주민참여 워크숍을 기획함.
-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육아친화성을 논의한 워크숍은, 기존의 지표들이 표준화된 적용으로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요구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렴하는 과정임.

■ 3단계: 요구조사 실시

- ◆ 'KICCE 요구조사 초안'을 토대로 2단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문 구성하여 정책수요자,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함.
- ◆ 육아 중인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육아친화성 현황 진단과 평가하고 지역의 육아친화성 향상 요구를 수렴함.

■ 4단계: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 ◆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함.

- 1단계에서 지표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족한 육아 관련 자원인프라가 도출되며, 2단계 지역 체크리스트의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워크숍으로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기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필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3단계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 부분의 우선순위를 부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합되며, 4단계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현 정책의 개선점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됨.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마을의 범위는 기초지자체인 구(區)단위로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동(洞)의 특성을 반영해야함.
 - ◆ 정책 수요자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범주는 살고 있는 동(洞)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범위인 동(洞)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야 함.
 - ◆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조성에 대한 기본 단위 획정과 해당 정책 마련 시 정책수요자의 체감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야함.
 - ◆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이 어느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공간의 구성과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함.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는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회가 기획되고 제공되어야함.
 - ◆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歡待)와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과정에 세대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간 소통의 장(場), 참여의 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획되고,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지자체가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가 기능하도록 해야 함.
 - ◆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자체가 계획 착수하여 육아친화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나,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체감되는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될 것임.

- ◆ 관(官)이 주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주민의 인적 네트워크, 민간, 주민 주도로 전환 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 ◆ 육아친화마을은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는 것임.
- 육아친화마을 지표적용 분석결과는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시 계량적인 결과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도출 반영해야함을 시사함.
 - ◆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된 육아친화성, 각 지표의 규모로 측정된 절대 육아친화성 지표의 경우, 육아 직접적 자원은 수도권 지역에, 시와 구지역, 즉 도시 지역일수록 풍부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육아인프라 시와 구지역에 더 양호하게 구축됨.
 - ◆ 그러나 영유아, 아동인구 대비 시설규모로 환산한 상대적 육아 친화성 지표는 수도권 일수록 농촌, 과소도시보다 육아친화 등급유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 양육자가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우수할지라도 여전히 육아관련 시설의 부족을 경험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 따라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일괄 측정되어온 지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체감형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과 제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함.
-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요구 수렴 시 주민참여형 워크숍 운영이 효과적임.
 - ◆ 주민참여형 숙의·토론 과정을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워크숍 참여자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높은 기대를 보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함.
 - ◆ 가구 특성별로 육아친화마을 조성 분야별 중요한 항목을 도출된 결과 각 가구의 특성 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특히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별로 신체적 발달과 활동의 독립성에 따라 보행도로의 편리성에, 혹은 안전성 부분이 더 강조됨.
- ◆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초등학교, 보육기관, 유치원 밀집 지역 등으로 공간을 특화하여 해당 부분에 수요자의 요구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정부의 역할

- 육아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체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성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됨.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육아친화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본 연구는 어느 정도 ‘부분 합리성’을 극복하고 ‘전체 합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
 - ◆ 중앙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
 - ◆ 중앙부처는 관련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또는 예산 부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획득한 자원을 ‘전체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 ◆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육아친화성 지표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하고, 지표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등 정책 처방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 ◆ 지금까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방분권 기조가 확대되고 지자체 행정 서비스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 역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주력해야함.

- ◆ 무엇보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조직, 인력과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 조례 제정 등이 필수적임.
- ◆ 육아친화지표 등급을 토대로 지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을 기획해야함.
 - 육아인프라 지표를 토대로 어느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접근할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해야 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 광역지자체는 여러 기초지자체 중에서 육아친화성 종합지표 상으로 등급이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및 정책 처방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예산의 권한이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지역정보 수준이 낮으나,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정보 수준이 높고 기초지자체보다는 기획력 수준이 높기 때문임.
 - 광역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시설 관리 등 규제성 업무를 담당하여 재원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I 참고 문헌 I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온라인 자료〉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가족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국지역센터현황,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2019. 8. 31. 인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통계보고서,

http://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alReportsList.do?menuId=WEB_KMP_IDA_SRS_TSI(2019. 8. 31. 인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도서관통계,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G&vw_cd=MT_ZTITLE&list_id=354_MT_DTITLE&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안전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41&vw_cd=

MT_GTITLE01&list_id=1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e지방지표 교육부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vw_cd=MT_GTITLE02&list_id=3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2(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도시계획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126&vw_cd=MT_ZTITLE&list_id=315_3150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국가통계포털 -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ZTITLE&list_id=154_154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19. 8. 31.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 - 정보지원센터,

http://www.hjy.kr/user/Information05_view.php?num=48&cur_page=1&schSel=title&schStr=&filePath1=./Information05.php&boardType=1(2019. 8. 31. 인출)

PART

03

포용적 육아지원

- ▮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박은정, 유해미
-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 ▮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이윤진

| 이슈페이퍼 2020-05 |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박은정·유해미

1. 서론
 2. 국내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례 분석
 3. 국내외 스타트(Start) 사업 비교 분석
 4.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개선방안
- 참고문헌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유해미 연구위원

◆◆ 요약 ◆◆

- 해외 각국의 스타트 사업들은 영유아를 빈곤아동 통합지원의 중점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 사업은 재정 및 인력의 부족, 사업의 편의성 및 단기적 성과 도출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 초기에 비해 영유아 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드림스타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및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는 헤드스타트 사무소나 슈어스타트의 북아일랜드 보건사회서비스국과 같이 예산 분배, 관리감독과 사업지원이 단일 조직에서 행해지는 체계가 아니므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시·도의 긴밀한 체계구축이 요구됨.
- 본고는 빈곤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에서 중점대상으로서 영유아 강조 방안,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통합 방안을 제시함.

1 서론

- 최근 보육정책은 보편적 비용 지원 강화를 정책기조로 추진되어 왔음. 하지만 빈곤 아동의 다차원적인 결핍을 보편적 비용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빈곤 가정 아동의 적절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가 요구됨.
- 드림스타트는 포괄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인적 자본으로서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한 빈곤아동 통합지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 2019)」의 내용 중 IV장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함.

원 사업임. 그러나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빈곤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전체 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강조는 부족한 실정임.

-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빈곤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현재 3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본고는 빈곤가정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를 중점 대상으로 한 통합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빈곤아동 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 먼저 전국적인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우수 사례로 수원시 드림스타트와 완주군 드림스타트 사례를 분석함. 또한 3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을 간략히 제시함.
 - ◆ 다음으로 드림스타트와 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인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를 비교 분석함. 사업의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재원, 전달체계 차원에서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본고는 빈곤아동 통합지원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국내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례 분석

가. 중앙정부 드림스타트

1)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보건복지부, 2019a: 20).
 - ◆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

- 드림스타트는 2004년 5월 시작된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을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시군구 229개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보건복지부는 2007년 16개 지자체에서 ‘희망스타트’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 사업명을 ‘드림스타트’로 변경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2015년에는 전국구 229개로 확대함(조용남, 2019).
- 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 조손가정을 포함한 보호대상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드림스타트 사업은 첫해인 2007년에 3,76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함. 2018년 기준 지원아동 수는 150,052명으로 2007년에 비해 40배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건수도 2018년 기준 2014년에 비해 73.3%증가함.
- 드림스타트의 아동연령별 대상자 현황을 보면, 드림스타트 전체 대상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영유아의 수와 비중은 감소한 반면 취학대상 아동의 수는 증가함. 즉, 드림스타트의 영유아 대상 지원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2015년 드림스타트 대상자 중 0~2세 영아는 약 5만명으로 4%, 3~6세 유아는 약 26만명으로 21%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영아 약 3만 4천명으로 2.2%, 유아는 약 22만명으로 14.9%에 그침.

〈표 1〉 드림스타트 대상자 연령별 현황(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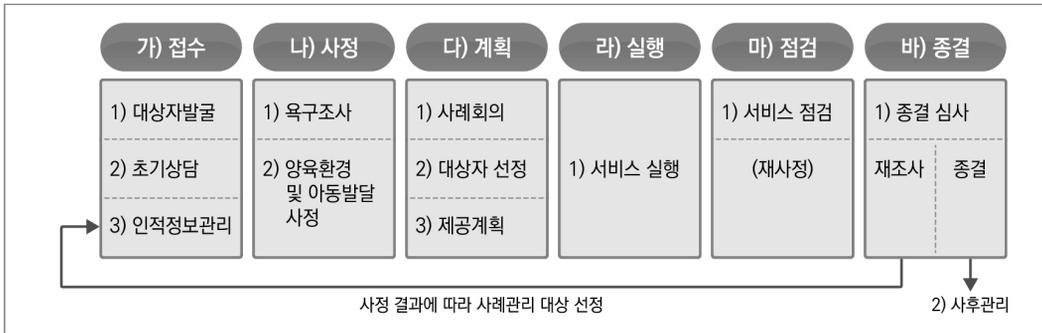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계	아 동			13세 이상	임산부
		영아 (0-2세)	유아 (3-6세)	취학대상 (7-12세)		
2015	100.0(125,562)	4.0(5,062)	21.0(26,409)	54.8(68,807)	19.1(23,922)	1.1(1,362)
2016	100.0(134,853)	3.2(4,379)	19.6(26,373)	54.1(72,998)	21.9(29,490)	1.2(1,613)

연도	계	아 동				임산부
		영아 (0-2세)	유아 (3-6세)	취학대상 (7-12세)	13세 이상	
2017	100.0(144,289)	2.8(4,060)	17.5(25,204)	53.7(77,487)	24.8(35,723)	1.3(1,815)
2018	100.0(150,052)	2.2(3,375)	14.9(22,352)	53.4(80,143)	28.1(42,234)	1.3(1,94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6. 4). 아이들의 차별없는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한다.

- 드림스타트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접수 및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종결까지 통합사례관리 체계 내에서 이루어짐.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52.

- 대상자 선정은 의뢰받은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과 사정을 통해 결정됨.
 - ◆ 대상자 발굴은 드림스타트 자체 발굴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통해 이루어짐.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희망하는 당사자나 타인이 개별적으로 접수하기도 함. 접수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수집함(보건복지부, 2019a: 62).
 - ◆ 사정은 욕구조사와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임(보건복지부, 2019a: 66). 이를 통해 대상자의 위기도를 파악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함.

-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총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2019년에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본부 지역아동복지부가 사업지원을 함. 관리 및 운영지원은 각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음. 드림스타트 운영은 드림스타트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의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센터)이 담당함.
- 드림스타트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비 100% 지원임. 단,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역의 3분의 2 수준을 적용함(보건복지부, 2019a).
 - ◆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2019년 예산은 676억원으로 2018년 대비 8억원이 증액됨 (보건복지부, 2019b: 20).
 - ◆ 지원 예산에는 사업관리운영비인 기본사업비와 인건비, 필수·맞춤서비스비, 사업관리 운영비, 지역사회 조직화비가 포함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9a).
 - ◆ 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등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차등 지원함(보건복지부, 2019a).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로 구분됨. 지원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드림스타트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2020. 5. 19. 인출)

2) 수원시 드림스타트¹⁾

-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2018년 드림스타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분소 설치와 전문 사례관리사 증원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간 부문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는 아동 및 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부모 및 형제를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지역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사가 변경되어도 지원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매년 재사정을 통해 욕구 수준과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아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지원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공무원 4명과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개의 분소를 포함한 3개 센터에 나뉘어 근무하고 있음. 또한 수원시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보육, 복지, 간호 부문으로 전문화하고 있음.
- ◆ 분소 설치에 따른 비용, 운영비와 인건비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음. 분소를 운영할 경우 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각 분소별 특성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권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직접 서비스의 경우 50% 정도는 자체 운영이며, 나머지 약 50%는 연계 프로그램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후원협약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기관과의 연계는 아동복지기관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능했음.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분기별 1회 회의를 드림스타트 사업만을 위한 별도 회의로 지정하고 있음.
- ◆ 수원시의 대상 발굴은 동 주민센터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드림스타트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며, 이 밖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을 발굴하고 있음.

1) 본 항은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 면담 자료 및 홈페이지(<https://dreamstart.go.kr/suwon/>)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 수원시 드림스타트도 영유아보다는 취학연령 아동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영유아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드림스타트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협력체계가 요구되나, 보육기관과 드림스타트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 ◆ 영유아의 특성상 부모의 참여가 요구되나 빈곤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영유아 대상 드림스타트 사업은 일대일 찾아가는 서비스가 대부분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3) 완주군 드림스타트²⁾

-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취약계층 아동(1,361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완주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13개 읍면지역 중 규모가 큰 4개 지역에 절반 이상의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이 있음.
 - ◆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총 61개 기관과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자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관 및 인력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 기획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학교사회복지사도 동 협의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그러나 지역 특성 상 자원을 연계할 기관 자체가 부족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아동이 읍면지역에 넓게 퍼져 있어서 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함.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으나 질 관리의

2) 본 항은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센터 사업담당자 면담 자료 및 드림스타트센터 홈페이지(<https://dreamstart.go.kr/wanju/>)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비용 지원도 요구됨.

-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적정 담당 아동수는 50~7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완주군 센터 실무자들은 완주군 지역 특성 상 해당 인원 기준은 과다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고 상응하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음.
-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도 영유아 대상 사업의 확장에는 대상자 발굴부터 사업 실시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지적했음.
 - ◆ 영유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의 연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욕구 진단도 요구됨.
 - ◆ 특히,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완주군과 같은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더욱 취약한 상황임. 또한 영유아 규모가 매우 적은 산간지역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히 요구됨.

나. 지자체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³⁾

-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전국에 11개 센터에 센터당 연간 6억원씩 3년간 지원하면서 시작됨.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 복지서비스가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에 비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함. 이는 영유아가 보육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영유아 대상 보육 책임은 강조되고 있으나 영유아 대상 복지는 부족했기 때문임.
 - ◆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아동·가족·환경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신체·인지·정서적 균형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드림스타트 등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성이 제기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됨. 현재는 서울 마포구, 인천 연수구, 충북 청주시 3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3) 본 절은 시소와 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담당자 면담 자료 및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양육 분야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943.do)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3

국내외 스타트(Start) 사업 비교 분석4)

가.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만 3~5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는 만 3세 미만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함.
 - ◆ 1994년 「헤드스타트법」 개정을 통해 조기 헤드스타트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빈곤 가정의 만 3세 미만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됨.
 -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80% 이상이 만 3세~ 만 4세이고 조기 헤드스타트에 참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는 20% 미만임.
- 미국의 헤드스타트 대상자 선정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빈곤선 이하 가정의 아동이나 공공부조 수급 가정, 노숙 가정 및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 등을 우선으로 함.
 - ◆ 요보호가족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이나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수급 가정은 빈곤가정으로 인정되어 소득조사 없이 헤드스타트 이용 자격이 부여됨.
 - ◆ 아동이 장애교육법에 근거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아동이 전체 등록 아동의 최소 1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사업의 중점대상은 만 5세 미만 아동과 그 가족이며, 해당 지역의 만 14세 이하 모든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아동의 경우는 만 16세까지 서비스가 제공됨.
 - ◆ 2010년 이후 영국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가장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16년에는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에 근거하여 맞벌이 부모를 위한 만 3세~만 4세 무상 보육서비스를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연장하였음.
- 영국의 슈어스타트는 아동 및 가족 단위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

4) 본 장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 2019)」의 152~175쪽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라 취약 지역을 선정한 후 그 지역 안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 지역선정 기준은 아동영향소득박탈(Income Deprivation Affecting Children, IDAC) 지수에 근거한 하위 20% 지역이며, 2004년 이후에는 하위 30% 지역에서 돌봄 기능 강화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호주 베스트스타트(Best Start)는 노동당 정부가 빅토리아주를 대표적인 교육의 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든 0~8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호주 베스트스타트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잠재적으로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의 아동을 표적대상으로 삼고 있음. 가정 외 보호, 학대 또는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주 초기 단계의 이민자 또는 난민,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고립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동적 거주지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등이 취약한 환경에 포함됨.

나. 재정

- 미국의 헤드스타트 재정의 약 80%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이며, 약 20%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충당함. 2018년 기준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예산은 약 98억 3,870달러임.
- ◆ 2018년 예산 중 약 94억 7천만 달러가 지역 사회 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단체 및 영리단체, 원주민 부족 정부 및 학교 체계에 직접 투입되었으며, 약 2억 3,540만 달러는 훈련 및 기술 지원에 투입됨.
- ◆ 모든 헤드스타트 기금을 주별로 구분하기는 어려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주 경계를 넘어 실시되기도 함.
- 슈어 스타트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슈어스타트 예산이 크게 감소함.
- ◆ 1999년~2002년까지 약 4억 5천 파운드가 투입되었고, 그 후 2004년까지 12억 파운드로 지원 예산을 확대함. 2009년에는 슈어스타트에 연간 약 18억 파운드로 최대 재정이 투입됨. 그러나 2010년에 약 12억 파운드로 예산이 크게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예산은 약 6억 파운드로 2009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듦.

- 빅토리아주에서 지원하는 베스트스타트의 재정은 프로그램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조력자(facilitator)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됨. 예산의 80%가 조력자 인건비이며, 20%는 관리·운영비임.
- ◆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은 조력자를 통해서 협력 네트워크에 속한 기관에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비나 사업비는 베스트 스타트 개별 재정에 포함되지 않음.

다. 전달체계

-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내에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관할하며, 아동가족국 사무소 중 하나가 헤드스타트 사무소(Office of Head Start)임.
- ◆ 각 지역 사무소들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공받은 예산을 지역 헤드스타트 센터에 분배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헤드 스타트 사무소는 헤드 스타트가 지원대상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도 함.
- 미국의 헤드스타트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핵심 전달체계는 헤드스타트 센터(Head Start Center)임. 헤드 스타트 사무소가 헤드스타트 센터를 관리하며, 헤드스타트 센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진행, 연계 서비스까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됨.
- 영국의 슈어스타트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기구, 자발적 사회참여 기관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추진체계가 상당히 상이함.
- ◆ 북아일랜드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슈어스타트를 포함한 다양한 영유아 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을 관할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할당하는 역할을 하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협력부처임. 보건사회서비스국(The Health and Social Care Board, HSCB)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지역에서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략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며, 예

산을 관리·감독하고 추진체계 수립을 담당함.

-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Children's Centre)임.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이 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반영되며, 아동센터는 아동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아동센터 중 다수는 신설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지역 보육시설, 조기영재센터, 학교, 가족센터, 지역센터, 보건소 등의 지역 시설들을 전환한 시설임.
 - ◆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의 아동센터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 30%인 취약 지역에 센터 비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센터의 수가 일부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취약 지역에서의 집중 지원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프로그램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베스트 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협력체계에서 조력자(facilitator)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필수적인 협력기관에는 지자체, 보건인적서비스부 등 주 정부 관련 부처, 가족 및 여타 지역대표, 원주민 커뮤니티, 조기교육서비스 제공 기관, 언어치료, 소아과 전문의, 일반 가정의 등의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MCH), 보건서비스, 공립 및 사립학교,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조직 등이 포함됨.
 - ◆ 베스트 스타트 협력체계는 안정성, 명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협력기관이 주체로서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의 주요의 사결정에 참여함.
 - ◆ 전달체계에서 조력자는 1) 원주민 및 주류 사회에서 서비스 기관의 효과적 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2) 데이터,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욕구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및 실행방안 개발 3) 지역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우고, 베스트 스타트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 4) 개선을 위한 학습과 기회 발굴, 5) 협력기관 모니터링 및 보고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라. 종합 및 시사점

- 상기에서 제시한 각국의 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자,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 전달체계와 각 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표 3>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 비교

	드림스타트	헤드스타트	슈어스타트	베스트스타트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임산부)~만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만 15세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드스타트: 만 3~5세 조기 헤드 스타트: 3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대상: 만 4세 미만 아동 및 가족 만 14세 아동 및 가족 (장애아동 만 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든 0~8세 아동
대상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 조손가정을 포함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의뢰받은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과 사정을 통해 결정 (육구조사와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 가정 아동 공공부조 수급 가정, 노숙 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영양소득박탈(IDAC) 지수 근거 하위 20% 2004년 이후 하위 30% 지역 내 돌봄 기능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성이 있는 환경에 있는 아동 우선 지원: 가정 외 보호, 학대 또는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주 초기 단계의 이민자 또는 난민,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고립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동적 거주지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은 국비 100% 지원(단, 서울 특별시는 그 외 지역의 3분의 2 수준 적용)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2019년 예산은 67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80% 연방정부 예산, 약 20% 지자체 및 지역 사회 재원 2018년 기준 연간 예산: 약 98억 3,87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 2009년까지 약 18억 파운드로 증액되었다가 이후 계속 감소: 2019년 기준 약 6억 파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토리아 주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조력자 인건비 80%, 관리·운영비 20%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수행되는 교육비나 사업비가 투입됨
전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총괄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관리 및 운영지원은 각 시·도에서 담당 드림스타트 운영은 드림스타트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 내에 아동가족국(ACF) 담당 아동가족국 산하 헤드스타트 사무소(OHS) 운영: 헤드스타트 센터 관리·감독 헤드스타트 센터: 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담당 지방정부별로 조직구조 및 전달체계가 상이함. 핵심 전달체계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토리아주의 교육부가 주도하며, 보건복지부 및 기타 주 정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시 지역사회 내 주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성

	드림스타트	헤드스타트	슈어스타트	베스트스타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센터)이 담당	그램 수행		• 조력자(facilitator)가 네트워크 구축 및 실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 담당
주요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는 양육환경 및 아동 발달 영역별로 구분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영역에서 직접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학습 지원 • 아동의 지각·운동·신체 발달 지원 • 가족 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핵심 서비스: 아웃리치 및 가정 방문, 가족 및 부모 지원, 양질의 놀이, 학습, 돌봄 지원, 아동 보건 및 발달에 대한 일차 지역 의료 및 상담, 특수한 필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사업 • 프로그램 내용: 산전관리, 부모교육 및 지원, 0~8세 아동 교육 기회 제공,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보건 정보 제공,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정 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1):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172, <표 IV-2-2>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드림스타트는 해외 스타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영유아 대상 사업에 취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적절한 발달 및 탈빈곤을 위해 영유아 대상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 해외 각국의 스타트 사업들은 영유아를 빈곤아동 통합지원의 중점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드림스타트 사업은 재정 및 인력의 부족, 사업의 편의성 및 단기적 성과 도출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 초기에 비해 영유아 대상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 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에서 영유아 대상 사업이 강화되는 추세는 생애 초기 개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임.
- 드림스타트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요구됨.
 - ◆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보조금은 국고 100%로 규정되어 있으나,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일정 비율로 함께 투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드림스타트의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지역 간에 재정 격차가 있을 수 있음.
 - ◆ 드림스타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및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는 헤드스타트 사무소나 슈어스타트의 북아일랜드 보건사회서비스국과 같이 예산 분배, 관리감독과 사업지원이 단일 조직에서 행해지는 체계가 아니므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시·도의 긴밀한 체계구축이 요구됨.
- ◆ 드림스타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본부 지역아동복지부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이 사업을 지원하며, 시·도는 관리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음.

4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개선방안

가. 빈곤아동 통합지원 중점대상으로서 영유아 강조

- 드림스타트가 생애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해외의 스타트 정책들은 아동의 초기 발달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영유아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8년 기준 17.1%에 불과함.
 - ◆ 이미 많은 연구에서 초기에 빈곤아동을 지원할수록 지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음. 따라서 단기적 성과와 운영의 편의성에 의해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중점대상으로 설정하여 스타트 사업을 재편하는 시도가 요구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드림스타트(Early Dream Start) 사업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전국화를 시도해볼 수 있음.
 - ◆ 1994년 미국에 초기 헤드스타트가 등장하면서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슈어스타트는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만3~4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듯이, 드림스타트도 영유아를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존 드림스타트 사업체계에서는 영유아 대상 사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드림스타트 내에 별도 사업인 조기 드림스타트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조기 드림스타트와 드림스타트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조기 개입 및 장기적인 서비스 연속성도 달성할 수 있음.

- ◆ 조기 드림스타트 대신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서비스를 확대해왔으며, 영유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운영해 왔음. 따라서 드림스타트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유아 대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빈곤 아동 통합지원에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 특히, 빈곤 영유아 대상 지원의 경우 대상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 호주의 베스트스타트는 기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빈곤아동 통합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부처 간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음. 이는 단편적 논의와 표면적 협력이 아니라 실제 해당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의체 중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분과로 구성하기 보다는 별도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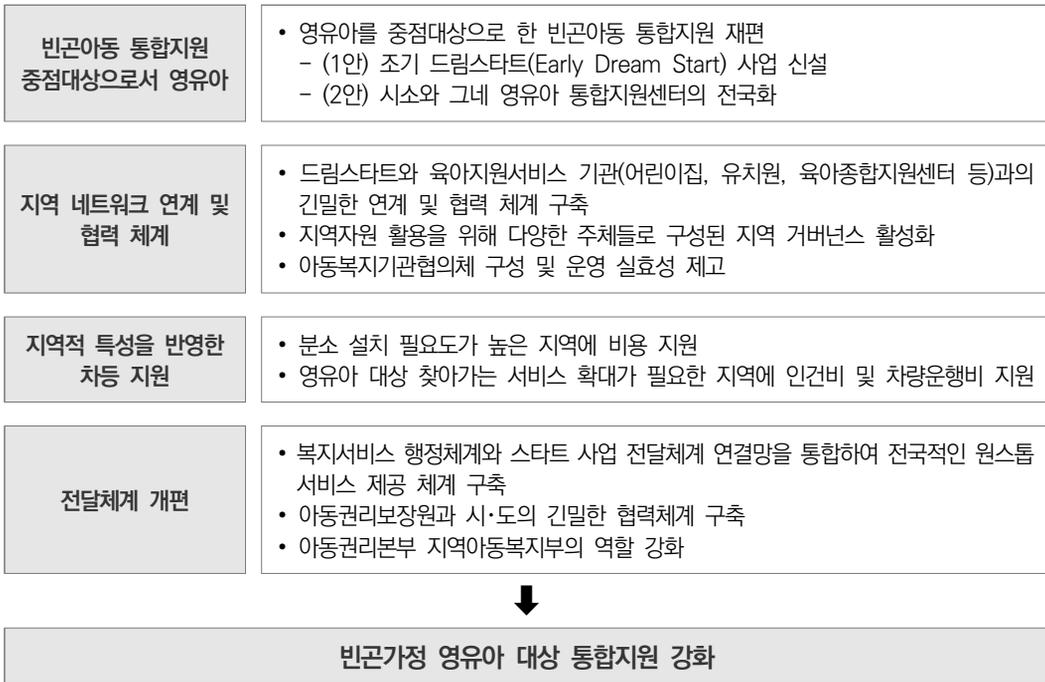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으로 분소 설치 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및 운영 지원을 제시함.
 - ◆ 수원시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으로 2개 분소를 설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소별 서비스를 특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음. 지자체별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재정 투입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분소설치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 지원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분소설치가 필히 요구됨. 분소설치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의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빈곤가정 영유아 지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핵심 사업이므로 빈곤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인건비 및 차량운행비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통합

- 대상 아동의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및 실행까지 전반을 총괄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 수원시 드림스타트와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가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달체계인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있는 사례로 꼽힘. 하지만 현재 모든 드림스타트센터가 지자체 행정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대상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행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 ◆ 미국의 헤드스타트의 경우 미국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 아동가족국 산하에 헤드스타트 사무소를 두어 헤드스타트 센터가 전반적인 빈곤아동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슈어스타트도 각 지역 센터가 기본 아동서비스를 통합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아동권리보장원과 시·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본부 지역아동복지

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드림스타트의 사업 총괄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본부 지역아동복지부, 관리 및 운영 지원은 시·도가 담당하고 있음. 기존의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과 달리 2019년에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사업 전반이 함께 운영된다는 점에서 연계의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한편 드림스타트 지원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므로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아동권리본부 지역아동복지부가 각 지역별 특성 및 상황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빈곤가정 영유아 대상 통합지원 강화 방안

I 참고 문헌 I

보건복지부(2019a).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6. 4). 아이들의 차별없는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한다.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조용남(2019).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2년간의 변화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17, 1-20.

〈홈페이지〉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dreamstart.go.kr/suwon>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양육 분야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943.do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dreamstart.go.kr/wanju>

| 이슈페이퍼 2020-08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4. 기대효과
- 참고문헌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 요약 ◆◆

-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1명이 돌봐야 하는 만0~2세 영아는 평균 4.2명으로 나타나, 보육사 1명당 영아 2명을 돌봐야 하는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아동양육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질문한 결과, 영아(82.1%)와 유아(72.3%) 모두 베이비박스¹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 결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MSSB 검사 결과,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점

가. 배경 및 문제 제기

-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돌봄취약계층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 이에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하나의 통합 기관 형태로 만들어서 취약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음.
-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8a: 4).
-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집단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보건복지부, 2018c).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조치 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 → 위탁가정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보호하도록 함(보건복지부, 2018a: 14).
 - ◆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보건복지부, 2018a: 14; 보건복지부, 2018b: 4).
-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음.
 - ◆ 이후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4; 보건복지부, 2019b: 113).
 - ◆ 2004년 새로운 보호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되었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4; 보건복지부, 2019b: 113).
- 아동보호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됨. 공공전달체계는 보건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하며,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 2017: 20).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9a)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운영 및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인건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 시기는 발달적으로 주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
 - ◆ 이 시기에 건강한 사회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 이상과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의 범위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의 범주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구성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함.
 - ◆ 이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범위를 설정함.

〈표 1〉 본 연구의 아동보호시설 범주

종류	본 연구에서의 포함 여부
아동양육시설	O
아동일시보호시설	O
아동보호치료시설	X
공동생활가정	O
자립지원시설	X
위탁가정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O
- 일반가정 위탁	
- 전문가정 위탁	
입양	X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¹⁾

- 아동양육시설에서 0세부터 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3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보육사 대 영유아 비율
 - ◆ 영아를 돌보는 보육사에게는 보육사 1명이 돌보는 영아의 수,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에게는 1명이 돌보는 유아의 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에게는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질문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표 2〉 보육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

구분 (보육사 1인당 돌봄 영아 수)	단위: %(명), 명					평균
	1~2명	3~5명	6명 이상	계(수)		
전체	28.9	44.4	26.7	100.0	(90)	4.2
시설규모						
50인 미만	28.6	45.7	25.7	100.0	(35)	4.1
50인 이상	29.1	43.6	27.3	100.0	(55)	4.3
$\chi^2(df)/t$		0.042(2)				-0.2

1) 본 항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대상 설문 조사의 결과임.

구분 (보육사 1인당 돌봄 유아 수)	1~5명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71.3	28.7	100.0 (101)	4.8
시설규모				
50인 미만	77.4	22.6	100.0 (31)	4.6
50인 이상	68.6	31.4	100.0 (70)	4.9
$\chi^2(df)/t$	0.822(1)			-0.6
구분 (보육사 1인당 돌봄 영유아 수)	5명 이하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6.1	63.9	100.0 (72)	8.0
시설규모				
50인 미만	56.5	43.5	100.0 (23)	6.8
50인 이상	26.5	73.5	100.0 (49)	8.6
$\chi^2(df)/t$	6.103(1)*			-3.0**

주: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 ◆ 종사자 배치 현황이 만0~2세는 평균 4.2명, 만3~6세 유아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사 1명당 영아 2명을 돌봐야 하는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들어오는 영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으나,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함.
- ◆ 유아의 경우에는 법정 배치기준상으로는 보육사 1명이 유아 5명을 돌봐야 하는데, 6명 이상인 경우도 약 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보육사의 경우에는 평균 8명 정도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는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인 보육사 1명이 7명의 아동을 돌보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관한 법정비율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

- ◆ 현 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질문한 결과, 영아와 유아 모두 베이비 박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영아는 베이비박스가 1순위인 경우가 82.1%, 유아는 72.3%였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도 각각 87.0%,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베이비박스	82.1	87.0	72.3	78.0
베이비박스 외 유기	4.9	16.0	5.8	20.2
학대	5.6	15.4	9.2	30.6
경제적 어려움	1.2	15.4	6.9	16.2
미혼출산	5.6	12.3	2.9	11.6
이혼	-	0.6	1.7	5.2
수감	0.6	0.6	0.6	2.3
가출	-	-	0.6	0.6
계(수)	100.0(162)	147.3(162)	100.0(173)	164.7(173)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 이전 보호 유형

- ◆ 현 시설에 오기 전의 보호 유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영아 유아 모두 이전 보호 시설이 없는 경우가 48.1%, 49.1% 순으로 나타나 반 수 정도는 현재 기관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남.
- ◆ 영아의 35.8%, 유아의 34.1%의 경우가 이전 보호 유형이 일시보호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시설로 먼저 배치된 후 일시보호 시설에서 보호필요아동을 각 시설로 배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표 4〉 이전 보호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이전보호시설없음	48.1	56.2	49.1	57.8
일시보호시설	35.8	44.4	34.1	42.2
태양육시설	7.4	10.5	7.5	12.1
가정위탁	4.9	9.9	4.0	9.8
입양	2.5	3.1	4.0	4.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0.6	2.5	1.2	4.6
기타	0.6	0.6	-	0.6
계(수)	100.0(162)	127.2(162)	100.0(173)	131.7(173)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 시설 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 ◆ 시설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9.5%의 영유아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사교육비의 출처는 1순위 기준 후원금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운영금 52.9%, 학원비 면제 14.4% 순임.
- ◆ 보육사들은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 학원 이용 영유아 유무 및 영유아 수

단위: %(명),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3명 미만	3~4명	5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9.5	60.5	100.0 (263)	41.3	28.8	29.8	100.0 (104)	3.6
시설규모								
50인 미만	38.2	61.8	100.0 (89)	41.2	29.4	29.4	100.0 (34)	3.4
50인 이상	40.2	59.8	100.0 (174)	41.4	28.6	30.0	100.0 (70)	3.7
$\chi^2(df)/t$	0.101(1)			0.009(2)				-0.4

■ 원가정 교류

- ◆ 원가족과 교류 여부에 대해서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영아 89.5%, 유아 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 거주 영유아들이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교류하고 있는 경우(영아 10.5%, 유아 12.7%), 주 교류 대상은 영유아 모두 어머니(영아 56.5%, 유아 68.3%), 아버지(영아 29.0%, 유아 20.8%) 순으로 나타남.
- ◆ 교류빈도를 살펴보면, 영아는 한 달에 1회, 1년에 1회, 6개월에 1회 정도 순이었으며, 유아는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한 달에 1회 이상 순으로 나타남. 교류방식은 원가족이 아동을 방문하는 경우가 영아 88.7%, 유아 72.3%로 가장 많았음.
- ◆ 전체 영유아의 각 3.8%, 4.2% 만이 필요 시 부모와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원가정과의 교류 여부

구분	단위: %(명)		
	교류하고 있다	교류하지 않는다	계(수)
영아	10.5	89.5	100.0(590)
유아	12.7	87.3	100.0(794)

■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만족도 및 요구

- ◆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체인력과 관련된 정책,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이 순으로 나타남.
- ◆ 개선이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36.9%,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이 16.7%, 아동양육비원지원이 14.1%, 양육시설종사자 권리보장이 7.6% 순으로 나타남.
- ◆ 지원 금액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현황

- ◆ 보육사의 주된 근로형태는 대부분의 경우가 2조 격일(57.0%)과 2조 2교대(30.4%)임.
- ◆ 본인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3.7%,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34.2%, 매우 과중하다는 응답이 14.4% 순으로 나타남.

- ◆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불만족함을 보임.
- ◆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육사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음.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 면담 참여자 특성

- ◆ 면담 참여자 36명 중, 양육시설 종사자 총 12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8명, 일시보호 시설 종사자 5명, 위탁가정지원센터 종사자 4명, 위탁모 7명이 면담에 참여하였음.

■ 아동보호시설 현황 및 특성

- ◆ 일시보호시설은 크게 지자체 사업으로 양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운영 및 기능이 상이함.
- ◆ 양육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함.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양육 보조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 현황 및 특성

- ◆ 일시보호의 경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까지, 배치의 주된 이유가 보다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일반가정위탁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계기로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친인척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배치 이유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시설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지적됨.
- ◆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 체계적인 원가정 대상 교육, 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 인력부족은 대부분의 시설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처우 개선이 시급함.
- ◆ 시설 아동 양육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음.
- ◆ 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가정 외 보호시설 유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정 외 보호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됨.

다.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발달 현황

■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 ◆ MSSB(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를 실시하여 유아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여부,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 어떤 수행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친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주제로 말하는지 여부, 양육자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지 여부, 검사자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하여 측정하였음.

- ◆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총 1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MSSB)를 진행하였음.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를 각각 6명, 3명, 6명으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 분석 결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언어, 학습,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됨.
- ◆ 일반위탁 가정의 아동들 중, 수면 장애 및 분리불안을 겪는 아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발달적 장애로 언어발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양육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4명 정도의 영유아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가.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 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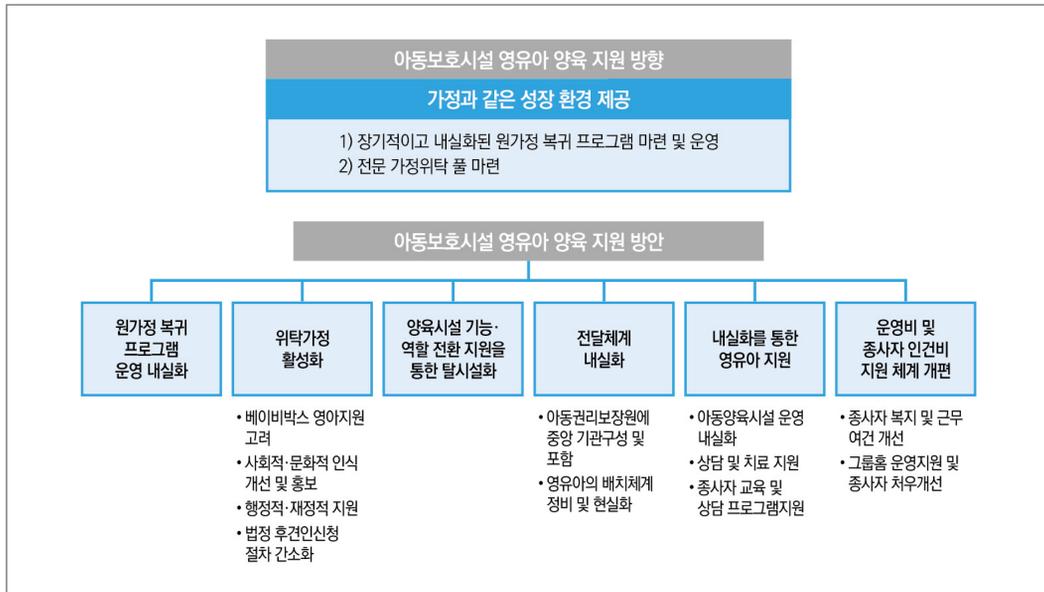
- ◆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나아가야할 전반적인 방향을 제안함.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대원칙은 이러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본 연구 결과,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다소의 불안은 나타내긴 했지만,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뿐 아니라 해당 유아는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표출하지 않았음.
 - 이상의 결과는 많지 않은 사례로 분석한 결과여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시 유아가 다른 보호시설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면모를 엿볼 수 있었음.
- ◆ 원가정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함.
 - 보호 필요 영유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가정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가정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과 개입 프로그램 작성하고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가 원가정에 복귀해서 성장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원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영유아가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 부모의 영유아 유기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러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 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상시 일정 수준의 위탁가정 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정기적인 관리 감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위탁가정을 구성하여 신뢰하며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가정 풀을 구축해야 함.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음.



[그림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원가정 복귀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를 포함한 영아 양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위탁가정 배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가능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위탁가정 풀에 대한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대상의 국가적 수준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 위탁가정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위탁가정 부모의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함.
- 양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을 통한 탈시설화
 - ◆ 양육시설이 오랫동안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포함한 아동 양육을 통하여 전수 되어 온 경험과 경륜을 완전히 부인하기 보다는 이들 시설이 지역사회의 복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의 내실화
 - ◆ 최근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 중앙 기관 구성 및 포함하여야 함.
 - ◆ 아동양육시설은 현재 보호필요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하는 중앙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형태에서 배제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속한 해결 조치가 필요함.
- 아동보호시설 내실화를 통한 영유아 지원
 - ◆ 아동양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 영아의 발달권과 보육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아동 대 보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가 실현되어야 함.
 - 현재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육사가 몇 시간의 교육 등을 통하여 바로 양육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육사 배치 전 현장 보조 실습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최소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함.
 - ◆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함.

-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 개편
 - ◆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체계 개편이 필요함.
 - ◆ 종사자 근무 여건 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추가 인력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실태 정보 제공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 제공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의 지원 방안 제안

I 참고 문헌 I

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기독교대학교.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1&CONT_SEQ=347826 (2019.3.11. 인출)

보건복지부(2018a). 2018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2018b).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보건복지부(2018c).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보건복지부(2019a).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 돌봄취약계층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The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일부개정]

| 이슈페이퍼 2020-10 |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이윤진

1. 탈북민 입국 동향과 지원제도
2. 현 정부 탈북민 지원정책과 탈북모자 사망사건 후 대책
3.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
4.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참고문헌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 요약 ◆◆

-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탈북민, 탈북가정에 대한 관심을 소환하는 계기가 됨. 이 사건 이후, 정부는 탈북민 생활안전 종합 대책 발표,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됨.
-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육아부담과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의 근로능력 부족,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가구소득원을 사회보장급여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지만, 법적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 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됨. 탈북 모자 사망 사건도 이러한 사례임.
-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취업 장려 위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와 건강상(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등 복합적임)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한부모 여성에게는 작동하기 어려움. 한편, 탈북 빈곤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급액에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높은 교육열을 보임.
- 탈북 가정 중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탈북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뿐, 이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생산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수립의 한계가 있음.
- 이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으로 1) 탈북 한부모 실태조사 명문화 2)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편입 3)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포함 검토 4) 기관교육·보육비용 지원정책: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5)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등을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지원방안(이윤진·김화순·김민주, 2020)」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1

탈북민 입국 동향과 지원제도

가. 입국동향

- 2020년 3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수는 약 3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이중 여성이 72.1%로 다수를 차지함. 탈북민 유입 인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1,000명대로 급락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최근에 올수록 강화됨.
- ◆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 함을 시사함.

나.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몇 차례 개정되어 옴. 현재 정착금 지원, 임대주택 제공 등의 기본 틀은 2004년도에 마련되었으며 취업과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옴.
- ◆ 동법에 의하면 탈북민에 대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함(제4조). 이에 따라 한국사회로의 “이주”라는 공통점을 지닌 결혼이주여성(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집단과는 차별화된 탈북민 정착지원을 추진함.

다. 정착지원 정책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정착지원정책의 전달체계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정부-지자체-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통일부, 2019: 14).

2

현 정부 탈북민 지원정책과 탈북모자 사망사건 후 대책

가.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¹⁾

- 현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기본방향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임.
- ◆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정책으로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탈북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중앙-지방-민간의 유기적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임.
- ◆ 본 기본계획에서 탈북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제를 추리면 <표 1>와 같음.

〈표 1〉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탈북 여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및 내용	소관부처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1-1-4.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희망 탈북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가부, 고용부, 통일부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강화	6-1-3.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한부모가정 등의 우선 지원 가능	여가부
	6-1-4.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위로방문, 긴급생계지원, 무연고 탈북민 장제·납골 안치, 사망위로금 등 지원	통일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pp.19, 29, 35, 37.

나.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

- 탈북모자 사망사건 후, 정부는 23개의 중앙부처·기관 및 지자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총 6개의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발표함.

1) 「북한이탈주민법」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함.

- ◆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탈북민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탈북민의 기초생활 보장 특례 범위 확대,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대상 고위험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추적·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가구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함.

다. 감사원 감사 실시

- 감사원은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개(1개 주의, 6개 통보 조치)의 지적사항을 발견함.
- 통보 조치 중의 하나가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음.
 -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중 임신, 출산을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 매칭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발견, 구제방안 마련을 통일부에 통보함.

3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

가. 탈북 여성 취업 실태

- 일반국민과 비교해서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별 차이 없으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엇보다 생계급여 수급률이 23.8%로 일반국민 3.4%에 비해 8배 가량 높음. 월평균 임금도 일반국민보다 약 66만원이 낮음.
- 고용률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남성은 70.6%, 여성은 56.6%로 여성이 낮음.
 - ◆ 거주기간별 남녀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3년 미만 43.6%→3~5년 미만 51.8%→10년 이상 57.0%), 남성은 3~5년 집단이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76.6%), 거주기간 10년 이상 된 집단이 정착초기(3년 미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3년 미만 69.6%→10년 이상 67.5%).

-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성별로 비교하면, 상용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적지만 임시직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많음(남 8.6%<여 15.2%).
- 요약하면, 안정된 지위인 상용직의 경우 3~5년 거주집단에서 가장 높고 거주기간 10년 이상 집단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남. 성별 고용상의 지위는 상용직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나, 임시직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음.

나. 탈북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실태

- 탈북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43.8%로 가장 많았고, 편견과 차별(12.6%), 근로여건(9.6%) 순이었음. 거주기간별 차이는 거의 없음.

〈표 2〉 탈북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단위: %

구분	육아 부담	여성에게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채용, 임금 등)	가족 돌봄 (육아 제외)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 정보 부족	여성의 직업 의식 부족	가사 부담	모름 기타	계	
전체	43.8	12.6	9.6	7.6	5.7	4.1	3.7	3.7	9.3	100.0	
남 한 거 주 기 간 별	3년 미만	42.9	11.6	6.0	11.3	6.7	5.4	3.0	2.6	10.6	100.0
	3~5년 미만	38.5	14.7	10.8	8.3	7.3	3.9	3.3	3.6	9.6	100.0
	5~10년 미만	45.5	13.1	9.1	6.7	5.7	3.7	3.8	3.6	8.9	100.0
	10년 이상	43.2	11.9	11.4	7.3	4.9	4.0	4.0	4.1	9.2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p.124-125.

- 본 연구²⁾에서는 육아부담과 함께, 건강상 어려움이 취업을 못하는 주요 이유로 나타남(표 3 참조). 법적 보호기간인 5년 경과인 사례가 더 많았음(총 6사례 중 4사례).

취업할 계획은 있으나, 제가 자격증도 없고 남들처럼 컴퓨터자격증도 없고 취업하려면 그런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리를 수술해서 걷긴 걸어도 너무 오래 4, 5시간 서있으면 다리가 통통 부어요...식당 같은 곳에 취업은 하고 싶으나 애가 어리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사례 1).

저도 취업을 하고 싶는데 몸이 안되고, 한글도 모르고.....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수면제를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작년에 다리 수술을 했어요. 왼쪽 다리 무릎이 십자인대가 파열돼 한국 와서 수술을 해서 못을 박았는데 학원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연골이 빠져서 다시 수술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까지 땡겨요.....솔직히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꿈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수십 번 해요(사례 4).

제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어요. 거기는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다행히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좀 외롭다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서럽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실제 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사례 5).

- 육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못함으로써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함. 사례 3을 제외하고는 수급을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이었음.

- ◆ 수급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월 100만원 초반 내외임. 여기에 아동수당,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 지급), 한부모지원금(초등학생 이상 자녀인 경우)을 추가로 받음.
- ◆ 남한 입국 후, 법적보호기간 5년이 훨씬 경과한 사례 1, 4, 5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보호기간 5년이 지나도 남한 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탈북 한부모 가정이 많음을 시사함.

2) 본 연구의 면담참여자(총 6사례)는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 또는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현재 배우자(동거남)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으로, 보호기간 5년 경과 여부를 고려하여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협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조사에 참여함.

〈표 3〉 심층면담조사 대상자(탈북 여성) 특성

사례 번호	출생지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자녀수	북한 학력	북한 직업	남한직업		취업 중단 이유	수급 여부	기타 지원금 여부
								과거	현재			
1	양강도	35	2007	2014	2명 (3, 5세)	고졸	무직	한약 보조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수급	아동수당
2	함경북도	40	2016	2016	1명 (20개월)	고졸	장마당	무직	무직	육아	수급	양육수당 아동수당
3	함경북도	45	1997	2003	2명 (8, 10세)	고졸	군인	식당 및 청소 아르바이트		육아	비수급	한부모 지원금 (아동 양육비)
4	함경북도	38	2003	2012	2명 (5, 7세)	소학교 중퇴	농사	무직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수급	아동수당
5	함경북도	38	2013	2013	2명 (15개월, 18세)	중졸	농사	피부 관리사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수급	양육수당 아동수당
6	함경남도	41	2008	2016	1명 (11세)	고졸	간호 조무사	공장 직원	무직	육아, 건강상 어려움	비수급 (수급 신청중)	한부모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주: 자녀수는 현재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를 나타냄.

- 현재 동거하는 자녀들은 모두 남한 출생임. 생부는 사망 또는 별거 등으로 부재임. 배우자가 양육비는 지원하는 사례 3을 제외하고는 자녀양육의 책임은 오로지 탈북 여성이 지고 있음.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 수유도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양육의 필수물품인 분유와 기저귀 구입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음.

아이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제가 수유가 없었거든요. 분유 그런 거 사 먹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급을 쪼개 쓰면서 애들 옷 덜 사고 여기에다가 투자했죠(사례 1).

(임신인 것 알고는) 지을 생각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임신 3개월 때 알아봤는데 450 정도는 내야 한다고 그 돈이 없으니까 낳았어요.……애를 낳고서 한 달 밖에 젖을 못 먹였어요. 그러니까 분유를 사 먹여야 하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고……수급에서 쓰기도 하고 어떨 땐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사례 2).

관리비 이런 거 다 내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먹을 거랑 옷 사면 (남는 돈이) 없어요(사례 4).

■ 대체로 자녀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인 자녀들이 4사례로 적지 않았음.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용 예정임. 현재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남한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음(표 4 참조).

-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례 모두 기본 수업료(무상지원) 외에 수익자부담원칙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를 수급비에서 충당하면서 부담이 크다고 함. 사례 4의 경우 월 수급액 110만원에서 두 자녀의 보육료로 한 달에 약 38만원 가량을 어린이집에 내고 있었음. 그러나 자녀가 어린이집을 옮기고부터 말도 잘하게 되고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함.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은 애들 공부할 때(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의미) 내는 비용 8만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달마다 8만원 빠지는 게... 교육비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거만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례 1).

- ◆ 정부가 제2차 기본계획에서 탈북 여성의 양육지원으로 수립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들 가정의 욕구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가정은 개별 양육보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양육을 더 선호했으며 아이돌보미 이용 시 본인 비용 역시, 부담스러움.
- ◆ 또래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녀가 남한 말씨를 배우기를 희망함.

아이돌보미는 들어보기는 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이용할 계획도 없구요. 돈 나가는 게 힘들고, 남이 봐주는 게 아무리 잘 봐준다 해도 마음이 안 놓여요(사례 1).

아이돌보미는 쓸 계획이 없어요. 어린이집을 보낼 거예요(지금 대기 중). 남한테 애를 맡기는 걸 생각하기도 싫고 제가 보는 게 제일 편해요. 힘들어요. 어린이집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아이돌보미는 제가 돈을 내야 하잖아요.……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 이유는 말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하려구요.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내 말씨를 따라 할까 봐 어린이집 가면 말도 배우도 춤도 배우고……(사례 2).

아이돌보미 그거 하면 돈이 들잖아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아이돌보미 쓰면....생각해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주변 언니들이 말해 줘서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버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더라고요(사례 5).

〈표 4〉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비동거 자녀		동거 자녀								
	자녀 수	국적	자녀 수	자녀 구분	성별	출생연도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자녀 국적	생부 국적	생부 동거 여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여부
1	1	중국	2	A	남	2016	언어발달 지연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B	남	2018	양호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2	1	북한	1	C	여	2019	양호	남한	북한	비동거	이용 (예정)
3	-	-	2	D	남	2011	언어발달 지연, 심리치료(과거)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 (과거)
				E	여	2013	양호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 (과거)
4	1	중국	2	F	여	2014	몸이 약함, 언어발달 지연, 언어치료(현재)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G	여	2016	몸이 약함, 언어발달 지연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중
5	-	-	2	H	남	2003	양호	북한	북한	사망	-
				I	여	2019	양호	남한	남한	비동거	이용 (예정)
6	-	-	1	J	남	2010	양호	남한	만족	사망	이용 (과거)

다. 현행 정착지원의 문제점

1) 취업지원체계 미작동

- 탈북민 지원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제공을 위해 2010년 이후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중심의 정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초기 하나센터의 3주간 초기집중교육에서 초기정착 교육 20시간, 진로탐색직업준비 교육 20시간, 개인역량강화 교육 12시간으로 직업준비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였으나, 하나센터는 취업지원 외에도 관할지역 전입자 신병인수 및 초기 전입지원,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사례관리, 정착지원 유관기관 협력연계 등 각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취업지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임.

- ◆ 여기에 초기정착 시기에 기초생계제도에 탈북민이 편입되면서 일자리보다 생계, 복지가 우선시 된 정착설계도 취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됨(최대석·김화순·박영자·이혜경·강금봉, 2010: 28).

2) 탈북 빈곤 여성(한부모 가정) 특성을 간과한 취업장려정책

- 탈북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을 떠나거나, 탈북과정에서 중국동포인 남편들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장애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음. 즉, 지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탈북 남성보다 남한 정착에서 매우 불리함.
- 그러나 현행 정착지원정책은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이러한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지금의 정착지원정책(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취업의 근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거나 건강이 여의치 않은 탈북 여성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 본인의 근로능력 부재, 배우자 부재로 인해 가구소득원을 국가의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입국 이후 5년간은 사회보장급여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계수급자로 생활하지만, 보호기간 이후에 탈북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초생계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함.
- 탈북 모자사망사건 이후, 일부 탈북단체가 그간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 항의와 시위, 비판을 하면서 정부는 보호기간 10년 연장조치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탈북민 사회와 일반 시민사회 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후퇴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오히려 정착 초기부터 일반 시민사회 복지체제로 빠르게 편입하는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함.

3) 관계 부처 간 협업 기능 미작동

- 탈북민 지원정책은 통일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 간의 협력 및 정부-지자체-민간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로는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 특히, 통일부는 탈북민 관련 기본 정보를 유관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정확한 기초자료 분석을 전제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

4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가.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명문화³⁾

-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탈북 여성,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거나 묵인한 결과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그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함.
- ◆ 탈북 한부모 가정을 타깃으로 실태조사가 어렵다면, 매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들을 추가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함. 단, 추가 질문과 보기 문항 등은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해야 할 것임.

〈표 5〉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법률	제22조(거주지보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좌 동〉

3) 본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설훈 의원실과 공동 주관·주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함. 설훈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가족현황을 포함하여 탈북 한부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5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보도자료, 2020. 9. 25)을 발의하였는데 본 연구가 기여함.

법령	현행	개정(안)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가족현황 *현 실태조사에도 가족 관련 설문문항은 있으나 한부모 가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거의 없음. 따라서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한부모 가정 관련 상세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나.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

- 정착지에서 보호기간 5년이 경과 후, 탈북민 보다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일부 산하의 전달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함.
 - ◆ 탈북민도 “특별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범주로 들어가려면 일반 시민들이 지원받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좀 더 빠르게 편입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초기 정착지에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의 전달체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주민자치센터)를 추가하여 일반 시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초기 단계부터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함.

다.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탈북 여성) 포함 검토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대상 모집 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참여 배제 대상임. 따라서 수급을 받고 있는 탈북 여성은 공공근로에 지원할 수 없음.
 - ◆ 그러나 근속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는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중 영유아 자녀(또는 초등저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허용해서 노동을 통해 수입도 벌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인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기관교육·보육 지원정책 수립: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탈북 빈곤 여성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이 비용을 낼 만큼, 자녀교육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의무교육·보육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취학 전 대부분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으므로 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봄.
- ◆ 거주지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특별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또는 수익자와 반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표 6〉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시 행 령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중략)..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하여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좌 동〉
	〈신 설〉	

마.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자는 노인(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어린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은 육아문제, 건강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임. 이에 관련 법 조항에 남한 입국 후 임신, 출산한 사람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표 7〉 취업보호기간 연장에 임신, 출산한 자 포함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법령	현행	개정(안)
시행 규칙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좌 동〉
	〈신 설〉	3. <u>입국 후 임신, 출산한 사람</u>

I 참고 문헌 I

- 관계부처 합동(2018. 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남북하나재단(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보도자료(2020. 9. 25). <탈북한부모지원법> 발의.
- 이운진·김화순·김민주(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대석·김화순·박영자·이혜경·강금봉(20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통일부(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ART

04

육아정책의 성과 및 방향

-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창현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 영유아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 지표 구성과 활용 방안
도남희

| 이슈페이퍼 2020-14 |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창현

1. 들어가며
 2. 정책의 쟁점과 과제
 3. 정책 제언
- 참고문헌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창현 부연구위원

◆◆ 요약 ◆◆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목표를 촉진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공영형 유치원은 공·사립 장점을 결합한 양질의 사립유치원 모델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와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공영형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성장, 공공성, 자율과 자치, 혁신 등의 선도적 가치 내재화)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안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모델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설립 초기 지원 정책강화, 업무 컨트롤타워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구축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안됨.
-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매입의 범위와 규모, 리모델링 가능성과 기간의 문제, 학부모 동의와 의견 수렴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안됨.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질 높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인구변화, 어린이집 수급, 사립유치원 퇴로 및 공사립 상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 또한 국공립 다양화 및 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추후 이 정책들에 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함. 아울러, 교육부, 교육청 및 지자체를 아우르는 TF 및 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함.

* 본고는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부처나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

1

들어가며

가.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목적과 방향¹⁾

-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이하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또는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정책의 주요 모델은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임.
- ◆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통해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질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이 강화된 유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목표를 촉진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나. 국공립 다양화 정책 현황

- 현재 국공립 다양화 모델인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8개원,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2개원, 매입형 유치원은 35개 운영 중임.
- ◆ 공영형 유치원은 서울 4개원(시도자율추진), 대구 2개원(1개원 시도자율추진), 광주 1개원, 강원 1개원 운영 중에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서울 1개원(노원구), 경기 1개원(화성동탄)이 운영 중임. 매입형 유치원은 서울 14개원, 부산 3개원, 울산 1개원, 광주 1개원, 경기 14개원, 경남 2개원 운영 중에 있음.
- 정부는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등의 유치원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이를 수정·보완하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

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김진석, 2019)」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책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유치원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함. 본고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유치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제안하였음.

2 정책의 쟁점과 과제

가.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 공영형 유치원이란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사립 장점을 결합한 사립유치원 모델임.
 - ◆ 학교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인 형태의 운영으로 ‘사립학교’의 취지를 반영한 유아학교 모델임.
- 대표적인 정책의 쟁점은 법인화 유인책 부족 및 법인화 과정의 어려움, 재정지원 및 재선정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문제, 개방이사 2인 이상 확보 문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의 문제 등임.
 - ◆ 공영형 유치원의 재선정과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유치원들이 법인화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사립학교법상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와 지자체로 되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강한 유치원들은 신청을 꺼리기도 함. 또한 정책초기단계로 법인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기존의 법인들 중, 종교재단 및 법인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공영형 유치원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나 개방이사 2인 이상 확보의 문제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공영형 유치원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주요 정책의 과제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를 통한 사업과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공영형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성장, 공공성, 자율과 자치, 혁신 등의 선도적 가치 내재화), 교육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교육복지형 유치원 체제 마련(특수학급 추가,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체제), 유치원 의무교육에 관한 로드맵 구성 등임.

- ◆ 공영형 유치원 사업 자체가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기간과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함.
-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단기 사업이 아니라 유치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 로드맵을 그리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건전한 사립학교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추후 유치원을 학제화 하는데 선행사례가 될 수 있음.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시행착오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사립학교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되나 사립유치원임. 초기 평가와 컨설팅으로 유치원의 질을 높이고, 추후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사립유치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선정 이후에는 자율과 혁신, 자치와 선도 등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유치원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 ◆ 공영형 유치원이 사회배려계층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포용해나갈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특수학급은 의무교육이므로, 현재 사립 유치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 모델임.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게 됨.
- ◆ 정부의 역할과 시민 공동체의 역할을 일체화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확장한, 유치원 정책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접근임.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 교육 및 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운영, 유치원 교육내용을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정책의 주요 쟁점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기제 마련, 사립유치원 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임. 특히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책무성을 가지고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구성원 구축이 필요함. 사립유치원은 자기로 설립가능하므로, 초기 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에 교직원과 부모 주체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조합과 유치원이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에 이사장과 원장의 조정자(facilitator) 역할이 매우 중요함.
 -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은 다중 이해자들이 운영하므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나가는 것에서 공공성이 발휘됨. 갈등을 조정하고, 함께 방향을 공유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함.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책무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립학교(유치원)이므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초기 설립 비용의 부담이 큰 편임. 초기 설립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나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함.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운영 주체에 반드시 교직원과 학부모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자칫 부모 주체가 빠지고, 교직원과 지역사회 조합원 위주로 주도하게 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정책의 주요 과제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업무 컨트롤타워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구축, 설립 초기 지원 정책에 집중 필요(설립 초기 공간 및 자금 확보 등),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등임.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운영하는 법인 유치원에 해당하나, 특수성이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설립을 원하는 당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설립 초기 비용과 행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유치원이므로, 초기 지원 정책에 집중하여 임대료 감면, 공공기관 임대 협력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무분별한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인가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함.

다. 매입형 유치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 매입형 유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및 국가 책무성 강화, 공립유치원 확대 지원,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의 행정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 매입은 교사(校舍), 교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음.
- 주요 정책의 쟁점은 매입의 범위와 규모, 리모델링 가능성과 기간, 선정 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 학부모와의 협의 등임.
 - ◆ 매입의 범위와 규모의 경우, 설립자 소유의 부지와 단독 건물의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복합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동일해야 매입이 가능함. 교재교구와 교직원은 승계가 되지 않음.
 - ◆ 리모델링의 경우,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기간 확보를 위해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 매입형 유치원을 진행하기 전, 국공립 전환에 대해 학부모들과 협의가 없을 경우, 민원이 발생해 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
- 정책의 주요 과제는 매입형 유치원 자격 및 제외조건 강화, 매입형 유치원 분원 법령 마련, 매입형 유치원 시행 시 학부모 동의를 충분히 구하기,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환기 필요, 국공립유치원의 질 제고와 유연한 서비스 제공 등임.

- ◆ 매입형 유치원 자격요건 중, 제외조건과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이나,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등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 ◆ 매입형 유치원의 분원 법령을 마련하여 규모가 적은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분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 시도별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 ◆ 매입형 유치원의 목적과 취지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것임. 단·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우나 국공립 수요가 있는 곳에 매입형 유치원이 필요함.
- ◆ 추후 매입형 유치원의 질 제고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던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3

정책 제언2)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 및 인구변화, 어린이집 수급, 사립유치원 퇴로 및 공사립 상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
 -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40% 확충 정책, 시도별 인구변화 및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정책, 어린이집 수급, 사립유치원 퇴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함. 즉, 국공립 통폐합 정책, 사립유치원의 퇴로 정책인,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매입형 유치원 등의 정책을 시도교육청에 알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지역은 과밀, 구도심은 인구절벽으로 유치원 확충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택지개발지역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정책에 집중하고, 구도심은 사립유치원과 상생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나가야 함.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 외, 2020)」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함.

- ◆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학교의 공간 부족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우므로,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농산어촌의 경우, 저녁 돌봄 수요가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이 많음. 이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재배치 및 통합 정책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함.
- 질 높은 국공립+사립유치원 상생 발전을 방안을 위해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투 트랙 정책을 시행해야 함(박창현·김근진, 2018).
 - ◆ 혁신과 교육 자치를 화두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돌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국공립유치원의 질 제고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 학부모의 요구,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고도 다양한 모델의 유치원과 돌봄 운영 정책이 필요함.
 - ◆ 유아 대 교사 비율 낮추기, 공공성 높은 우수 유치원 인센티브 및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함.
 - ◆ 최근 코로나 19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함께 지원책도 함께 고민하여야 함.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이 사립교원과 유아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국공립 확충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
- 국공립 다양화 및 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함.
 - ◆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배포 이후, 국민들에게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역할과 가치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공공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성과에 대한 라디오, 광고, 카드뉴스, 누리집 등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국공립 다양화 및 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필요함.
 - ◆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관한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성과를 누적하고, 환류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함.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책 연수 필요함.

- ◆ 새로운 정책들이 안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음. 이를 통해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함.
- ◆ 추후 시도별 다양한 사례들을 매뉴얼에 포함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음.
- ◆ 비대면 회의 및 비대면 연수자료 등을 개발하여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교육청 및 지자체를 아우르는 TF 및 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 교육청 내 칸막이를 극복하고, 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함.

| 참고 문헌 |

박창현·김근진(2018). 국·공립 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 외(2020).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박창현·김근진·이재희·조혜주·김진석(2019).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 이슈페이퍼 2020-04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1. 서론
2.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3. 세부사업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연구위원

◆◆ 요약 ◆◆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실제 투입 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재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양육부담 완화에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 투입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개별사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지원 대상의 확대와 같은 세부사항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음.
-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를 전제한 상태에서 일가정 양립 부문의 강화 및 현행 비용 지원 체계와 기초의 유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장 및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됨.

1 서론

가. 문제제기

- 극심한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 2010년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¹⁾은 4조 4,334억원이었고, 2017년에는 13조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 2019)」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1) 산출 기준은 중앙재정(교육부 예산 제외) + 교육재정으로 구성됨.

2,626억까지 무려 약 3배가량 증가하였음(최효미 외, 2019: 69).

- 이와 같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급속한 증가는 2013년을 전후한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제도의 정착과 맞물려 있음.
 - ◆ 보육 및 유아교육의 보편 지원의 확산으로 인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이 크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앙정부 육아정책 사업 예산 중 양육지원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임(최효미 외, 2019: 72).
 - ◆ 2018년 9월 이후 아동수당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아동수당 홈페이지, 2020. 5. 6 인출), 2019년도 이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음.
-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 그 간 저출산 지원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방점이 놓여 있었음(대한민국정부, 2016).
 - ◆ 정부의 정책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두는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으며, 육아정책 또한 이러한 기초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 바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 이와 같이 정책 기초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 이는 향후 육아정책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의 재구조화(재정 투입에 있어서의 조정)가 국민들의 정서에 보다 부합하며 정책 체감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진단하기 위함임.
 - ◆ 또한, 향후 진행되는 정부의 육아정책 기초의 변화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임.

나. 분석 자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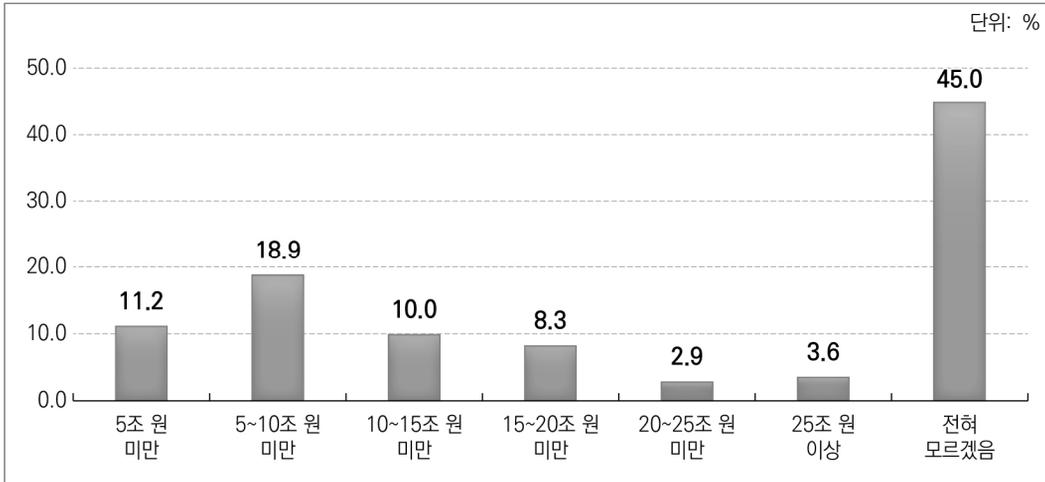
- 본고는 최효미 외(2019)에서 실시한 대국민(1,055명) 인식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 ◆ 대국민 인식 조사의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0.3%(109명), 30대 48.9%(516명), 40대 36.0%(380명), 50대 이상 4.7%(5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49.3%, 여성 50.7%임.
- ◆ 응답자 중 미혼자는 21.1%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40.6%임.
- ◆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0~3세 자녀가 있는 경우가 243명, 4~6세 자녀가 있는 경우 179명, 7~8세 자녀가 있는 경우 126명, 9~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220명, 13~18세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256명임.²⁾

2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45.0%에 달하며 높은 비중을 보임.
- ◆ 육아정책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느냐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2017년 기준 적게는 11조 8,867억원에서 17조 7,274억원에 달함(최효미 외, 2019: 69).
- ◆ 대국민 조사 결과 육아정책분야 투입 규모에 대해 구간 값을 응답한 경우에도 5~10조원을 응답한 경우가 1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조원 미만 11.2%였음.
- ◆ 즉, 일반 국민의 경우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규모를 아예 인지를 못하거나 실제 보다 상당히 작게 투입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2) 복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산 수치가 유자녀 가구 수보다 많음.



[그림 1]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인지

주: 응답자는 1,055명임.

- 응답자에게 육아정책분야(보육, 유아교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투입된 실제 재정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조원가량을 고지한 이후, 이러한 재정 투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부족한 편(부족한 편+매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60.1%에 달함.

 - ◆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실제 투입 규모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더욱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 다만,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첫째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첫째 자녀가 9~12세 사이인 경우에는 충분한 편이 36.3%, 13~18세의 첫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1.5%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 이는 대국민 조사의 특성상 본인의 혜택 여부 등이 정책에 대한 선호와 의견에 반영되는 현상으로 보임.
 - ◆ 한편 정치 성향(주관적 응답)에 따라서는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16.3%에 달하는 반면, 진보층에서는 5.3%만이 과도하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임.

〈표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의 적정성

단위: 점, % (명)

구분	평균점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				계	
		과도한 편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한 편		
전체	2.4	8.5	31.4	49.2	10.9	100.0(1,055)	
첫째 자녀 연령	0~3세	1.9	0.7	15.9	60.3	23.2	100.0(151)
	4~6세	2.2	6.2	21.0	60.5	12.3	100.0(81)
	7~8세	2.3	7.9	25.0	60.5	6.6	100.0(76)
	9~12세	2.4	8.1	36.3	46.0	9.7	100.0(124)
	13~18세	2.6	11.8	41.5	43.1	3.6	100.0(195)
	F / χ^2	19.663***	78.156***				
정치 성향	보수	2.6	16.3	34.6	40.4	8.7	100.0(104)
	중도	2.4	8.9	32.7	49.8	8.6	100.0(474)
	진보	2.3	5.3	30.4	54.7	9.7	100.0(247)
	정치성향 없음	2.3	7.8	28.3	46.1	17.8	100.0(230)
	F / χ^2	5.139**	28.883***				

** $p < .01$, *** $p < .001$.

- 육아정책분야 예산투입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이 4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유아교육이 31.9%로 가장 높음.
- ◆ 예산 투입이 확대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41명(3.9%)에 불과하며, 예산 투입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559명(53.0%)에 달하여,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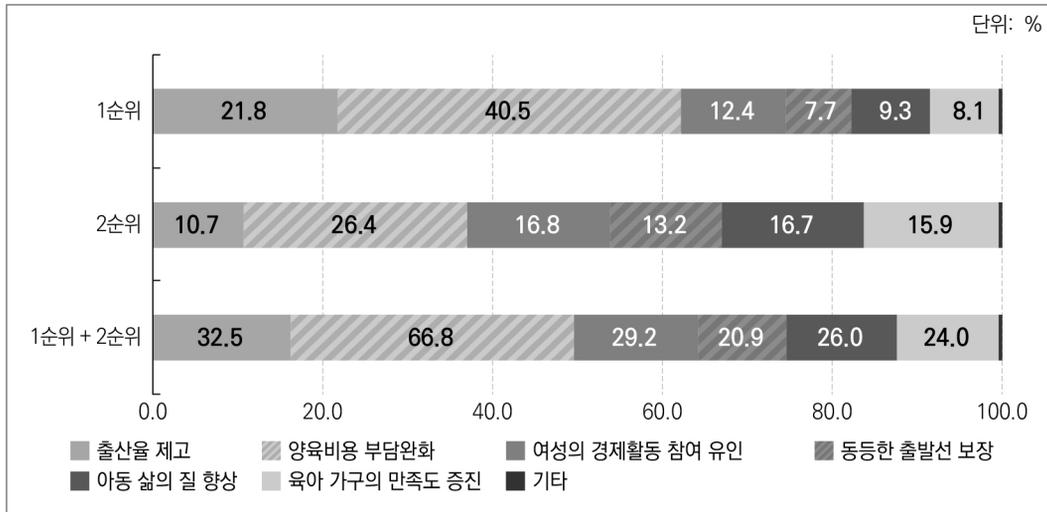
〈표 2〉 육아정책 분야 예산투입 확대/축소가 필요한 분야

단위: %(명)

	보육	유아 교육	돌봄 취약계층	일가정 양립	기타 저출산	계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	2.4	8.5	31.4	49.2	10.9	100.0(1,014)
투입 축소가 필요한 분야	28.8	31.9	23.2	27.6	24.4	100.0(496)

-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1+2순위 합산 응답 기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66.8%로 가장 높음.

- ◆ 양육비용 부담 완화는 1순위 응답 뿐 아니라 2순위 응답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2]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주: 응답자는 1,055명으로, 1+2순위는 2,110명에 대한 응답 값임.

- 한편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용지원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시간 지원이 27.1%로 다음을 차지함.
- ◆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 구간에서 직접적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낮아지는 반면에 의료 등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 이는 현재 육아가구에 대한 직접적 비용 지원이 어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호를 결정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 앞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가장 우선시하며,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 비용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원 제도 중에서는 아동수당 제도가 육아 가구들에게 있어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일 것으로 사료됨.³⁾

〈표 3〉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단위: %(명)

	육아 가구에게 직접적인 비용 지원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의료 등 서비스 지원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지원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음	계	
전체	41.5	27.1	9.1	18.0	4.3	100.0(1,055)	
첫째 자녀 연령	0~3세	53.6	25.2	4.0	15.9	1.3	100.0(151)
	4~6세	48.1	28.4	3.7	13.6	6.2	100.0(81)
	7~8세	38.2	32.9	5.3	21.1	2.6	100.0(76)
	9~12세	44.4	25.8	11.3	16.9	1.6	100.0(124)
	13~18세	32.3	26.2	16.9	20.5	4.1	100.0(195)
	χ^2			40.385***			

*** $p < .001$.

- 육아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9~12세까지는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13~18세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도 21.7%에 달함.
- ◆ 그러나 오히려 첫째 자녀의 연령이 13~18세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 구간 (13~18세)까지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0%에 그쳤음.

〈표 4〉 육아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단위: % (명)

	평균 연령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계	
		0~3세	4~6세	7~8세	9~12세	13~18세		
전체	9.9	2.1	18.6	24.5	33.2	21.7	100.0(1,055)	
첫째 자녀 연령	0~3세	10.2	4.0	14.6	23.2	32.5	25.8	100.0(151)
	4~6세	10.4	1.2	8.6	29.6	34.6	25.9	100.0(81)
	7~8세	10.4	0.0	10.5	21.1	53.9	14.5	100.0(76)
	9~12세	10.8	1.6	7.3	26.6	41.1	23.4	100.0(124)
	13~18세	9.8	1.0	25.1	19.5	35.4	19.0	100.0(195)
	χ^2	1.302			42.657***			

*** $p < .001$.

3) 영유아 자녀를 위한 비용 지원 방식의 지원으로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성 지원으로서 가장 직접적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아동수당 지원 제도임.

3 세부사업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육아정책분야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먼저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50% 전후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 지원금을 조정해야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연령,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른 차등 순으로 응답됨.

〈표 5〉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구분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계	지원금 차등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				계
	확대	유지	축소		자녀 연령	가구 소득 수준	취약 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시간	
보육료	47.5	41.9	10.6	100.0(1,055)	28.5	44.0	18.6	8.8	100.0(613)
누리과정 지원	50.5	40.8	8.7	100.0(1,055)	26.9	41.9	22.1	9.1	100.0(625)
가정양육수당	54.9	33.6	11.5	100.0(1,055)	28.7	44.3	23.1	3.9	100.0(700)

-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50% 전후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은 보육료가 10.8%로 가장 많고, 누리과정 지원은 7.7%로 가장 적음.

〈표 6〉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 :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구분	확대	유지	축소	계
보육료	50.2	39.0	10.8	100.0(1,055)
누리과정 지원	49.2	43.1	7.7	100.0(1,055)
가정 양육수당	52.1	38.2	9.7	100.0(1,055)

-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조정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여부가 60% 전후의 높은 지지를 받음.
- ◆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보육료의 경우 59.9%, 누리과정 지원 61.7%, 가정양육수당 59.8% 였음.

〈표 7〉 우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견 :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구	기타	계
보육료	59.9	15.4	11.6	11.6	1.4	100.0(644)
누리과정 지원	61.7	14.7	9.5	12.7	1.5	100.0(600)
가정양육수당	59.8	14.3	10.7	13.8	1.4	100.0(652)

나. 아동수당 지원

- 한편,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2%로 가장 높았음.
- ◆ 현행 아동수당 지원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도 35.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 ◆ 정치성향에 따라서 진보층 일수록 현행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아진 반면, 보수층에서는 지원 자체는 찬성하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표 8〉 아동수당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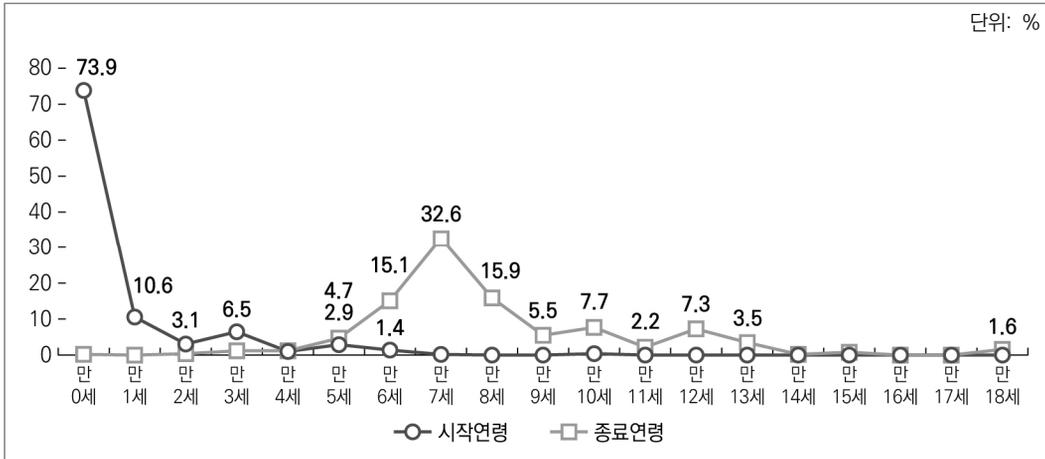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현재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함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원 자체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계
전체	35.3	48.2	10.8	5.7	100.0(1,055)
정치 성향					
보수	23.1	51.0	13.5	12.5	100.0(104)
중도	29.3	53.2	11.2	6.3	100.0(474)
진보	48.6	39.7	8.5	3.2	100.0(247)
정치성향 없음	38.7	46.1	11.3	3.9	100.0(230)
χ^2		43.549***			

*** $p < .001$.

■ 현행 아동수당 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00명의 응답자에 대해 지원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 아동수당 지원 시작 연령은 현행과 같이 0세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73.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아동수당 지원 종료 시점의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만7세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기는 함.
- ◆ 현행 기준보다 1세 많은 만 8세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15.9%로 다음을 차지했고, 현행 기준보다 1세 적은 만 6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15.1%였음. 또한, 만 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총 28.8%에 달함.



[그림 3]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에 대한 의견

주: 현행 아동수당 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09명에 한하여 질문함.

- 아동수당을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확장한다고 할 때 추가 지원 대상으로는 보육료 등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
-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1%로 2순위를 차지함.

<표 9> 아동수당 추가 지원 필요 대상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구	기타	계
추가 지원 필요 대상	72.9	37.1	27.3	24.0	1.4	100.0(509)

주: 지원 대상별로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로, 중복 응답되었음.

다. 육아휴직제도

-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인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68.6%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 정도를 보임. 다만,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안다는 응답이 60.9%로 다수임.
- ◆ 아버지의 육아 참여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가 37.8%, 다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34.7%, 현행 유지가 21.7%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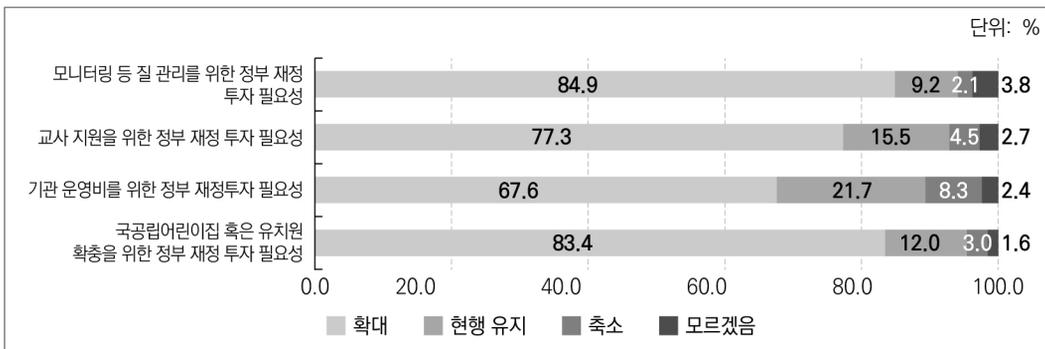
[그림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에 대한 인식

주: 응답자는 1,055명임.

라.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지원

-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투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등 질 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이 84.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의 필요성도 8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항목에서 10%미만 수준에 그침.



[그림 5]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재정투자에 대한 의견

주: 1) 각 항목별로 필요성을 각각 질문한 결과임.
2) 응답자는 1,055명임.

마.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 대표적인 세부사업을 제시한 상태에서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 사업을 질의한 결과에서 1+2+3순위 응답 기준 육아휴직 33.3%, 가정양육수당지원 33.1%,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32.2% 순이었음.
- ◆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1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육아휴직 14.1%, 3순위 응답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1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표 10〉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

구분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계	100.0	100.0	100.0	300.0
보육료 지원	19.3	6.0	6.0	31.3
가정양육수당 지원	17.0	10.2	5.9	33.1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5.4	3.2	4.0	12.6
아동수당	8.0	5.9	6.2	20.0
육아 휴직	12.0	14.1	7.1	3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	9.3	4.5	17.6
시간 연장반 및 시간제 보육 등 지원	2.2	4.5	3.7	10.4
한부모 가구 지원	2.9	4.0	5.1	12.0
다자녀 가구 지원	2.0	3.1	4.0	9.1
장애 가구 지원	2.5	3.8	4.0	10.2
저소득층 지원	8.7	9.0	10.1	27.9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9.4	11.0	11.8	32.2
기관 운영비	0.4	1.3	1.5	3.2
교사 지원	1.5	3.1	5.7	10.3
모니터링 등 질 관리	1.6	5.2	6.5	13.4
아동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0.9	2.6	4.7	8.2
아이돌봄비 등 돌봄 지원	1.1	1.9	5.5	8.5
아동 관련 지역 인프라 지원	1.0	1.7	3.6	6.4
기타	0.2	0.0	0.0	0.2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실제 투입액에 비해 상당히 적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실제 재정 투입 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부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해당 부문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 규모가 적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 재정 투입 규모와 무관하게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양육 부담 완화가 가장 우선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방향성은 특히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됨.
 - ◆ 다만,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의 확대는 전반적인 재정 투입 규모의 확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현행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아동수당,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과정에서 특히 아버지의 육아참여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가 요구됨.
 - ◆ 본고에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에서 현행 육아 휴직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에 비해 아버지 육아참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게 나타남(최효미 외, 2019: 160-165).
 - ◆ 한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아버지 육아참여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는 높은 편이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강화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히 요구됨.
- 기존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은 영유아기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육아 지원의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 영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정책 사업일 뿐 아니라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정책이므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함.
- ◆ 다만, 육아정책의 지원 대상을 영유아기를 넘어서는 만12세(초등학교) 자녀로 확장할 필요성 있음. 이때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비용 지원, 정책 방향 또한 양육부담 완화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확장은 아동수당 지원의 연령 확대를 통한 것이 정책 체감도 제고에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육아 가구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차등적 육아지원보다는 보편적 육아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보편 지원의 바탕 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음.
 - ◆ 현행 보편 지원의 비용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육아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보편 지원 체계 안에 저소득층 지원을 접목하는 것은 자칫 보편 지원 체계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 등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 한부모, 조손 가구 등도 저소득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는 자연스럽게 이들 취약 가구를 포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 참고 문헌 I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intro.php>(2020. 5. 6 인출).

| 이슈페이퍼 2020-01 |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육아문화 진단(Ⅰ) : 육아 관련 키워드 분석
 3. 육아문화 진단(Ⅱ) : 설문 조사
 4. 결론 및 정책 제언
- 참고문헌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연구위원

◆◆ 요약 ◆◆

-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빅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로 구분하여 긍정/부정문서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긍정문서의 개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문서의 개수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7만 6천 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얻음.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꾸준히 지속해야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추진, 지역사회 내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계와 이용 기회 확대,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요구됨.

1

배경 및 문제점

-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행복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되어지는 주체인 자녀의 ‘아동권’과 더불어 양육하는 주체인 부모의 ‘육아권’을 존중하는 사회가치를 실현할 노력이 필요함.

* 본 고는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및 관련어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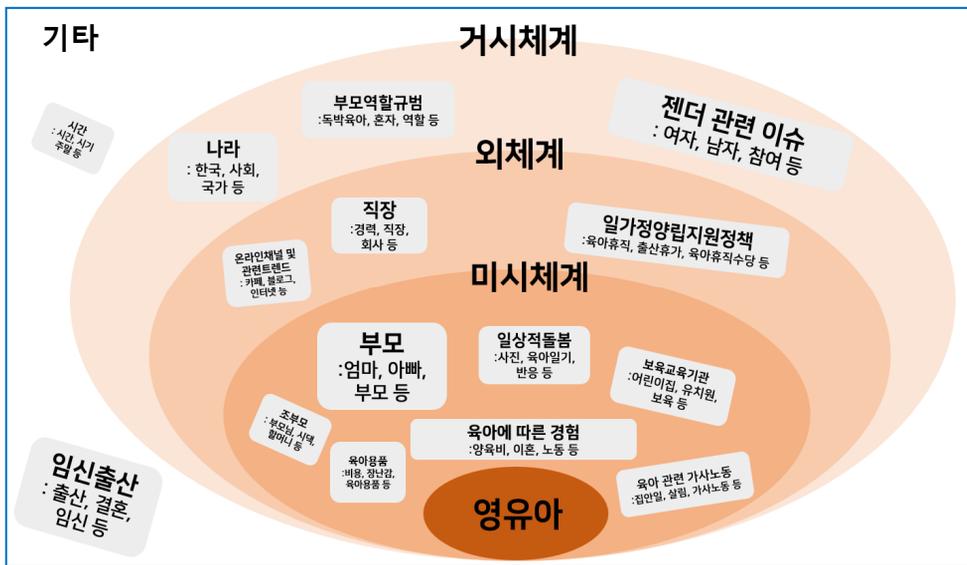
- 양육이 부모만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닌, 국가가 지켜줘야 할 ‘권리’라는 ‘육아권’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저출산 극복, 아동의 권리 존중, 육아하는 부모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가치’와 ‘가치의 실현’을 확산,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육아를 행복하게 느끼는 문화를 조성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됨.
- 본고는 한국의 육아와 관련한 문화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본고는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 이를 위해 2019년 육아 관련 키워드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과 20~40대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육아문화 진단(Ⅰ) : 육아 관련 키워드 분석¹⁾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에 나타난 긍정성과 부정성을 빅 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육아’에 대한 주제어사전을 개발한 후 관련 주제어를 수집하여 분류함.

1) 본 절은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강이, 이재림 교수 외)이 수탁하여 진행한 연구의 내용임.

-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주제어 중 출현빈도가 1,000회 이상인 단어를 살펴보면, 미시체계에는 부모, 일상적 돌봄, 육아에 따른 경험, 교육보육기관, 육아관련 가사노동, 육아용품, 조부모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 ‘부모’ 범주에서는 ‘엄마’, ‘남편’, ‘아빠’, ‘부모’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고 ‘미혼모’, ‘맞벌이’, ‘워킹맘’, ‘한부모’ 등 부모의 상황 특성을 반영하기도 함.
- 외체계에는 직장,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온라인 채널 및 관련 콘텐츠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며, 외체계 중 부모의 일 환경과 관련된 주제어가 포함된 ‘직장’에서는 ‘경력’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함.
- 거시체계에는 젠더 관련 이슈, 나라, 부모역할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며, 거시체계의 규범 중 ‘부모 역할’에서는 ‘독박육아’와 ‘혼자’, ‘젠더 관련 이슈’에서는 ‘여자’, ‘남자’ 그 외의 ‘참여’, ‘책임’, ‘분담’, ‘페미니즘’, ‘한남’, ‘성평등’과 같은 주제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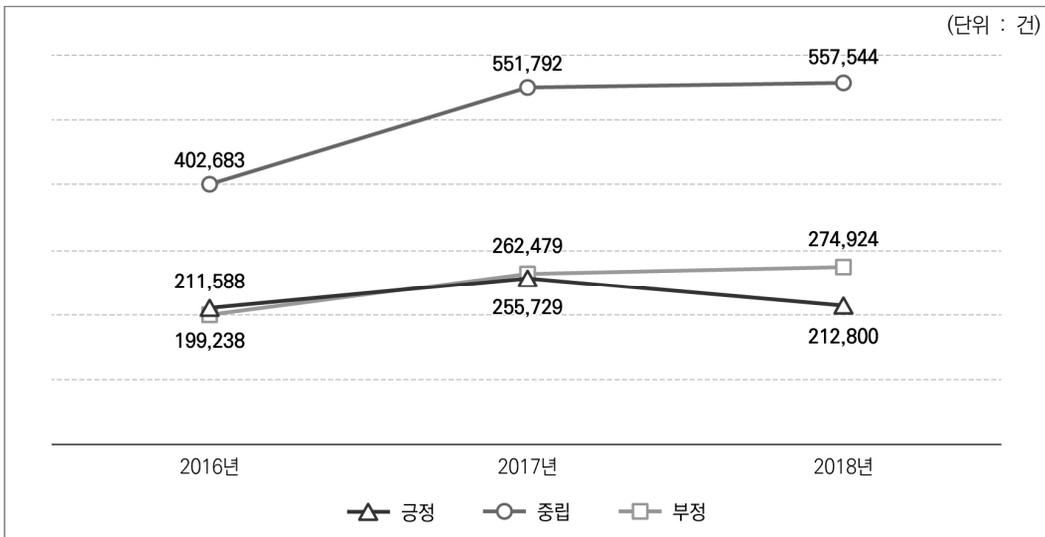


[그림 2]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중증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87. [그림 III-3-3]임.

다. 연도별 감성분석

- 육아 관련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로 구분한 긍정/부정 문서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펴봄.
- 2016년~2018년 최근 3개년의 관련 빅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긍정문서, 부정문서의 문서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긍정문서의 개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문서의 개수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7만 6천 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연도별 감성분석(전체)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94. [그림 III-3-5]임.

라.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 육아 관련 문서에 등장한 감성 단어 중 긍정어 및 부정어 출현 횟수를 바탕으로 감성어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함.
-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육아’, ‘아이’, ‘여자’, ‘엄마’ 주제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어 긍정문서에서는 ‘아기’, ‘가족’, ‘부모’, ‘아빠’, ‘자녀’와 같은 주제어가 부정문서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함.

◆ 흥미로운 것은 육아 관련 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이 더 우세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남자’의 경우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빈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 점으로, 이는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언급할 때와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를 언급할 때 관련된 감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긍정문서 내 상위 출현빈도 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한 [그림 4]를 보면, 미시체계에서 ‘가족’, ‘부모’, ‘아빠’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주요 긍정 핵심 주제어임.



[그림 4]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긍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주: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주제어는 긍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부정문서에 비해 10,000회 이상 더 많거나, 부정문서에서는 상위 50개 주제어에 해당하지 않고 긍정문서에서만 상위 50개 주제어로 등장한 주제어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03.
 [그림 Ⅲ-3-14]임.

■ 부정문서 내 핵심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한 [그림 5]를 보면, 미시체계에서 ‘남편’, ‘아내’, ‘양육비’가 높은 빈도로 핵심 주제어이고, 외체계에서는 ‘육아휴직’이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긍정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경력’, ‘육아휴직’ 등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이는 자녀양육이 경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육아휴직 이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5]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부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주: 가장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제어는 부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긍정문서에 비해 10,000회 이상 더 많거나, 긍정문서에서는 상위 50개 주제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문서에서만 상위 50개 주제어로 등장한 주제어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03. [그림 Ⅲ-3-15]임.

3 육아문화 진단(II) : 설문 조사

- 육아관련 문화 현상들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에 대해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경향을 파악함.
- ◆ 전반적인 육아 관련 문화, 가정 내 육아문화,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인식, 개선의견을 수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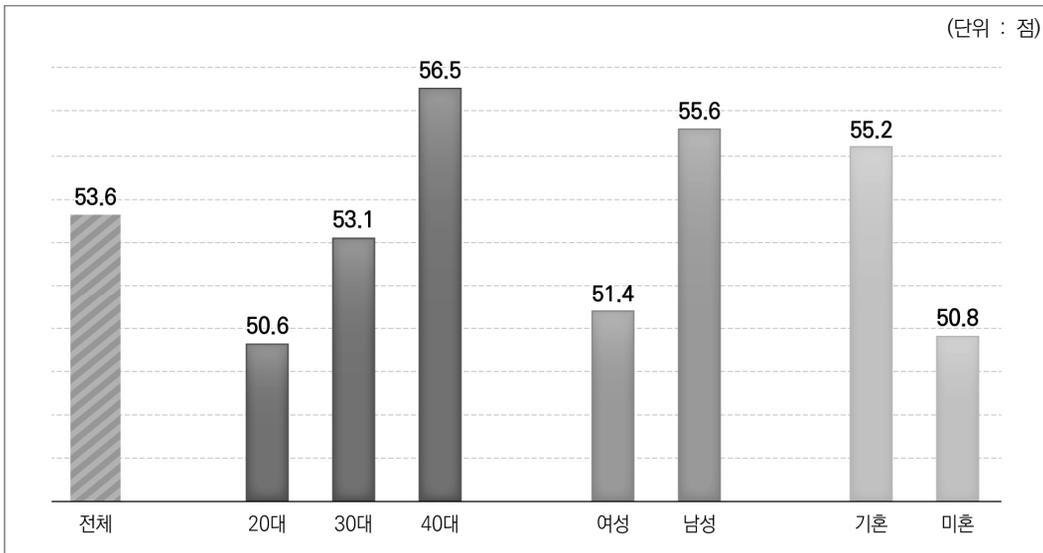
가.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인식

■ 육아문화에의 영향요인

- ◆ 육아와 관련된 문화 중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1%가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시간제보육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라고 답함.
- ◆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보다도,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선택함.

■ 육아문화에의 긍정성 진단

-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성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평균 53.6점으로 나타남. 20대에는 50.6점, 30대에는 53.1점, 40대에는 56.5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고, 여성은 51.4점, 남성은 55.6점으로 남성이 긍정적 평가 경향을 보였고, 미혼 집단(50.8점) 보다는 기혼 집단(55.2점)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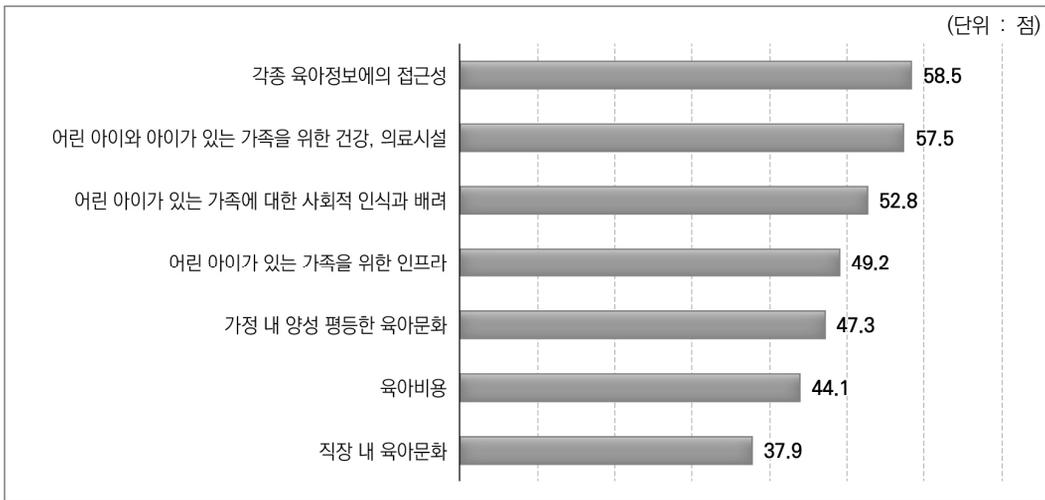


[그림 6] 우리 사회 긍정적 육아문화 점수의 집단별 차이

자료: 권미경·문우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 154. [그림 V-1-1]임.

■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 ◆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100점 기준 점수를 부여함.
- ◆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58.5점), 병원이나 보건소 등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및 의료시설(57.5점),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52.8점) 등에 대해 50점 이상임.



[그림 7]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55. [그림 V-1-2]임.

■ 자녀 양육환경으로의 사회 평가 및 이유

- ◆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점 기준 평균은 2.2점으로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2점)'에 수렴함. 40대에서 2.4점으로 20대 2.1점이나 30대의 2.2.점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자녀연령이 중학생 집단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남.
- ◆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이유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 '이용이 편리한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을 꼽음.
- ◆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인 이유는 '과도한 양육비용',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 어려움'으로 나타남.

■ 육아문화 양상의 긍정성 진단

- ◆ 긍정적 측면으로는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93.6%,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80.6%,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78.4%,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78%,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77.5% 등임.
- ◆ 부정적 측면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91.7%, ‘우리 사회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91.4% 으로 대표됨.

■ 온라인 소통 관련

- ◆ 온라인 SNS 소통 통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카카오톡이 1위, 20대와 30대, 여성, 미혼 집단에서 인스타그램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음.
- ◆ 육아와 관련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네이버이며,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는 40대에서는 공중파, 30대에서는 케이블 방송, 20대에서는 유튜브(YouTube)를 들어 뚜렷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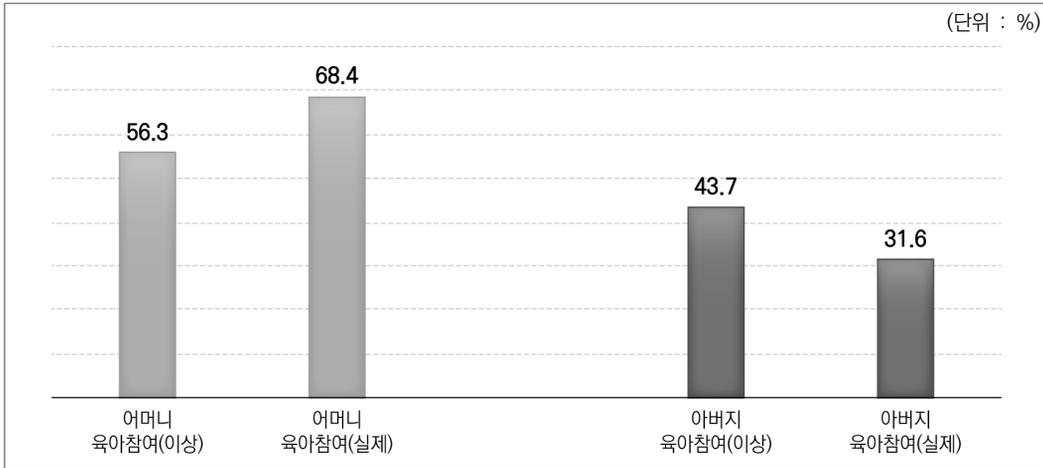
나.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 부부의 평등한 육아 참여

- ◆ 가정에서 부부의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균점수는 65.2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여성(61.5점)은 남성(69.1점)에 비하여 평등한 육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보임.

■ 부부의 육아 참여 정도

- ◆ 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육아참여 정도와 실제 참여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제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저조함을 확인함.



[그림 8] 부부의 육아 참여 정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95. <표 V-2-2>, p. 196. <표 V-2-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

- ◆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가 각각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가 3.3점으로 조사됨(4점 만점).
- ◆ 한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있다’는 유일하게 3점 미만(2.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 남성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정하여, 육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이는 양육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체감하는 양육에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로 보임.

■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

- ◆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에 대해 각각 3.2점과 3.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2.8점,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2.4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4점 만점).
- ◆ 육아에 대한 육체적 어려움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3점), 이는 30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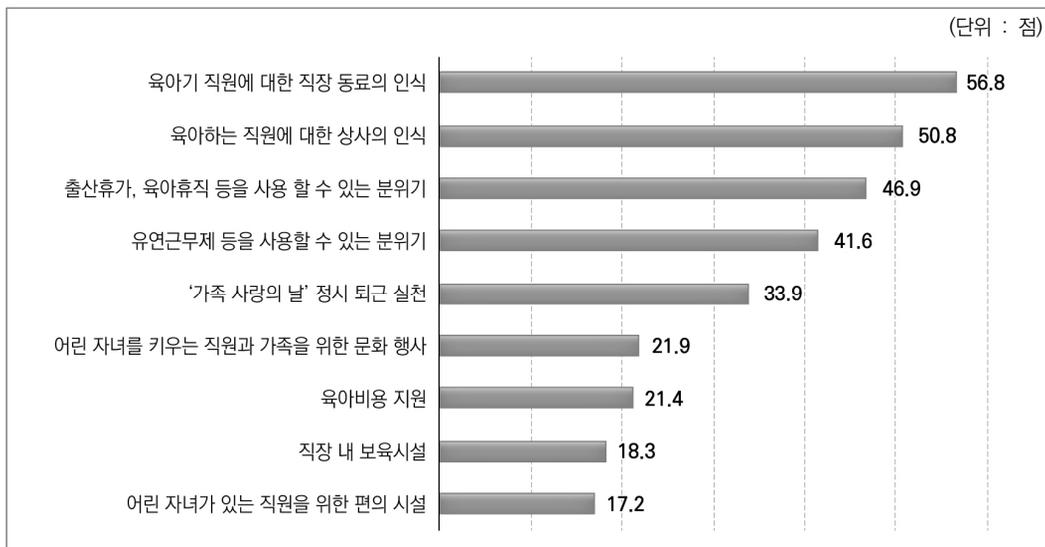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사항

- ◆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6%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라고 답함.
- ◆ 다음으로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19.4%), '남녀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8.1%), '부모의 양육관 및 교육관의 다양성 인정'(13.0%), '육아에 대한 과소비문화 지양'(4.7%) 등임.

다.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는 평균 54.6점으로 우리나라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가 대체로 육아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함.
- ◆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 동료의 인식'과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가 가장 높음.



[그림 9]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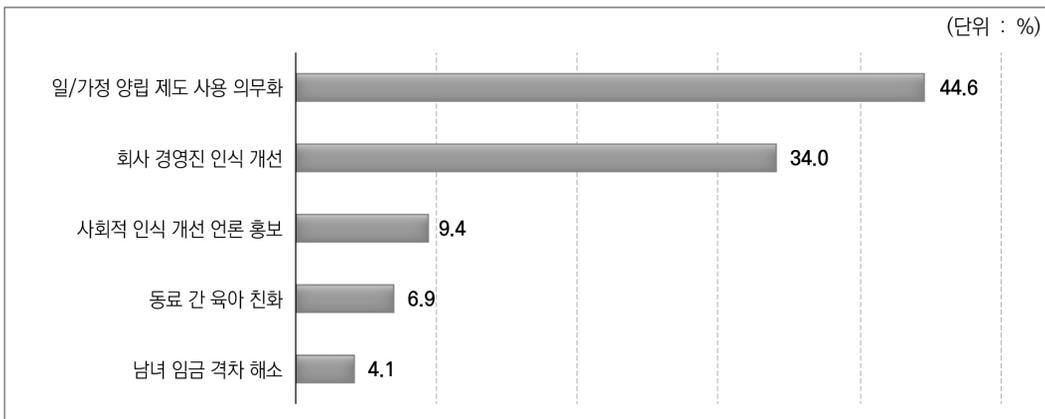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05-206. <표 V-3-2>를 토대로 구성함.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

- ◆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 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가 69.6%로 대다수를 차지함.
- ◆ 반면, ‘육아휴직은 전체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는 25.9%이며,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생각한다’는 4.2%로 조사됨.
- ◆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의 경우에 대도시 지역에서, 미혼인 경우에 맞벌이 가정에서 유의한 차이로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직장 내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 노력사항

- ◆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가 44.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회사 경영진의 인식 개선’(34.0%)으로, 이 두 가지가 78.6%를 차지함. 그 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9.4%), ‘동료 간의 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6.9%), ‘남녀 임금 격차 해소’(4.1%)로 나타남.



[그림 10]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 노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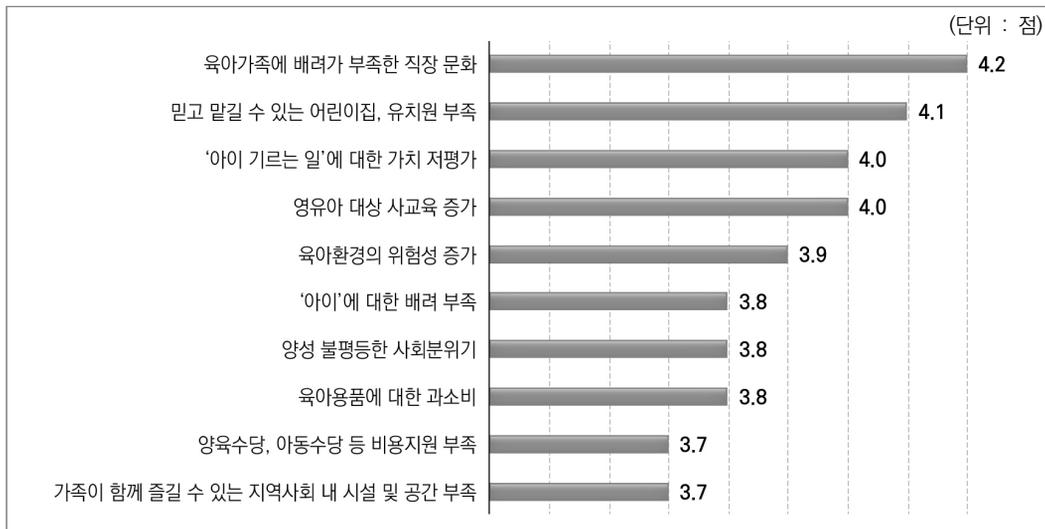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219. <표 V-3-12>를 토대로 구성함.

- ◆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여성 48%, 남성 41.4%),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를 유의하게 높게 응답함.

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

- ◆ 응답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요소 중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부족’이 4.1점,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 4점,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4점,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3.9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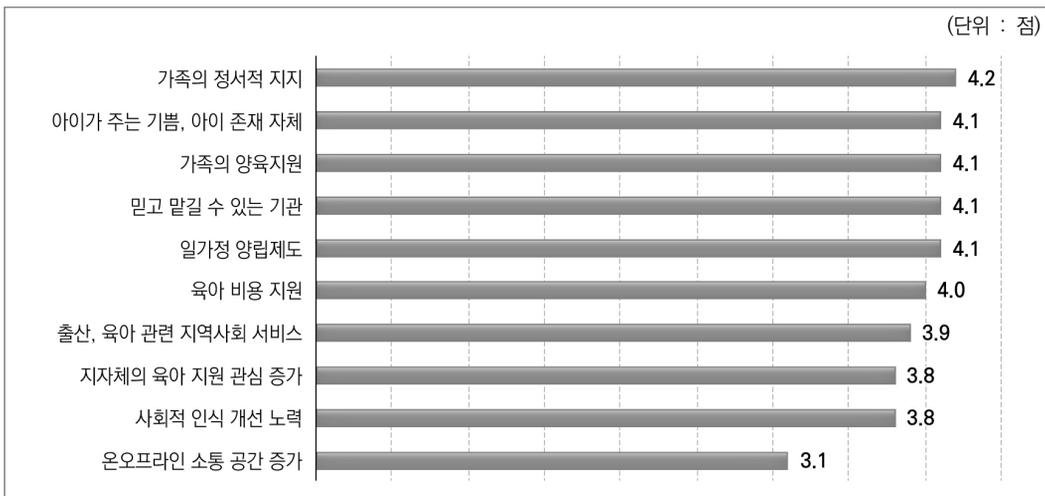
[그림 11]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23-224.
 (표 V-4-1)를 토대로 구성함.

- ◆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30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 보다는 기혼집단에서 육아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체감이 높은 상황임.

■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

- ◆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요소 중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한 동의가 4.1점, ‘가족의 양육지원’ 4.1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4.1점, ‘일가정 양립제도’ 4.1점, ‘육아비용의 지원’ 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5점 만점).
- ◆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는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서는 20대에서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4.2점)이 남성(4점)보다, 맞벌이 가정(4.1점)에서 아닌 경우(3.9점)보다 이를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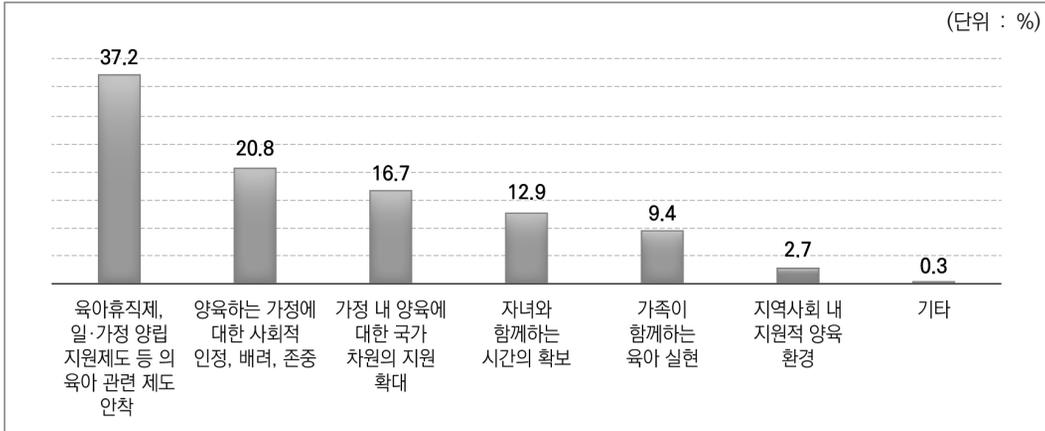
[그림 12]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27-228. <표 V-4-2>를 토대로 구성함.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

- ◆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이 37.2%,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이 20.8%,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이 61%로 가장 많았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은 38.7%,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35.9%,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31.2% 등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3]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30-231. <표 V-4-3>을 토대로 구성함.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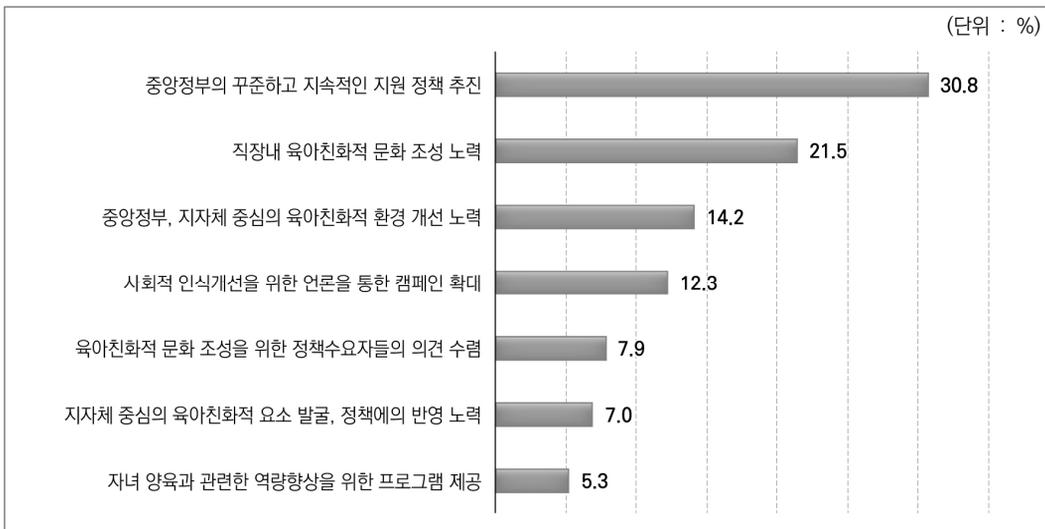
- ◆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할 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한 결과, 응답자의 90%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응답함.
- ◆ 이에 대해서는 집단 차이는 보이지 않아, 연령이나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됨.
- ◆ 문화의 변화가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임.

■ 변화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 ◆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임.

- ◆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30.8%가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은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21.5%,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14.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12.3%,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7.9%,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요소 발굴, 정책에의 반영 노력 7%,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5.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40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 맞벌이 가정은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4]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34-235. <표 V-4-5>를 토대로 구성함.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 육아관련 키워드의 빅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 육아문화 안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함.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들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과 아이의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신뢰로운 교육보육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 등으로 구체화됨.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들은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보육기관의 부족,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과도한 육아비용 등으로 요약됨.



[그림 15]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248. [그림 VI-1-1]임.

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 육아하는 가정을 응원하고 환대하는 육아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들을 줄이고 긍정적 요소들을 넓혀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에 준한 꾸준한 추진이 요구됨.

-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육증장기 계획 등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집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해야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추진해야 함.
- 긍정적 육아문화 형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함.
 - ◆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협업 뿐 아니라 기업 등의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 추진 또한 필요함.
 -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육아 친화적 지자체로 선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버스와 지하철에 임산부와 노인을 위한 지정석이 있지만 어린 자녀를 동반한 배려는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에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치와 스티커 부착을 고려함.
- 지역사회 내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계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육아 문화가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알맞게 조성되었음을 일상 안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함.
 - ◆ 지자체 중심으로 육아하는 가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는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함.
 - ◆ 육아하는 부모들이 지역 및 동네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육아모임이 있고 활성화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함.
 - ◆ 육아정(育兒亭) 설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운영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통해 도모함.
 - ◆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방송, 유튜브, SNS, 검색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육아 존중문화 가치의 확산을 도모함.

| 참고 문헌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0-13 |

영유아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 지표 구성과 활용 방안

도남희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아이 행복
 3. 아이행복사회 지표 영역 개발(안)
 4. 아이행복사회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 참고문헌

영유아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 지표 구성과 활용 방안*

도남희 연구위원

◆◆ 요약 ◆◆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아이의 행복이 연계되는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여 이후 정책에 활용되어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영역별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발달시기별 주요 목표는 다르나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과 웰빙, 성평등, 깨끗한 물 관리, 불평등 해소, 기후 변화 대응, 인권, 정의, 평화 등이 주요 영역으로 나타남.
- 국내·외 행복 지표와 관련하여 영역별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발달시기별 세부영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물질적 수준, 건강 수준, 안전행동 및 가족관계가 주요 영역임.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기초로 국가통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후 지표작성방법, 운영방안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희망함.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정 및 교육환경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의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음.
 - ◆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가족의 증가 및 홀로 있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보호와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 과도한 사교육과 특별활동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놀이와 시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도남희·이재희·예한나, 2019)」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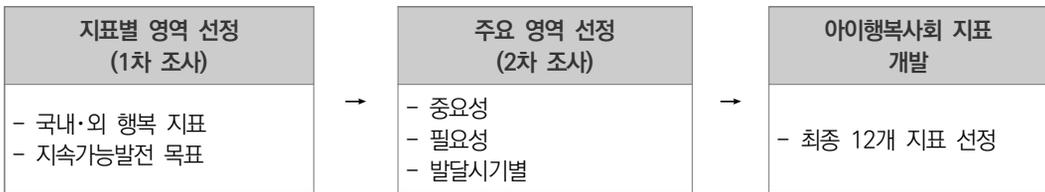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경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 매해 UN이 발표하는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에게 있어 삶의 질과 행복은 경제적 발전을 넘어서는 중요한 화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 행복이 지속발전 가능 목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우리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으며 2015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최우선 원칙과 행복도 증진을 핵심목표로 삼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정부차원에서 아동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부재함.
- 정책은 지표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러한 모니터링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함.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아동 지표의 부재는 아동이라는 정책 대상자를 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시사함.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아이의 행복이 연계되는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여 이러한 지표가 정책에 활용되어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과 방법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목표와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행복감 또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파악 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복감(Happiness) 또는 웰빙(Well-being)과의 지표 분석을 통해 이론적 프레임과 주요 영역을 도출하고자 함.
 -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선행한 행복감 지표를 통해 지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지표와 연계, 정책과 관련성, 적절한 수준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의 정책적 활용을 모색하고자 함.

-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를 검토함.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함.
 - ◆ 전문가 조사(델파이 조사)를 2차에 걸쳐 진행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와 아이행복사회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을 위한 추진과정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아이 행복

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의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2015년 1월 총회에서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에 대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이 절차는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7개의 SDG를 핵심으로 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까지 이어져 옴.
-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빈곤, 식량안보, 건강한 삶, 양질의 교육보장,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국가 간 불평등,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보호 등과 관련된 목표가 제시됨.

- 국내에서도 1990년도부터 환경문제의 발생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방자치체계가 잡힌 이후인 1995년부터 리우 회의에 채택된 아젠다 21을 실천해나가기 시작한 이후, 2000년 6월에 새천년 국가 환경 비전을 선언하고 같은 해 9월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음. 최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를 발표함.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빈곤, 식량안보, 건강한 삶, 양질의 교육보장,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국가간 불평등,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보호 등이 제시되었음.

〈표 1〉 SDGs의 내용

목표	내용
Goal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보장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Goal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Goal 7. 에너지와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Goal 10. 불평등 완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Goal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Goal 14.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Goal 15. 육상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인권·정의·평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지구촌 협력확대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자료: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환경부 역 세상 번역: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p.42.

출처: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54-55 〈표 II-3-2〉에서 발췌하여 수정함.

나. 아이 행복 개념과 지표

- 행복은 개념의 정의가 쉽지 않은 논쟁적인 개념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대한 관점과 시각은 학문 분야별로 시각차가 존재함.
- 최근 행복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종합하여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받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 사건 등에 대해서 개인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이 행복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
- 아이 행복의 개념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철학적인 논쟁거리인 가치평가를 제외한다면 아동기에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 아이 행복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동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류 분석한 결과는 아동의 내외적 요인인 미시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포함한 외체계, 제도와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거시체계도 아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국내의 아동 지표들이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해 왔지만 많은 부분 대학의 연구소나 민간 기구들이 주도하여 진행되어 왔음.
 - ◆ 정부보다는 민간이나 대학의 기관들이 아동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 전반적인 수준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 OECD 주요 지표 영역과 국내 연구들의 지표 영역 비교

주요 지표 영역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2006) ¹⁾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 (2014) ²⁾	세이브더칠드런-서울 대학교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2017) ³⁾	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018) ⁴⁾
건강과 안전	○	○	○	○
주관적 웰빙			○	○
개인의 가족 및 또래관계	○		○	○
물질적 웰빙과 경제적 안전	○	○	○	○
교육적 웰빙	○	○	○	○
행동과 위험			○	

주요 지표 영역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2006) ¹⁾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 (2014) ²⁾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학교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2017) ³⁾	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018) ⁴⁾
주택과 지역환경			○	
학교생활의 질			○	
가족형태와 돌봄	○	○		

자료: 1)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2) 전진아·오혜인(2014).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봉주·김선숙·안재진·유조안·유민상·최창용·이주연·김윤지·박호준(2017).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Ⅲ.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4) 염유식·김경미·성연찬·이신영(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출처: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38-39.

- UNICEF, OECD, EU의 아동 웰빙 지표들은 지표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아이 행복(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영역과 지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됨.
 - ◆ 국외 지표의 경우, 객관적 지표 중심에서 주관적 지표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표가 다양해지고 있음.

〈표 3〉 주요 국외 연구들의 지표 영역 비교

주요 지표 영역	UNICEF ¹⁾	OECD ²⁾	EU ³⁾	CWI ⁴⁾
건강과 안전	○	○	○	○
주관적 웰빙	○		○	
개인의 가족 및 또래관계			○	
물질적 웰빙과 경제적 안전	○	○	○	○
교육적 웰빙	○	○	○	○
행동과 위험	○	○	○	○
주택과 지역환경	○	○	○	
학교생활의 질		○		
가족형태와 돌봄				

자료: 1) UNICEF(2013a, 2013b) 의 자료를 취합함.

2)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3)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7).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1), 1-76.의 내용을 정리한 도남희·배윤진·김지예(2014)의 연구에서 재인용

4) Duke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2014).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ex(CWI) Report.

출처: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49.

- ◆ 국제기구 연구들은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가용성에 초점을 두고 측정개념과 도구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아이 행복(삶의 질) 지표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단순 측정뿐만 아니라 웰빙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다. 지속가능발전과 아이 행복

-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행복과도 관계성이 있으며 아동의 웰빙, 주로 발달적 측면과 관계되는 UNICEF(2018)와 OECD 아동웰빙과 SDG 연구 등에서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음.
- ◆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의 생존권(the rights to survive and thrive), 발달권(to learn), 보호권(to be protected from violence),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권과 참여권(to live in a safe and clean environment and to have an equal opportunity to succeed)으로서 각각의 권리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UNICEF, 2018).

〈표 4〉 아동권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동 권리	지속가능발전목표
생존권	SDG 2(기아 종식), SDG 3(건강과 웰빙)
발달권	SDG 4(양질의 교육)
보호권	SDG 5(양성 평등),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 16(평화, 정의와 제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권	SDG 1(빈곤 감소), 3, 6(깨끗한 물과 위생), 7(깨끗한 에너지), 13(기후변화 대응)
참여권	SDG 1(빈곤 감소)

자료: UNICEF(2018).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 ◆ 2030 아젠다의 지속가능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OECD 국가들이 현재 상태와의 거리(간극)를 알아보려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목표 4(quality education), 8(decent work & economy), 그리고 1(no poverty)에 대해서는 국가별 차이가 나타났음.
- 목표 1(no poverty)과 2(zero hunger)의 실행은 매우 불일치가 큰 반면 목표 3(good health & well-being)과 10(reduced inequality)은 동질적으로 나타났음.

〈표 5〉 OECD 아동웰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아동 웰빙	지속가능발전목표
 <p>Home & family environment</p>	가족 생활조건	-
	부모-자녀 관계	-
	직업과 수입	Goal 1, Goal 8
	아이의 기본적 물질적 요구	Goal 1
	주거	Goal 6, Goal 11
	이웃과 주변 환경의 질	Goal 11, Goals 6, Goal 16
 <p>Health & safety</p>	영아 사망률	Goal 2(기아 종식), Goal 3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행동	Goal 3(건강과 웰빙)
	청소년의 위험행동	Goal 3(건강과 웰빙)
 <p>Child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p>	기본적인 사회·여가활동	-
	청소년기 학교 밖 활동	-
	청소년기 주관적 웰빙	Goal 3(건강과 웰빙)
 <p>Child policies</p>	다른 청소년기 활동과 결과	-
	가족에 대한 공적 비용	Goal 1(빈곤 감소)
	아동 연령 지출 내역	-
	부모 휴가 내용	-
	가족 재정 지원	-
 <p>Education & school life</p>	보육 참여	Goal 4(교육의 질)
	가정에서의 교육자료와 지도	-
	교육적 태도와 기대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육적 성취	Goal 4(교육의 질)

자료: Marguerit, D., Cohen, G., & Exton, C. (2018). 아동 웰빙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OECD국가들의 아동과 청소년은 얼마나 목표와 거리가 있는가? (Child well-be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ow far are OECD countries from reaching the targe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hild-well-being-and-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_5e53b12f-en(2019년 10월 9일 인출). p.12 Table.1.

출처: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3 〈표 II-4-2〉를 수정함.

3 아이행복사회 지표 영역 개발(안)

- 전문가 조사(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와 아이행복사회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 아동학 전공자, 유아교육전공자, 사회복지 전공자가, 정책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공무원 등 약 89여명을 대상으로 함.
 - ◆ 초안 구성 후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6명의 전문가가 2차 조사에 참여하여 지표 영역을 확정하였음.

〈표 6〉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영역 선정

영역	주요 영역		영아		유아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	●	○	●
2 기아 종식		●	○		○	●
3 건강과 웰빙	○	●	○	●	○	●
4 양질의 교육	○	●			○	●
5 성평등	○	●				
6 깨끗한 물관리	○	●	○		○	●
7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		○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		
9 사회시설 기반 및 R&D		●				
10 불평등 해소	○		○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인권, 정의, 평화	○		○		○	
17 지구촌 협력 강화						

주: 1)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가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임.

2) ○: 1차 전문가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중복된 영역

3) ●: 2차 전문가 조사의 공통 영역과 각 발달시기별 주요 영역

자료: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12 〈표 III-5-2〉에서 발췌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발달시기별 적절성

- ◆ 영아기에는 기아 종식, 친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추가되었고,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 등은 공통 영역에서 제외되었음.
- ◆ 유아기에는 영아기와 거의 유사하였고 양질의 교육 영역이 영아기 영역 외에 추가되었음.

〈표 7〉 국내·외 행복 지표의 영역 선정

영역	세부 영역	주요 영역		영아		유아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1차조사	2차조사
물질적 수준	빈곤	○	●	○	●	○	●
	생활수준		●		●		●
	주거환경		●		●		●
건강수준	정신건강	○	●	○	●	○	●
	신체건강	○	●	○	●	○	●
	건강행동	○	●	○	●	○	●
학습 발달	학습					○	
	발달	○			●	○	●
여가 활동	여가 및 활동			○		○	
	참여경험 및 의식						
안전 행동	위험 및 행동	○	●	○	●	○	●
	안전	○	●	○	●	○	●
	위해환경 접촉	○	●	○	●	○	●
관계	가족관계	○	●	○	●	○	●
	도래관계	○					
	지역사회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			
	유데모니아						
	개인만족도						

주: 1)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가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임.

2) ○: 1차 전문가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중복된 영역

3) ●: 2차 전문가 조사의 공통 영역과 각 발달시기별 주요 영역

자료: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11 〈표 Ⅲ-5-1〉에서 발췌함.

■ 국내·외 지표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발달시기별 적절성

- ◆ 영아기의 주요 영역은 건강 수준 영역의 신체 건강과 안전행동 영역의 안전 등이 선정되었음.
- ◆ 유아기의 주요 영역으로는 물질적 수준, 건강 수준, 안전 행동 등이 선정됨.

■ 아이행복사회 지표(안)

- ◆ 국내·외 행복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각 지표의 공통 영역은 1차와 2차 조사에 걸쳐 제시된 영역이고 그 영역 중 공통 영역 외에 발달 시기에 따라 추가되는 영역들은 추가로 ‘+’ 기호로 표시하였음.

■ 국내·외 행복 지표의 공통 또는 주요 영역

- ◆ 공통영역으로는 건강수준과 안전행동 및 물질적 수준이 선정되었고 발달 수준과 가족관계, 또래 관계가 제안되었음.
- ◆ 발달시기별로 영아기는 여가 및 활동, 긍정/부정 감정 영역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유아기에는 여가 및 활동 영역과 학습 영역이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음.

■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공통 또는 주요 영역

- ◆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관리, 불평등 해소, 인권, 정의 평화 등의 영역 등이 제시되었음.
- ◆ 발달시기에 따라 영역이 변화하는데 영아기는 공통 영역에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이 추가되었음.
- ◆ 유아기 지표로는 공통 영역 외에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선정되었음.

〈표 8〉 국내·외 행복 지표의 선정 영역

영역	세부 영역	공통영역	영아	유아
물질적 수준	빈곤	●		
	생활수준	●		
	주거환경	●		
건강수준	정신건강	●		
	신체건강	●		
	건강행동	●		
학습 발달	학습			+
	발달	●		
여가 활동	여가 및 활동		+	+
	참여경험 및 의식			
안전 행동	위험 및 행동	●		
	안전	●		
	위해환경 접촉	●		
관계	가족관계	●		
	또래관계	○		
	지역사회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감정		+	
	유데모니아			
	개인만족도			

주: 1) ●: 1, 2차 전문가 조사의 공통 영역

2) +: 공통영역은 아니지만 발달시기별 주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자료: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23 〈표 IV-4-1〉에서 발췌함.

〈표 9〉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선정 영역

영역	공통영역	영아	유아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2 기아 종식	●		
3 건강과 웰빙	●		
4 양질의 교육			+
5 성평등			
6 깨끗한 물관리	●		
7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	+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	
9 사회시설 기반 및 R&D			
10 불평등 해소	●		

영역	공통영역	영아	유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인권, 정의, 평화	●		
17 지구촌 협력 강화			

주: 1) ●: 1, 2차 전문가 조사의 공통 영역

2) +: 공통영역은 아니지만 발달시기별 주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출처: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24 <표 IV-4-2>에서 발췌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안)을 구성함.

- ◆ 각 지표의 선정 영역을 바탕으로 국내·외 행복 지표의 공통 영역을 설정하고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선정 영역을 매칭하여 구성함.
- ◆ 최종적으로 국내·외 행복지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이루어진 아이행복사회 지표(안)이 제시되었음.

<표 10> 아이행복사회 지표(안)

영역	세부 영역	공통 영역	지속가능발전 목표
물질적 수준	빈곤	●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수준	●	2. 기아 종식
	주거환경	●	10. 불평등 해소
건강 수준	정신건강	●	3. 건강과 웰빙
	신체건강	●	2. 기아 종식
	건강행동	●	6. 깨끗한 물 관리
학습 발달	학습	-	
	발달	●	
안전 행동	위험 및 행동	●	
	안전	●	
	위해환경 접촉	●	
관계	가족관계	●	
	도래관계	○	
	지역사회	-	

출처: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25 <표 IV-4-3>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4 아이행복사회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가. 결론

- 아동정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동 지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아이행복사회 지표의 개발은 향후 아동정책의 기초자료를 위한 첫 발걸음이자 중요한 작업임.
 - ◆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있어서는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 관리, 불평등 해소, 인권, 정의, 평화의 목표들을 주요하게 인식하였고 국내외 행복 지표에 있어서는 물질적 수준(빈곤, 생활수준, 주거 환경), 건강 수준(정신 건강, 신체건강, 건강행동) 및 안전 행동(위험 및 행동, 안전, 위해환경 접촉)의 제 영역들과 발달과 또래 관계의 영역이 발달의 시기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중요하다고 봄.
- 주요 지표를 선정한 후 지표 확정과 지수 생산을 위한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을 필요로 함.
 - ◆ 국내·외 행복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공통 영역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발달 시기에 따른 추가 지표들이 구성되었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해당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 지표의 확정과 지수 작성 과정은 활용 가능한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후속작업을 통해 향후 아이행복사회 지표가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데이터 DB가 구축되기를 기대함.

나. 정책 활용방안

- 아이행복사회 지표 국가통계의 필요성
 - ◆ 현재까지 아동복지와 권리 관련 민간기관에서 아동행복사회 지표 개발을 주로 진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나 정부 주도의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국가통계가 필요한 시점임.

- 영유아기의 발달에 맞는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 체계 구성
 - ◆ 주로 10세 이상 아동 지표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적으며 지표의 성격도 주관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기관의 영유아 지표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 ◆ 이러한 지표 개발을 주도한 후 국가 데이터 구축이 뒤따라야 함.
- 지표 개발의 검토 지수 작성 방법의 구체화
 - ◆ 본 연구의 아이행복사회 지표는 프레임워크와 잠정적인 지표 영역이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인 지수 작성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임.
- 지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필요
 -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가 필요함.
 - ◆ 지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주요 조사내용의 중복 및 조정이 필요함.
- 지표의 정책 반영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와 운영
 - ◆ 개발된 지표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토대로 국가데이터 구축과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

I 참고 문헌 I

- 도남희·배운진·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이재희·예한나(2019).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 염유식·김경미·성연찬·이신영(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이봉주·김선숙·안재진·유조안·유민상·최창용·이주연·김윤지·박호준(2017).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Ⅲ.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전진아·오혜인(2014).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ncsd.go.kr/app/board/publicNotice/view.do?bbsSeq=8373>
-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7).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1), 1-76.
- Duke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2014).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ex(CWI) Report*.
- Marguerit, D., Cohen, G., & Exton, C. (2018). 아동 웰빙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OECD국가들의 아동과 청소년은 얼마나 목표와 거리가 있는가? (Child well-be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ow far are OECD countries from reaching the targe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hild-well-being-and-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_5e53b12f-en(2019년 10월 9일 인출).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 UNICEF. (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 UNICEF. (2013b).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2018).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환경부 역 세상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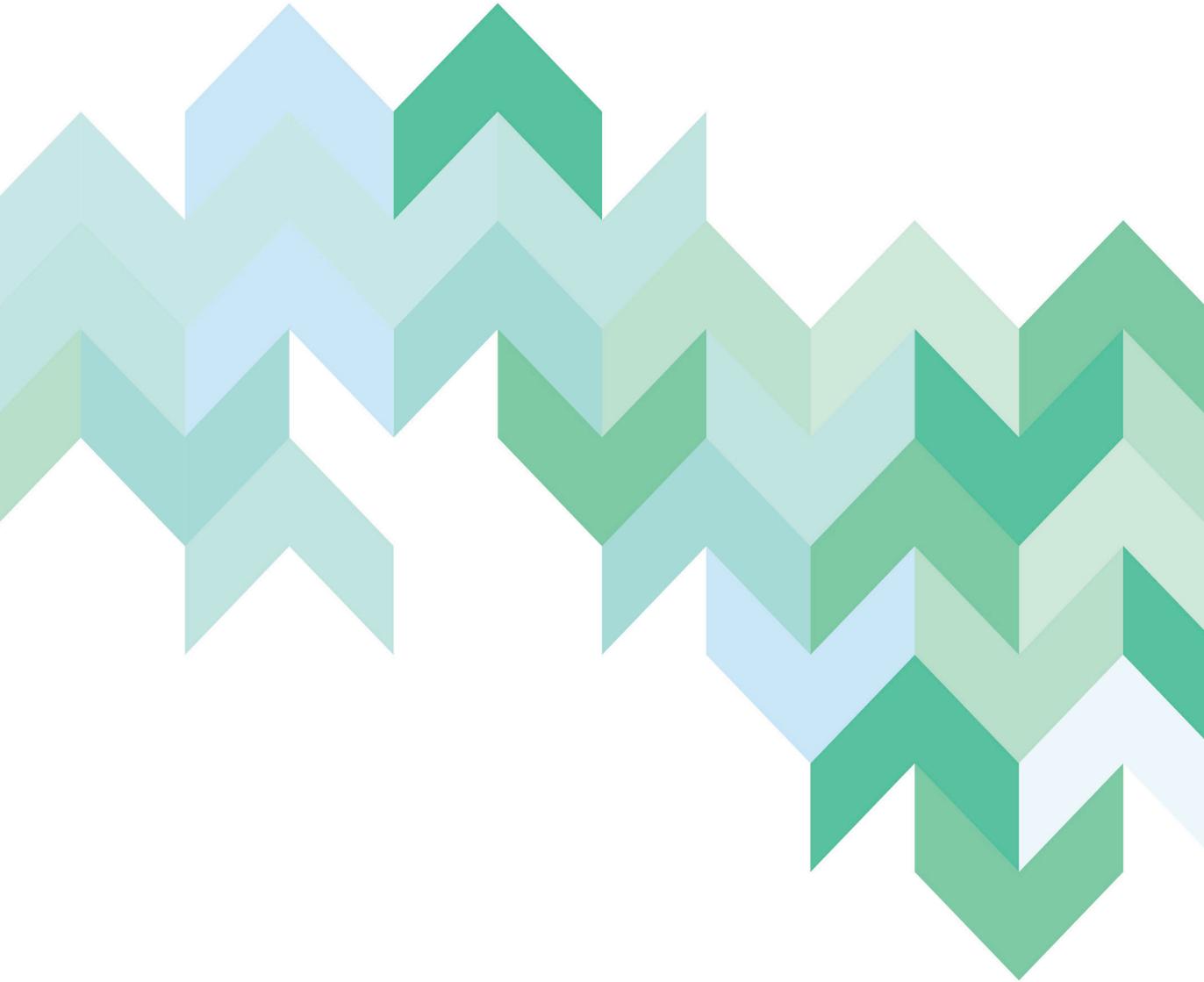
2020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0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인 | 백선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398-7798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20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